

<한일관계사학회 학술회의>

- 교린의 길 : 한·일간의 무역을 묻다-

■ 일시 : 2020년 10월 17일(토) 오후 1시 ~ 오후 6시

■ 장소 : 온라인

■ 후원 : 동북아역사재단

제 1 부 1:00~ 2:30

사회 : 한성주 (강원대)

■ 제1주제 : 18세기 초 왜관 개시무역의 거래 양상

발 표 : 김영록(부산대)

■ 제2주제 : 방법으로서의 초량화집 -18세기후반~19세기 초의 부산읽기

발 표 : 양흥숙 (부산대)

■ 제3주제 : 대마번 조선어역관 中野許多郎의 개항 전후 활동

발 표 : 김동철 (부산대)

휴식 2:30~2:50

제 2부 2:50 ~ 4:20

사회 : 유재춘(강원대)

■ 제4주제 : 근대 이행기 한일 간 무역 통계의 연속성과 단절성

발 표 : 정성일 (광주여대)

■ 제5주제 : 개항 초기 조일 간 교역 양상과 구포 사건

발 표 : 박한민 (고려대)

■ 제6주제 : 현대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한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평가

발 표 : 최영호 (영산대)

<종합토론> 4:40~6:00

사회 : 손승철 (강원대)

토론자 : 이승민, 장순순, 허지은, 현명철, 한성민, 김동명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말미암아 한국과 일본 사이에 무역마찰이 발생하였습니다. 유럽 경제공동체를 모델로 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주장하던 사람들과 세계화를 외치던 사람들, 일본과의 우호를 주장하던 사람들 모두 침묵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일기본조약에서 사죄를 받지 못하고 국교를 회복한 것에 대한 비판과 대일무역 적자의 문제가 새롭게 주목받았음은 물론, 토착왜구라는 비논리적인 단어까지 등장하여 반일감정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분위기에 따라 우리 한일관계사학회는 <교린의 길 : 한일간의 무역을 묻다>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조선 후기 이래 기유약조에 따라 이루어졌던 한·일 간의 무역과, 일본 메이지 정권 성립에 의해 기존의 무역이 '구폐'라고 인식되면서 단절을 향하던 시절의 무역, 전쟁의 위기를 넘기고 조일수호조규를 기점으로 변화되는 무역의 틀, 그리고 대한민국 성립 후 한일기본조약으로 단교를 극복하고 교린의 길로 들어섰던 무역의 역사 등을 시대별 전문가들이 모여 검토해 보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교린의 길 : 한일간의 무역을 묻다>라는 주제로 이루어지는 발표와 토론의 기회는 변혁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적응력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아울러 이번 학술대회가 '한국과 일본에 관한 역사연구를 통하여 두 나라 사이의 올바른 관계사 정립'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학회의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학술회의는 우리 학회 창립 초기부터 학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으신 부산대 김동철 교수님과 영산대 최영호 교수님 두 분의 정년 퇴임을 기념하여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었었습니다만, 결국 코로나19로 인하여 부산에서 학술대회를 열지 못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화상 심포지엄으로 대체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년을 맞이하신 두 분 선생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건강과 학문의 성숙을 축원드립니다.

각별히 여러 차례 학술대회를 변경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허지은 총무님을 비롯한 임원진들, 그리고 본 학술대회를 지원해 주신 동북아역사재단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020년 10월

한일관계사학회 회장 현 명 철

18세기 초 왜관 개시무역의 거래 양상

김 영 록(부산대)

1. 머리말
2. 1721년 ‘실무문서’로 본 개시무역
3. 무역 거래 방식과 ‘被執’
4. 무역 물품의 가격 결정
5. 맺음말

1. 머리말

조선 후기 대일무역은 進上과 回賜의 年例送使무역과 조선조정과 대마도의 공적 거래인 公貿易, 양국 상인의 사적 거래인 私貿易[開市貿易], 潛商들의 불법적 거래인 密貿易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무역은 왜관의 개시대청에서 진행되었기에 조선 측 사료에서는 보통 開市라 불렀다.¹⁾

17세기 말~18세기 초는 왜관의 개시무역이 가장 활발한 시기였다. 따라서 이 시기 무역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에 관한 문제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사 중 하나였다. 그 결과 많은 연구 성과의 축적이 있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거래주체, 거래장소, 거래액, 거래물품 등 조일무역의 실상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²⁾

다만 개시무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 연구자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한다. 조선과 일본의 상인 간 거래에 대해서 조선 측 사료에는 주로 ‘개시’, 일본 측 사료에는 주로 ‘사무역’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다.³⁾ 그런데 조선 측의 개시와 일본 측의 사무역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조선의 역관, 상인이 조선 정부의 감시나 통제를 벗어나 일본 측과 거래를 하는 행위는 조선 측에서는 밀무역으로 파악하지만, 대마도의 중가문서에는 정상적인 사무역 행위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료의 기재 차이로 인해 학계의 논의가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무역 거래의 방식이다. 흔히 ‘被執’이라고 일컫는 무역의 거래 방식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학계가 그 이해를 달리한다. 피집에 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견해가

1) 김동철, 「朝鮮後期 倭館 開市貿易과 被執蓼」, 『韓國民族文化』 13,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9, 26쪽.
2) 김동철, 위의 논문, 1999 ; 「조선후기 왜관 개시무역 상인의 구성과 활동」, 『역사와 세계』 46, 효원사학회, 2014 ; 「17~19세기 부산 왜관의 開市와 朝市」, 『한일관계사연구』 41, 한일관계사학회, 2012 ; 「朝鮮後期 倭館 開市貿易과 東萊商人」, 『民族文化』 21, 民族文化推進會, 1998. 정성일, 『朝鮮後期 對日貿易』, 신서원, 2000.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1 ; 『日朝交易と對馬藩』, 創文社, 2007. 양흥숙, 「17~18세기 譯官의 對日貿易」, 『지역과 역사』 5, 부경역사연구소, 1999. 다시로 가즈이 지음, 정성일 옮김, 『왜관-조선은 왜 일본사람들을 가두었을까?』, 논형, 2005 등.
3) 정성일, 위의 책, 70~71쪽.

갈린다. 일본학계에서는 일본상인이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받는 선불 거래 방식⁴⁾ 그리고 상황에 따라 선불과 후불이 혼용되는 방식으로 이해한다.⁵⁾ 반면에 한국학계에서는 조선상인이 무역품을 먼저 지급하고 일본상인이 대금을 분할하여 갚는 외상 거래 방식으로 이해한다.⁶⁾

피집이 개시무역에서 人蔘·白絲 등 조선의 주요 수출품과 주요 수입품인 銀을 거래하는 일반적인 무역형태였다는 점에서 피집에 대한 상반된 이해는 개시무역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걸림돌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물품에 대한 가격 결정에 대한 문제는 개시무역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일찍부터 많은 연구에서 언급되었다.⁷⁾ 다만 자료의 한계로 그 자세한 전말을 알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위의 연구 성과들을 검토하고 『分類紀事大綱』 九, 「御商賣之事」의 1721년(경종 1, 享保 6) 기록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아 당시 개시무역의 주요 현안과 협의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피집이라는 거래 방식에 대해 분석하고 한일학계에서 상반된 견해가 도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구명하고자 한다. 함께 개시무역 거래 물품에 대한 가격 결정 방식에 대해 접근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이 18세기 초 개시무역의 실상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2. 1721년 ‘실무문서’로 본 개시무역

이 장에서는 피집과 물품의 가격 결정 등 개시무역의 거래 방식에 분석하기에 앞서 주요 분석 대상인 『分類紀事大綱』 九, 「御商賣之事」의 1721년(경종 1, 享保 6) 기록을 살펴보고자 한다.⁸⁾ 여기에는 당시 조선 측에서 왜관에 전달한 「傳令」⁹⁾, 「覺」¹⁰⁾ 등의 실무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이들 문서는 당시 왜관의 개시무역에서 발생한 현안을 해결하는 교섭의 과정에서 작성되어 무역의 실무자들인 조선 측 역관·상인과 왜관 측 대관이 주고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들 문서는 1720년대 초 개시무역의 주요 현안과 교섭 과정의 대강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18세기 초 왜관의 개시무역은 조선산 인삼과 일본산 은의 직교역과 중국산 백사·비단, 일본산 은의 중계무역이 주를 이루는 이중구조였다. 따라서 개시무역의 구조의 변화는 백사, 은, 인삼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와 직결되어 있었다. 특히 중국산 백사[생사]와 견직물이 수출품의 80% 정도, 일본산 은이 수입품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비중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물품의 수요와 공급이

4) 今村 鞆, 『人蔘史』(人蔘經濟篇), 조선총독부 전매국, 1938. 田代和生, 앞의 책, 1981 ; 앞의 책, 2007.
 5) 山本進, 『大靑帝國と朝鮮經濟』, 九州大学出版会, 2014.
 6) 鄭景柱, 「仁祖-肅宗朝의 倭人 求請慣行과 決濟方式」, 『貿易評論』 創刊號, 慶星大學校 貿易研究所, 1994. 양흥숙, 앞의 논문, 1999.
 7) 田代和生, 앞의 책, 1981 ; 앞의 책, 2007. 中村質, 「近世日朝私貿易論の再檢討」, 『水邨朴永錫教授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下, 1992. 정성일, 앞의 책, 2000.
 8) 『分類紀事大綱』 九, 「御商賣之事」(『分類紀事大綱』 1(영인본), 국사편찬위원회, 2005, 433~492쪽).
 9) 왜관 측에서 동래부 측에 현안 타결을 재촉하여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경우, 또는 동래부 측에 약속을 받아내려 하는 경우에 교섭 근거로 삼기 위해 동래부 측에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동래부에서는 왜관 측에 「傳令」이라는 형식의 문서를 작성해주었다. 중앙정부의 지침으로 내려온 「關文」 또한 「傳令」의 형식으로 왜관에 전달되었다(이훈, 「조선후기 東萊府와 倭館의 의사소통 - 兩譯 관련 「實務文書」를 중심으로 -」, 『한일관계사연구』 27, 한일관계사학회, 2007, 193, 200쪽).
 10) 「覺」은 개인이 어떤 약속이나 다짐, 내용 확인 등을 위해 작성했던 문서이다. 역관 개인의 자격으로 왜관과 교섭할 때에 용도에 따라 「覺」형식의 문서를 작성해주었다(이훈, 위의 논문, 205쪽).

개시무역의 변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¹¹⁾

그런데 1720년대에 접어들면서 왜관 개시무역의 상황은 급변하고 있었다. 백사와 은 등 주요 수출입품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었다. 당시 왜관 개시무역에서 백사의 대일 수출액이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 보이는데,¹²⁾ 이는 청나라 내 물가 변동과 국내의 물가 변동으로 인한 것이었다. 우선 연경에서 백사의 물가가 올라 많은 수량을 무역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연동되어 국내에서 백사의 물가 또한 상승하는 추세였다. 서울에서의 타발가가 340~350냥으로 왜관에 피집되는 가격 287냥 5전보다 더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¹³⁾ 그 결과 1721년에는 개시무역에서 백사의 지체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었으며,¹⁴⁾ 이는 개시무역 거래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하였다. 당시의 백사의 지체 현상과 함께 개시무역의 거래 양상을 살피는 데에 다음의 사료가 주목된다.

<자료 1>

“왜관의 매매는 본래 定式이 있습니다. 商譯이 物貨를 被執한 후에 공목과 철물을 수량에 따라 출급합니다. 公木은 곧 반드시 白絲로서 다음 해에 계산하여 갚고, 鐵物은 곧 절반은 백사로서, 절반은 물화로서 다음 해에 계산하여 갚는다고 하였는데, 근년 이래 연경 백사의 값이 전에 비하여 조금 귀해짐에 따라, 상역 등이 왜인에게 갚는바 백사가 여러 해 동안 부족하여 저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지경에 이른 것이 오래입니다. 올해 정월 즈음 대관왜 등이 3인을 별도로 정하고 나와서 갑자기 말하기를, “근년에 상역 등이 공목과 철물을 각자 받아낸 후에 백사의 값이 높다고 일컬으면서 오로지 물화로서 선택하는 바가 있다. 우리가 이익을 잃는 것이 이와 같은 폐단에 이르렀으니, 만약 빨리 변통하지 않으면 곧 팔아도 팔지 않는 것이고, 사도 사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이 말한다. 일찍이 공목과 철물을 내어 간 것에 상역의 부족한 백사의 값은 매 1냥에 2푼 5리씩 더 계산한다. 전례에 의지하여 이미 피집한 물화에서 회계할 계획이다.”라고 하거늘 卑職 등이 듣고 몹시 놀랐습니다. 이에 수역 최상집, 박태신 등과 상고 문희석(行首: 필자 주) 등이 대관왜 등에게 모두 소리를 높여 말로 다투며 말하기를, 공목·철물 값의 백사가 비록 부족하다고는 하나, 해마다 회계되지 않은 백사 대신에 만약 이미 피집된 물화에 2푼 5리씩 가계한다면 상역은 이에 따라 크게 패한다. 재경물주는 우선 놔두고 논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왜관에 피집하는 것을 즐기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 이로써 생각해보면 앞선 매매를 공박하지 않아도 스스로 깨어지는 것이 이와 같다. 수개월 양보하지 않고 서로 자기 의견을 고집하다가 대관왜 등이 상역에게 개척하면서 말하기를, 매 1냥에 2푼 5리를 한결같이 회계하면 상역이 원통해 하는 사세가 진실로 그러한바 매 1냥에 1푼 5리씩 가계하고 공목 회계는 또 1년을 물리고 지난해의 백사 값은 올해 역행절사에 수를 맞춰 다 내어주어서 상역의 원통함이 반드시 없게 하고 회계의 단서로 한다. 이로써 사리에 맞다고 하는 바 상역 등은 이미 1냥에 가계된 1푼을 얻었으며 또 공목을 내후년으로 물려서 계산하는 것을 얻었으니, 곧 우리에게는

11) 김동철, 앞의 논문, 2012, 311쪽.

12) 田代和生, 앞의 책, 1981, 281쪽, <表Ⅱ-13> 참조.

13) 『分類紀事大綱』九, 「御商賣之事」, 享保六(辛丑)「傳令訓別」, 四月十五日. “近年以來燕市物貨比前騰踊之中 白絲尤甚稀貴買來後 我國打發之價幾至丁銀三百四五十兩 而倭人折價則多不過二百八十餘兩 其間落本之不少” 『分類紀事大綱』九, 「御商賣之事」, 享保六(辛丑)「手本草」. “館中白絲價銀二百八十七兩五錢之狀”

14) 『分類紀事大綱』九, 「御商賣之事」, 享保六(辛丑)「手本草」. “又曰 彼此出入之物所當逐年會計 而商譯之被執白絲每多不足於逐年會計乙仍于 商譯等自知其白絲之不足 每曰今年而會計明年而會計 以至今日”

진실로 손해되는 바가 없음에 따라 이 변통에 의지한 후에 최상집의 백사물화가 이미 피집되었고, 박태신 및 상고 등의 인삼 역시 이미 피집하였으며, 은화 18,000냥, 금년조 공목수표 440여 동 역시 왜관에서 나왔기에...”¹⁵⁾

1721년 백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자 왜관의 代官과 조선의 역관·상인은 각자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역 협상을 진행하였다. 위의 사료는 비변사 關文의 내용으로 무역 협상 과정에서 왜관에 전달된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상인과 역관이 물화[인삼]를 피집한 후에 그 수량에 따라 公木과 鐵物을 출급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거래 방식을 定式이라 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 개시무역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던 거래였던 것으로 보인다.¹⁶⁾ 그런데 이것은 피집물화의 대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공목은 白絲로, 철물의 절반은 백사, 절반은 일반 물화로 다음 해에 갚는다고 하였는데, 즉 거래 과정에서 별도의 債權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본 측에서 미리 수입품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는 형식을 띠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검토해보기로 하고 협상의 진행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다.

당시 조선상인들은 왜관의 대관 측에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1712~1719년에 해당하는 철물의 값이 왜관 측에 상환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¹⁷⁾ 이를 타개하고자 처음에는 백사 대신에 순물화[단물]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피집물화에 대한 이자 25%를 가산하는 방식이 제기되었다. 양측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한 이후, 피집물화에 대한 이자 15%의 가산, 공목의 회계 1년 연장, 황력사행에 맞춰 백사가의 지급 등의 내용으로 협상이 타결되었다.¹⁸⁾ 협상이 타결되면서 역관 최상집의 백사와 박태신 및 商賈의 인삼 등이 개시무역에 피집되었고, 대관 측에서는 은화 18,000냥, 당년조 공목수표 440여 동을 조선 측에 지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곧 在京物主의 반발을 가져왔고 서울의 물화를 왜관에 납입하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었다.¹⁹⁾ 당시 동래의 상인·역관의 무역교섭의 결과가 재경물주의 이해와

15) 『分類紀事大綱』九, 「御商賣之事」, 享保六(辛丑), 「手本之寫」. “云云備局關文內辭緣是置有亦 倭館買賣自有定式 商譯等物貨被執之後 公木與鐵物從多少出給 而公木則必以白絲翌年計償 鐵物則折半以白絲 折半以物貨翌年計償爲有在如中 近年以來燕京白絲之價 比前稍貴乙仍于 商譯等之倭人處所償白絲連年不足 以至彼人等嗷嗷者久矣 近年商譯等公木鐵物各自受出之後 稱以白絲之價高專以物貨有所塞責 以至我失利如此之弊 若不趁此變通 則賣不爲賣買不爲買 故不得已 如是言說曾於公木鐵物出去 今年正月分代官倭等三人別定出來遽爾出言曰 近年商譯等公木鐵物各自受出之後 稱以白絲之價高專以物貨有所塞責 以至我失利如此之弊 若不趁此變通則賣不爲賣買不爲買、 故不得已 如是言說曾於公木鐵物出去 商譯之不足白絲之價每一兩加計二分五里式依前例會計於已被執物貨中 計料是如爲去乙卑職等聞即驚駭 乃與首譯崔尚嶠朴泰信等及商賈文希碩等齊聲言爭於代官倭等曰 公木鐵物價之白絲雖曰不足 而累年未會計白絲之代 若以二分五里式依前例會計於已被執物貨 則商譯之從此大敗 姑舍勿論在京物主誰有樂爲被執於倭館者乎 以此思之 則前頭買賣不攻 自破是如 數月相持 則代官倭等商譯開釋曰 每一兩二分五里一向會計 則商譯之稱究勢所固然 每一兩以一分五里式加計 公木會計則又退一年 上年白絲價則今年曆行節使畢數出給 則於商譯必無稱究會計之端 以此停當是如爲臥乎所 商譯等既得一兩加計之一分 又得公木再翌年退計 則在我固無所損乙仍于 依此變通後崔尚嶠白絲物貨 已爲被執朴泰信及商賈等人參亦爲被執爲有旆 銀貨一萬八千兩 今年條公木手標四百四十餘同亦爲出館爲有去乙...(원본의 훈독부호는 삭제하였다.)”

16) 『分類紀事大綱』九, 「御商賣之事」, 享保六(辛丑), 「今日別市入來」, 三月二十日. “根元公木代と申候ハ、 白糸を以差引仕、 鐵物價ハ半分、 糸代半分ハ反物ニ而差引仕格ニ、 古來より法式も有之事ニ御座候”

17) 『分類紀事大綱』九, 「御商賣之事」, 享保六(辛丑), 「覺」.

18) 『分類紀事大綱』九, 「御商賣之事」, 享保六(辛丑), 「手本之寫」; 「今日別市入來」, 三月二十日.

19) 재경물주는 당시 대정사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역관을 비롯한 사행원과 무역자본을 대출해 준

맞아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비변사에서는 재경물주의 호소를 받아들여 물화의 왜관 반입을 멈추도록 하였다.²⁰⁾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재경물주와의 의견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되었다.²¹⁾

재경물주는 일본 측 물품의 값은 상승하는 데 비해 청에서 무역해오는 물품의 값은 하락하여 손실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백사의 국내 가격이 340~350냥인데 비해 왜관의 피집 가격은 280여 냥으로 落本이 적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生銅 1稱의 가격이 17냥 8전에서 24냥으로 熟銅 1稱의 가격이 28냥 3전에서 34냥으로 올랐으며, 尺銅錫鐵 등의 가격 또한 인상되어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순물화로 계산하더라도 손실이 크다는 것이었다. 거기에 鐵物 100냥 당 15냥을 가산하면 낙본은 더욱더 많아진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1718년 이후 지속적으로 물화를 피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값이 나오지 않은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나온 은화 또한 매우 적다고 주장하였다.²²⁾

이러한 재경물주의 호소는 조선정부에 전달되었고, 그 결과 조선정부의 명령이 동래에 하달되면서 왜관에서 타결된 협상은 번복되었다. 동래의 상인과 역관은 다시 왜관의 대관에게 협상을 요청해야 했다. 대관 측에서 모든 상고와 역관의 과반이 내려와서 함께 내린 결정을 재경물주가 번복하는 것을 두고 “誠信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음은 당연하다.²³⁾

위의 과정은 왜관에서 협상된 사안을 재경물주가 거부하면서 정부가 개입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계무역을 주도하는 재경물주가 개시무역의 거래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며,²⁴⁾ 개시무역의 거래를 둘러싼 동래상인·역관-재경물주[역관]-조선정부의 역할관계를 엿볼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재경물주의 호소 이후, 왜관에서는 공목·철물가의 15% 가산 문제를 놓고 논의가 계속되었다. 공목의 경우 수표의 형태로 상인들에게 출급되고 있었는데, 1동에 은 40냥이었다. 당시 국내 시가가 50~60냥이므로 이익이 남기 때문에 15%의 가산을 유지하면서 백사 대신에 方紬, 走紗 등의 중국산 견직물을 납품하기로 결정하였다.²⁵⁾ 공목과 달리 철물의 가산 문제를 둘러싼 의견 대립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대관 측에서는 철물값의 상승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고 상역 또한 철물값의 상승 이후 거래를 거부하지 않았으며, 철물의 지급을 원하는 자가 많았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철물의 落本은 허언이라 주장하였다.²⁶⁾ 결국 논의 끝에 철물의 값은 15%에서 3%를 감하여 12%를 가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공목·철물가의 가산 문제에 대한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개시무역에서의 백사 문제는 쉽

서울의 관청이 중심을 이루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김영록, 「17~18세기 대청 사행의 중계무역과 償債廳」, 『한국민족문화』 63,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7 참고).

20) 『分類紀事大綱』 九, 「御商賣之事」, 享保六(辛丑), 「右三月十八日之書狀也」, 三月十一日 ; 「市奉行李主簿江申渡候口上之覺」. “交易之品を朝廷より被差止候と申義ハ、朝市開市免許之後、終例シも無之、甚以深重之義共ニ而”

21) 『分類紀事大綱』 九, 「御商賣之事」, 享保六(辛丑), 「傳令訓別」, 四月二十五日. “而曾不與在京諸譯有所往復 造次之間輕先停當此等罪狀乙”

22) 『分類紀事大綱』 九, 「御商賣之事」, 享保六(辛丑), 「傳令訓別」, 四月二十五日. “自前皇曆節行時 倭館出銀自是應行之事 而自戊戌以後自我被執 則連續不絕 其未出之價不啻夥然而 今番所出銀貨極其零星”

23) 『分類紀事大綱』 九, 「御商賣之事」, 享保六(辛丑), 「傳令訓別」, 四月二十五日.

24) 김동철, 앞의 논문, 2014, 230쪽 참고.

25) 『分類紀事大綱』 九, 「御商賣之事」, 享保六(辛丑), 「手本草」, 五月初二日. “公木手標捧出 而其捧出公木每一同本價銀四十兩而商譯之市上出賣 每一同五六十兩 則公木十同之科外餘利 乃至一二百兩 公木價白絲代以方紬走紗 每百兩加計十五兩式會計爲良置 其所餘利又至百餘兩是去乙”

26) 『分類紀事大綱』 九, 「御商賣之事」, 享保六(辛丑), 「手本草」, 五月初二日.

게 해결되지 않았다. 백사의 수급은 왜관으로의 은 유입의 지체, 백사가 상승의 여파로 인한 것이기에 단기간에 정상화될 수 없었다. 게다가 철물의 가격 상승과 12%의 가산으로 조선상인들은 철물에 해당하는 값을 상환하는 데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 부담이 이전에 비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당시 회계책자를 검토한 결과, 개개인이 모두 부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²⁷⁾

조선 측은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철물의 값에 해당하는 백사의 상환 수량을 감소시켜야 했다. 조선 측의 요청으로 철물가는 2만 냥을 백사 1만 냥, 물화 1만 냥으로 상환하던 규례는 백사 4,000냥, 물화 16,000냥으로 조정되었다. 더하여 조정된 상환 방식이 1722~1728년까지 7년을 한정하여 약속되면서 일정 부분 물품의 수급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당시 백사로 대두되었던 무역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된 것이다.

3. 무역 거래 방식과 ‘被執’

1) ‘被執’에 관한 세 가지 관점

왜관의 개시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조선 측 자료에서는 흔히 ‘被執’이라 한다.²⁸⁾ 피집은 개시무역의 거래 양상을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피집의 거래 방식을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는 ‘債權의 발생에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가 누구인가?’를 두고 생기는 이해의 차이였다. 이는 크게 세 가지의 견해로 정리된다. 하나, 일본상인이 먼저 銀을 지급하고 물품을 받는 방식,²⁹⁾ 하나, 조선상인이 인삼 등의 물품을 먼저 지급하고 일본상인이 銀을 분할하여 받는 방식,³⁰⁾ 하나, 상황에 따라 혼용되는 방식이다.³¹⁾

첫 번째 피집에 대한 견해는 일본상인이 먼저 銀을 지급하고 물품을 받는 방식으로 가장 먼저 제기되었다. 今村軻은 『人蔘史』에서 사무역에서는 은을 먼저 조선 측에 지급하고 수개월 내지 2~3년 분할하여 물품을 받는 피집이라는 거래가 행해졌다고 하였다. 이러한 피집에 대한 인식은 田代和生の 연구로 이어졌다.

田代和生는 교역과정에서 일본의 은을 사전에 지불하는 선불제가 원칙이었다고 파악한다.³²⁾ 銀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먼저 조선상인에게 위탁되고, 조선상인은 그 代品으로 인삼, 생사를 수개월, 수년 후에 분할하여 원방역에게 납부하는 시스템이 취해지고 있었다고 이해한다. 따라서 그 동안 원방역쪽으로 조선상인에 대한 채권이 생기고 한편 상인 측에는 납품의 의무가 생긴다고 보았다. 이 상태가 피집으로, 피집은 일본은의 신용 위에서 성립하였으며 宗家文書에서 「銀割り」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每日記』의 「皇曆銀割」, 「冬至銀割」이라는 용어 또한 사절을 파견하는 달에 조선상인에게 은을 할부하고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³³⁾

이와 함께 田代和生는 19세기 중엽의 종가문서 『當時公貿易并朝鮮御商賣御利潤銀凡考之

27) 『分類紀事大綱』九, 「御商賣之事」, 享保六(辛丑), 「覺」, 六月日. “今番會計冊子取考 則人々皆有負債之中仰屋發歎不覺涕淚之潛然”

28) 피집에 대한 학계의 견해는 김동철, 앞의 논문, 1999, 3~16쪽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29) 今村軻, 『人蔘史』(人蔘經濟篇), 조선총독부 전매국, 1938.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1.

30) 양흥숙, 앞의 논문, 1999. 김동철, 앞의 논문, 1999.

31) 山本進, 앞의 책, 2014.

32) 다시로 가즈이 지음, 정성일 옮김, 앞의 책, 2005, 131쪽.

33) 田代和生, 앞의 책, 1981, 241~244쪽.

積帳』의 「外向仕入口」, 「都中貸」 등을 조선의 都中에게 銅을 먼저 납입한 후 牛皮·牛角·黃芩·煎海鼠 등의 물품을 조달받는 형태로 보았다. 나아가 이를 17세기 말~18세기 초의 피집과 동일한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거래 방식은 왜관 개시로 물품이 유입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상품 매수 방법으로 왜관시장과 조선의 국내 시장을 두드리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며, 계약에 의해 가격의 수준을 억누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³⁴⁾

두 번째는 조선상인이 인삼 등의 물품을 먼저 지급하고 일본상인이 銀을 분할하여 받는 방식으로 피집을 이해하는 견해이다. 정경주는 求請의 결제방식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物貨被執’을 두고 왜관에 일정한 물화를 먼저 반입하고 그 증서를 받은 뒤에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 그 대금의 결제를 받는 결제 방식으로, 물화피집의 대금은 은 또는 鐵物로 상환하여 결제하였다고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제 방식은 사무역이나 구청물자의 교역에 흔히 사용된 거래방식이라 하였다.³⁵⁾ 이후 양흥숙은 피집은 조선상인이 무역품을 먼저 지급하고 값은 일본상인이 분할하여 값은 일종의 외상거래이자 할부신용거래였으며, 개시무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진 거래 형태였다고 보았다. 특히 일본의 화폐개혁 이후 은의 순도 문제로 인하여 연체 및 할부 거래 현상이 많아졌으며, 피집도 이 시기에 많이 행해진 것으로 추측하였다.³⁶⁾

세 번째는 상황에 따라 혼용되는 방식으로 피집을 파악한 견해이다. 山本進는 은의 중계무역 양상을 주목하여 피집을 연기된 거래나 수표의 어음 결제로 파악하였다.³⁷⁾ 피집에는 대마도 사민이 은을 먼저 주고 수개월 후에 당화나 인삼을 받는 대마 측 피집이 있고, 조선상인이 정부자금을 받아 사행무역을 통하여 당화를 무역해 와서 그것을 왜관에 가져서 들여 보내어 수개월 후에 은화를 받는 조선 측 피집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이러한 피집의 형태가 가능했던 이유를 무역이 통제되고 쌍방에서 재정상의 필요성이 절박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위의 세 견해와는 달리 피집을 납품 행위로만 파악한 연구도 있다. 일찍이 김병하는 일본학계의 신용제공설을 반박하면서 피집은 ‘잡힌다’라는 말을 한자로 표시한 것으로 납품 행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피집은 공무역을 포함한 모든 수출품을 외상으로 제공하는 신용의 급부행위도 미수금도 아니며, 사무역에서 특허상인이 법정량의 인삼을 납품하는 합법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파악한 것이다.³⁸⁾

위와 같이 피집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도출되었다. 기본적으로 일본학계에서는 채권자를 대마도 측으로, 한국학계에서는 채권자를 조선상인 측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銀의 거래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피집에 대한 논의의 특징이다.

피집과 관련한 견해들에 대해 김동철은 조선 측의 연대기 자료, 일부 종가문서 등에서 조선상인이 먼저 물품을 수출하고 나중에 값을 받는 것이 개시무역의 관행처럼 기록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피집’과 ‘銀割り’가 다른 거래 형태가 아닐지, 아니면 왜관의 개시무역에서 동일한 거래 형태가 이루어졌지만 각각 자국의 입장이 반영되어 조선 측 연대기 자료와 종가문서에 상반된 개념으로 정리된 것은 아닐지, 일본상인이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거래 관행은 없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피집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³⁹⁾

34) 田代和生, 앞의 책, 2007, 217~229쪽.

35) 鄭景柱, 앞의 논문, 1994, 16~20쪽.

36) 양흥숙, 앞의 논문, 1999, 143~14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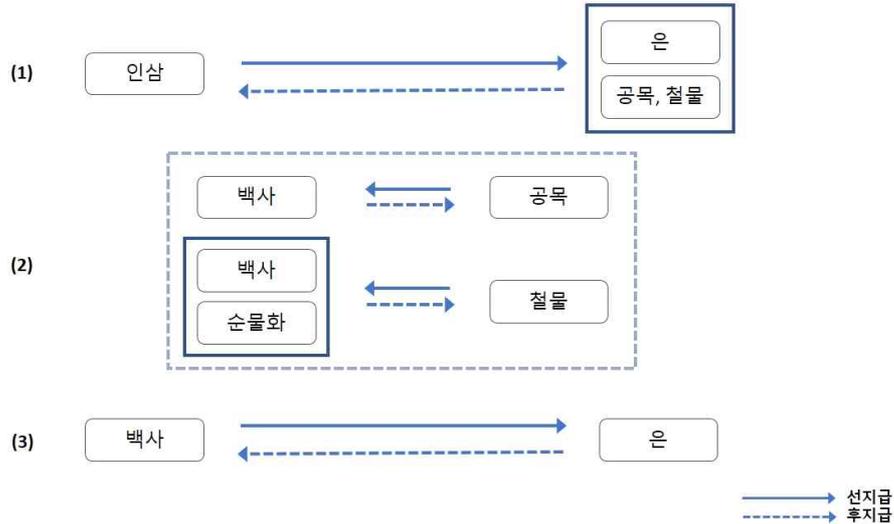
37) 山本進, 앞의 책, 2014, 238~252쪽.

38) 金柄夏, 앞의 논문, 1972. 김동철, 앞의 논문, 1999, 13쪽.

2) ‘被執’과 ‘銀割’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1721년에는 백사의 수급, 은의 지체로 인해 개시무역의 교섭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위의 교섭과정을 통해서 ‘피집’과 ‘은할’, 즉 무역의 거래 방식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그림 1> 1721년 개시무역의 물품 거래 방식



위의 <그림 1>은 <자료 1>의 내용과 실무문서의 내용을 토대로 도식화한 것이다. (1)·(3)의 거래는 조선산 인삼과 일본산 은의 직교역과 중국산 백사와 일본산 은의 중계무역으로 17세기 후반~18세기 중반 개시무역의 중심을 이루는 일반적인 교역구조이다. <자료 1>에서도 파악할 수 있듯이 (1)·(3)의 거래는 피집의 형태로 조선상인이 인삼 등의 물품을 먼저 지급하고 일본상인이 銀을 분할하여 받는 방식이었다.

(1)은 피집물화에 대한 이자 15%의 가산과 공목의 회계 1년 연장, 황력사행에 맞춰 백사가의 지급 등의 내용으로 협상이 타결되면서 역관 최상집의 백사와 박태신 및 상고 등이 인삼 등을 개시무역에 피집하고, 대관 측에서는 은화 18,000냥, 당년조 공목수표 440여 동(공목수표의 경우 (2)의 거래가 중첩되어 있음)을 조선상인들에게 지급한 거래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왜관의 대관은 재경물주의 납품 거부로 개시무역의 거래가 침체되자,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은과 공목수표를 다시 받아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割り出させ’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은할’로 일본상인이 먼저 銀을 지급하고 물품을 받는 방식이라 이해하기 쉽다.⁴⁰⁾ 하지만 은의 경우 선지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시대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은의 지체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⁴¹⁾ 게다가 아직

39) 김동철, 위의 논문, 16쪽.

40) 『分類紀事大綱』九, 「御商賣之事」, 享保六(辛丑), 「古訓導李同知ニ申渡候口上書之寫」, 三月二十三日. “先比當時東萊居住之判事諸商之求請ニよつて、私差圖を以、割り出させ候銀貨一萬八千兩并公木四百餘束之手形之儀ハ、落着之間、先急度和館江返し入送仕候様ニ”

41) 『分類紀事大綱』九, 「御商賣之事」, 享保六(辛丑), 「傳令訓別」, 辛丑四月二十五日. “自前皇曆節行時倭館出銀自是應行之事 而自戊戌以後自我被執 則連續不絶 其未出之價不啻夥然而 今番所出銀貨極其零星”

1720년분의 은도 다 지급되지 못한 상태였다.⁴²⁾ 이와 함께 백사를 순물화로 대신하여 납입하는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賣掛[うりかけ]·買掛[かいかけ]가 있으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한 부분을 보더라도,⁴³⁾ 조선 측과 일본 측은 각각의 채권·채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여기에서의 ‘은할’은 단어의 의미 그대로 ‘할당하다’로 파악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

다음으로 <자료 1>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왜관의 매매는 본래 定式이 있습니다. 商譯이 物貨를 被執한 후에 공목과 철물을 수량에 따라 출급합니다. 公木은 곧 반드시 白絲로서 다음해에 계산하여 갚고, 鐵物은 곧 절반은 백사로서, 절반은 물화로써 다음해에 계산하여 갚는다.”이다. 이것은 위의 <그림 1>의 (2)의 거래에 해당하며 이것은 채권의 발생을 의미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상인이 먼저 銀을 지급하고 물품을 받는 방식으로 ‘은할’에 해당하는 거래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물품의 대가를 선불할 때 견직물이라든가 인삼 등은 그 일부를 은이 아닌 동이나 공목 등으로 보충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백사는 현은이 아니면 안 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⁴⁴⁾ 하지만 여기에서는 은이 아닌 공목과 철물이 주요 지급 대상이며, 상환 대상이 백사라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동은 선지급은 19세기의 「外向仕入口」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자료에서 정식이라고 칭하는 점과 더불어 1712~1719년에 해당하는 철물의 값이 왜관 측에 상환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시적으로 발생했던 거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⁴⁵⁾ 이러한 채권 거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채무가 누적되어 가면서 무역 마찰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⁴⁶⁾

당시 채권 거래 방식을 정식이라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에서 규정한 사항이 아니라 개시무역의 거래 실무자들이 개시무역의 공공연한 거래 방식으로 인식했기에 이렇게 칭한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조선정부는 일본 측이 공목과 동을 선지급함으로써 구실거리를 삼을 수 있다고 경계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 방식은 국내의 물가를 교란시키며, 상인들의 손실이 이에 비롯한다고 파악하였다.⁴⁷⁾ 이에 조선정부는 개시무역의 거래를 바로잡기 위해 규정을 손질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자료 2>

- 一. 銀貨續續捧出事 涉不可 每於曆行節行出銀事
- 一. 白絲價則必以純銀捧出 而上年白絲價則今年兩行畢捧 今年白絲價則明年兩行畢捧事
- 一. 人蔘價則折半以銀子 折半以公木·鐵物捧出事⁴⁸⁾

42) 『分類紀事大綱』九, 「御商賣之事」, 享保六(辛丑), 「覺」, 辛丑六月日. “則戊戌己亥兩年間 絲路稍廣 輻湊於燕市故 其價亦且減矣 庚子年分賣國銀貨斷不出來故 絲路亦爲隨絕今冬行白絲些少出來云”

43) 『分類紀事大綱』九, 「御商賣之事」, 享保六(辛丑), 「古訓導李同知ニ申渡候口上書之寫」, 三月二十三日. “商人方よりハ、近年賣込置候反物代有之ニ付、糸代を反物代ニ而差引仕候法式ハ無之事ニ候得とも、雙方賣掛·買掛ニ仕置候而ハ不宜候故、貳割半之加計を以、差引可仕之由被申聞候”

44) 다시로 가즈이 지음, 정성일 옮김, 앞의 책, 131쪽.

45) 『分類紀事大綱』九, 「御商賣之事」, 享保六(辛丑), 「覺」.

46) 양국 상인 간 채권·채무 관계가 거래 초기부터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누적되어 있는 한 개시무역 [사무역]의 수출입총액은 일치할 수 없다(정성일, 앞의 책, 2000, 187쪽).

47) 『分類紀事大綱』九, 「御商賣之事」, 享保六(辛丑), 「傳令訓別」, 四月十一日. “在前段人參被執後 隨其年條每於曆行節行捧出其價 而元無續々捧價之事是如乎 今則倭人直給價而買賣乙仍于 以直給價爲藉口之資 而其所折反下於我國之市直 諸商之落本據此可知”

48) 『分類紀事大綱』九, 「御商賣之事」, 享保六(辛丑), 「覺」, 四月十三日.

위의 규정은 은의 지체, 백사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다. 대청사행 무역과 연동하여 은의 지급 시기 등 기존의 교역구조를 재확인하고 채권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었다.⁴⁹⁾

(1)·(2)의 거래에서 공무역의 결제수단인 공목이 개시무역을 통해 국내로 재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 하다. 1684년~1710년 사이의 개시무역에서의 공목 거래량과 대마도 증가문서의 明文의 분석을 통해 공목이 국내로 재반입되었다는 사실이 기존의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⁵⁰⁾ 공목은 일찍부터 개시무역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어 유통되었는데, 1660년대에도 公木手標를 이용한 개시무역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⁵¹⁾ 특히 은의 수급이 부진할 때 공목으로 은의 수량을 보충하는 사례가 보이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공목의 개시무역 거래가 점차 확대되어 나갔다.⁵²⁾ 이후에도 공목수표는 개시무역 거래의 한 축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⁵³⁾ 공목은 1758년(영조 34)부터 1806년(순조 6)까지 공무역에서 代錢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개시무역에서의 공목수표 거래가 그 역사적 경험을 제공한 것은 아닐까 한다.⁵⁴⁾ 동과 공목은 조선의 화폐와도 밀접한 물품이다. 상평통보의 주요 원료인 동과 조세 수납 등 화폐적 기능을 가졌던 공목이 개시무역에서 선지급되었다는 점은 그만큼 동과 공목의 국내 유통량이 높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개시무역에서 쌍방 간 채권과 채무를 지고 있는 거래 방식은 대마도 측에서 더 많은 백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이유에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왜관에서의 은 수입량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는데,⁵⁵⁾ 이는 은 수출을 제한하는 일본의 통제 정책에 일정부분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17세기 후반과 비교해보면 왜관에서의 은의 수입량은 약 절반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⁵⁶⁾ 18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조선의 수출품인 백사·인삼 등의 값은 은으로, 雜貨의 값은 물품이나 鐵物로 계산하는 것이 관례였으나,⁵⁷⁾ 은의 조달이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서 은의 지급으로만 다량의 백사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와 함께 왜관으로의 은의 유입이 대청사행과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왜관으로 은을 수송하는 ‘은선’의 움직임이 달마다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데, 은의 수송이 많은 시기는 7월과 8월, 그리고 10월에서 11월에 걸친 4개월로 연간 총 수송량의 6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7·8월에 조선으로 신고 갈 은을 ‘皇曆銀’이라 부르고, 10·11월에 실어 나를 은을 가리켜 ‘冬至銀’이라 불렀는데, 皇曆使行과 冬至使行에 맞춰 은의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⁵⁸⁾ 대청 사행에 이용할 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조선에서 대마도 측

49) 『分類紀事大綱』九, 「御商賣之事」, 享保六(辛丑), 「傳令訓別」, 四月十一日. “或有復踵前習潛自買賣之事 則各別重究斷不撓貸之意申明分付於倭譯及諸商賈等處宜當”

50) 田代和生, 앞의 책, 1981. 정성일, 앞의 책, 2002.

51) 『公木作米騰錄』권1.

52) 『典客司別騰錄』1701년 9월 15일. “壬午被執商賈物貨價未捧銀六萬九百五十二兩內 手標公木四百八同 每同價丁銀四十 兩式 一萬六千三百二十兩計除 實未捧四萬四千六百三十二兩是白如乎”

53) 『典客司日記』第36, 正祖 13年 己酉 十一月. “邑下雜商輩 以藥材海蔘 捧出公米木手標 多致雜亂之弊 此後蔘貨被執外 以雜物換出手標者 以潛商律施行 斷不饒貸”

54) 김영록, 「조선후기 대일공무역과 公木」, 『한일관계사연구』42, 한일관계사학회, 2012, 482~486쪽 참고.

55) 이 시기 청·일간 중계무역의 쇠퇴에 관한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김동철, 앞의 논문, 2012가 참고가 된다.

56) 田代和生, 앞의 책, 1981, 328쪽, <圖II-6> 참고.

57) 김동철, 앞의 논문, 1999, 9쪽. 『承政院日記』숙종 34년 5월 12일.

에 은의 지급 기한을 요구하여 정례화한 것으로 보인다.⁵⁹⁾ 중국산 백사 또한 황력사행이 돌아온 이후 1월에, 동지사행이 돌아온 이후 5월을 중심으로 많은 수량이 왜관으로 유입되었다.⁶⁰⁾ 이처럼 왜관 개시무역의 주요 물품의 수급이 일정 기간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왜관에서는 지속적인 개시무역의 거래를 통해 최대한 많은 수량의 백사를 확보하려 했으나, 그에 상응하는 일정량의 은을 항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었던 조건이었다. 따라서 거래 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공목과 철물의 선지급이 이루어졌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1721년의 개시무역에서는 ‘피집’과 ‘은할’이라는 쌍방 간 채권-채무관계가 중첩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집과 은할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좁은 의미로서 피집은 단어의 의미 그대로 ‘잡힌다’는 납품행위를, 은할은 ‘할당한다’는 납품행위로 이해된다.⁶¹⁾ 넓은 의미로서 피집은 조선상인이 인삼 등의 물품을 먼저 지급하고 일본상인이 은을 분할하여 받는 방식으로, 은할은 일본상인이 먼저 은이나 동, 공목을 지급하고 물품을 받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4. 무역 물품의 가격 결정

개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 결정에 대한 문제는 개시무역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일찍부터 많은 연구에서 언급되었다. 하지만 『통문관지』나 『증정교린지』 등의 자료에 교역할 물품의 가격이 양국 상인들의 자율적인 흥정에 의해 정해진다고만 되어 있어서 자세한 사정을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⁶²⁾ 제한된 자료로 인해 연구자들의 의견 또한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증정교린지』의 ‘각기 그 물건을 차례로 교역하며 마음껏 흥정하고 일시에 모두 물러난다.’는 표현은 각 개시일마다 상인들이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⁶³⁾ 이에 따라 田代和生와 정성일은 왜관에 참여하는 상인들 간의 협상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된다고 파악하였으며,⁶⁴⁾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서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았다.⁶⁵⁾

58) 다시로 가즈이 지음, 정성일 옮김, 앞의 책, 133쪽. 김동철, 앞의 논문, 1999, 4쪽 참고. 권내현,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 조선의 은유통」, 『歷史學報』 221, 역사학회, 2014, 18쪽. 『分類紀事大綱』 九, 「御商賣之事」, 享保六(辛丑), 「傳令訓別」, 四月十一日. “已前者皇曆.冬至兩使之時銀割有之候處” “在前段人參被執後 隨二其年條每於曆行節行捧出其價”

59) 『備邊司謄錄』 영조 8년 2월 12일. “皇曆節行時出送者 自是規例” 『備邊司謄錄』 숙종 26년 10월 15일. 영조 1년 4월 2일. “且銀貨自倭館出來 而每當皇曆及冬至使行 倭銀始出”

60) 『分類紀事大綱』 九, 壬寅 四月 日. “昔者燕京有卜物馱載雇車軍之時 曆行卜物 則當年歲末出來 翌年正月德談開市被執 節行卜物則四月內出來 五月念晦間被執矣”

61) 중강개시에 무역물품을 납품하는 행위 또한 피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事變日記』, 乾隆三十年乙酉 八月二十六日. “中江開市事及通官 四格留館之由已爲馳 啓爲白有在果 通官 段昨日受禮段單等物當日寅時量渡江還歸是白乎於 管市差使員鐵山府使權械牒呈內 牛隻及雜物次第被執而牛二百頭內價銀多者七八兩少者四五兩合銀一千一百七十一兩五錢 代以小青布照數推尋是遣木布鹽白紙海蔘”). 「皇曆銀割」, 「冬至銀割」이라는 용어는 사행의 시기에 맞춰 은을 할당하였다고 이해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62) 정성일, 앞의 책, 2000, 74쪽.

63) 『增正交隣志』 卷四, 開市. “開市監官 東萊府使所帶軍官 眼同檢驗 置簿入送 而訓別仍爲入坐大廳 則諸商就前跪拜 然後各以其貨以次交易 盡情論定而一時并退”

64) 田代和生, 앞의 책, 1981, 66~69쪽.

65) 정성일, 앞의 책, 2000, 74~75쪽.

하지만 中村質은 왜관 거래 상품의 수출입단가가 일정기간 고정되어 있는 것에 주목하면서 田代和生の 학설을 반박하였다. 그는 1677과 1678년 사이 일본의 화폐 개수에 따른 단가의 변동이 보일뿐 왜관 무역이 양국 정부에 의해 관리되었으며 일정 기간 정책적으로 고정되어 있었다고 파악하였다.

수출입단가의 고정은 왜관무역의 특질 중 하나로 물가 변동이나 수급관계를 무시한 정책적 가격 관리가 있었고, 이로 인해 무역 거래가 부진해졌으며 이는 무역 쇠퇴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곧 왜관무역이 거래의 호불황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⁶⁶⁾

이후 김동철은 被執蔘의 거래에 주목하면서 개시무역의 거래품 가운데 특히 피집삼은 전 시기에 일관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량과 가격이 상당히 통제되고 있었다고 하였다.⁶⁷⁾ 1758년(영조 34)에 제정된 「江蔘變通節目」의 ‘피집삼은 定價가 있다.’라는 규정과 『邊例集要』의 ‘개시는 사례가 엄중하여 값을 확정하고 난 후에는 고치지 않는 것이 그 유래가 오래 되었다.’는 표현을 통해 피집삼의 가격 결정 등에 관권의 개입이 상당히 강했음을 주장하였다.⁶⁸⁾

이처럼 개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 결정에 대한 문제는 개시무역의 거래 방식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그 실상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가격 결정에 있어 상인들의 자유로운 협상이 가능했는가, 관권의 개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가 등의 문제는 개시무역을 둘러싼 조선정부와 일본정부, 조선상인과 일본상인의 이해관계, 국가와 상인의 이해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요소로서 더 접근해 볼 여지가 있다.

1721년의 개시무역 교섭에서는 물품의 가격 또한 문제시되고 있다. 당시 생동 1칭의 가격이 17냥 8전에서 24냥으로, 숙동 1칭의 가격이 28냥 3전에서 34냥으로 올랐으며, 척동·석·납 등의 가격 또한 인상되면서 재경물주와 대관 측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대관 측은 동물의 가격만 올릴 수 없어서 백사 또한 260냥에서 287냥 5전으로 가격을 올렸으며, 가격의 상승은 자의적인 판단이 아님을 강조하였다.⁶⁹⁾ 이를 통해 개시무역 거래 물품의 가격 결정이 어느 한쪽에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동, 납, 석 등의 물품은 절가의 정식이 있었다고 언급된다.⁷⁰⁾ 중간에 값이 상승한 것을 정부에서는 의아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가격의 조정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래의 <표 1>을 살펴보면 조선 측 수입품인 황동, 납, 단목, 명반, 호초 등의 물품 가격이 일정 기간 유지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변동되고 있다. 반면에 수우각, 인삼, 백사, 견직물의 경우 가격 변동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이들 물품은 크기나 품질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품목 당 단가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힘들다. 공목의 경우 공무역물품이기에 특수한 경우이지만, 조선 측 사료를 보면 1701년과 1721년의 단가에 변동이 없음을 살펴볼 수 있다.⁷¹⁾

66) 中村質, 앞의 논문, 1992, 782쪽.

67) 김동철, 앞의 논문, 1999, 43쪽.

68) 김동철, 앞의 논문, 1999, 36~38쪽.

69) 『分類紀事大綱』九, 「御商賣之事」, 享保六(辛丑), 「手本草」, “而後乃曰不可以鐵物獨爲增價 白絲之價亦可以增價是如爲平等 以上白絲本價銀二百六十兩而加增爲二百八十七兩五錢”

70) 『分類紀事大綱』九, 「御商賣之事」, 享保六(辛丑), 「傳令訓別」, 四月二十五日, “至於尺銅, 錫鐵等物折價之新增無不皆然 此等折價皆有定式 而中間增價案爲駭然 其時商譯終難免重罪是矣”

71) 『典客司別騰錄』 1701년 9월 15일, “壬午被執商賈物貨價未捧銀六萬九百五十二兩內 手標公木四百八同 每同價丁銀四十兩式 一萬六千三百二十兩計除 實未捧四萬四千六百三十二兩是白如乎”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18세기 중반 개시무역에서는 물품의 세금을 납입한 뒤 거래를 실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거래 이전에 물품의 가격이 이미 협의되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⁷²⁾ 그리고 그 가격 협의는 수많은 논의를 거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증정교린지』의 ‘각기 그 물건을 차례로 교역하며 마음껏 흥정하고 일시에 모두 물러난다.’는 표현과는 달리 개시무역에서의 가격 책정이 각 개시일마다 쉽게 변동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시무역 거래 물품의 단가가 물가 변동이나 수급관계를 무시한 정책적 가격 관리가 있었던 것일까?

위의 생동, 숙동과 백사의 가격 상승을 참고한다면 그건 꼭 아니었던 것 같다. 시장의 수급이나 조선 국내의 거래가 등 경제적 제반 요건에 영향을 받으며 개시무역 물품의 가격이 변동하고 있었다. 다만 개시무역은 상인과 상인의 거래에 있어 자국 상인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 개입이 가격 결정에도 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⁷³⁾ 또한 앞장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개시무역의 거래에서 동래상인·역관-재경물주-중앙정부는 그 이해관계를 달리 하고 있었다. 따라서 물품에 대한 상인 중심의 임의적인 가격 책정이 쉽지 않았을 뿐이라 생각할 수 있다.

72) 『承政院日記』 영조 14년 7월 18일. “萊府捧稅之規 被執之法 自有其例 當其捧稅之時 有收稅文書 而既稅之後 則還給其商賈本蔘 以之被執於倭館” 『典客司別謄錄』 1734년 8월 21일.

73) 『分類紀事大綱』 九, 「御商賣之事」, 享保六(辛丑), 「覺」, 六月日. “不失此時通報島中增價之鐵物依前復舊其價 而不然則以純物貨停當役只然後可有買賣順便之理”

<표 1> 1684년~1710년 주요물품의 단가

(단위: 匁)

연도	조선 측 수출품							조선 측 수입품						
	삼1	삼2	백사	단자	능자	진면	사릉	공목	항동	납	단목	수우각	명반	호초
1684	313	61	2.333	-	45.000	-	24.827	-	170	5.300	1.250	-	-	2.500
1685	308	62	2.407	-	32.359	8.000	24.635	-	170	5.300	1.250	39.200	-	2.500
1686	309	62	2.399	45.000	38.319	8.000	22.984	560	170	5.300	1.250	39.490	1.500	2.500
1687	318	68	2.447	60.000	22.635	8.001	24.951	-	170	5.300	-	39.200	-	2.500
1688	318	60	2.496	-	59.718	7.000	24.851	560	170	5.300	-	38.033	1.500	2.500
1689	327	55	1.161	50.000	56.281	7.309	24.980	560	170	5.300	-	32.766	1.500	2.500
1690	332	-	2.446	50.000	36.205	-	24.864	560	170	5.300	1.250	42.000	1.500	2.500
1691	347	-	2.440	-	36.429	8.162	24.862	560	170	5.300	1.400	28.553	1.500	2.500
1692	341	-	2.477	75.000	48.871	6.951	24.858	560	170	2.353	1.400	28.890	-	2.479
1693	323	-	2.496	76.923	56.870	-	20.364	560	170	5.900	1.333	21.358	1.500	2.500
1694	321	-	2.500	74.308	56.846	7.176	25.374	560	170	5.900	1.333	42.035	1.500	2.500
1695	396	-	2.484	75.000	13.048	7.000	23.326	560	170	5.900	1.333	17.318	1.500	2.500
1696	302	-	2.496	63.125	33.895	14.255	22.504	560	170	5.900	1.333	42.000	1.500	2.500
1697	370	200	2.500	75.000	38.139	-	23.783	400	127	4.425	1.000	30.000	1.125	1.875
1698	489	102	3.107	93.958	32.611	10.000	30.792	505	162	5.620	1.270	24.547	1.425	2.380
1699	486	101	3.179	95.000	40.946	-	30.048	508	162	5.620	1.270	30.889	1.425	2.380
1700	504	101	-	-	49.500	-	31.500	-	-	5.620	1.270	-	-	2.380
1701	504	-	3.194	85.550	34.401	-	31.491	508	162	5.620	1.270	36.641	1.425	2.380
1702	514	-	3.209	84.500	36.725	-	27.831	508	162	5.620	1.270	36.000	1.425	2.380
1703	563	101	3.316	-	51.637	-	31.451	508	162	5.622	1.270	36.000	1.425	2.380
1704	561	101	3.147	-	50.119	-	31.326	508	162	5.620	1.270	36.000	1.425	2.380
1705	547	101	3.442	71.917	43.449	-	31.257	508	162	5.620	1.270	36.777	-	2.380
1706	568	159	3.392	-	46.347	10.000	25.037	508	182	5.620	-	37.870	1.425	2.380
1707	651	-	3.443	79.250	49.500	-	27.033	508	182	5.620	-	39.926	1.425	2.380
1708	693	160	3.420	95.000	-	12.700	23.150	508	167	5.620	-	54.505	-	2.380
1709	683	163	3.451	-	38.000	12.700	27.265	508	182	5.620	1.270	56.234	1.425	2.380
1710	498	197	3.465	91.684	43.900	12.700	25.936	508	182	5.620	1.270	41.974	1.425	2.380

* 삼1은 上上, 上, 下, 並, 生人蔘, 삼2는 小, 尾, 分尾, ぶく人蔘.

** 출처: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1. 정성일, 『朝鮮後期 對日貿易』, 신서원, 2000.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分類紀事大綱』 九, 「御商賣之事」의 1721년(경종 1, 享保 6) 기록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당시 조선 측에서 왜관에 전달한 「傳令」, 「覺」 등의 실무문서가 수록되어 있어 1720년대 초 개시무역의 주요 현안과 교섭 과정의 대강을 파악할 수 있었다.

1720년대에 접어들면서 왜관 개시무역에서 백사와 은 등 주요 수출입품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채권이라 볼 수 있는 1712~1719년에 해당하는 철물의 값이 왜관 측에 상환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기에 무역 교섭이 잦았다. 특히 피집물화에 대한 이자 가산 문제를 놓고 논의는 계속되었다. 공목은 15%의 가산을 유지하면서 백사 대신 方紬, 走紗 등의 중국산 견직물을 납품하기로 결정하였다. 철물의 값은 15%에서 3%를 감하여 12%를 가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왜관으로의 은 유입의 지체, 백사 수급의 지연 등 개시무역의 현안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이후 백사의 상환 수량을 감소시키면서 무역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개시무역의 거래 방식인 피집은 크게 세 가지의 견해로 정리된다. 하나, 일본상인이 먼저 銀을 지급하고 물품을 받는 방식, 하나, 조선상인이 인삼 등의 물품을 먼저 지급하고 일본상인이 銀을 분할하여 받는 방식, 하나, 상황에 따라 혼용되는 방식이다. 위의 협상 과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 1721년의 개시무역에서는 ‘피집’과 ‘은할’이라는 쌍방 간 채권·채무관계가 중첩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집과 은할은 다른 개념으로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좁은 의미로서 단어의 의미 그대로 피집은 ‘잡힌다’는 납품행위를, 은할은 ‘할당한다’는 납품행위로 이해되며, 넓은 의미로서 피집은 조선상인이 인삼 등의 물품을 먼저 지급하고 일본상인이 은을 분할하여 받는 방식으로, 은할은 일본상인이 먼저 은이나 동, 공목을 지급하고 물품을 받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쌍방 간 채권과 채무를 지고 있는 거래 방식은 왜관 개시무역의 거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은과 백사의 수급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며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1721년의 개시무역 교섭에서는 물품의 가격 또한 문제였다. 이는 조선 측과 일본 측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동래상인·역관-재경물주-중앙정부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나타나는 문제였다. 이 시기 개시무역에서는 물품의 단가가 일정 기간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개시무역 물품의 가격 결정은 자국 상인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 개입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집단의 이해를 수용해야 했기에 가격 협상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칠 수밖에 없었으며, 단기간 그리고 임의적인 가격 결정이 어려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글은 무역 협상, 피집과 은할이라는 채권, 가격 결정을 중심으로 18세기 초반 개시무역의 거래 양상을 살폈다. 1721년의 사례를 중심으로 단기간의 거래 양상을 살펴보았기에 위에서 도출된 사실을 다른 시기에 소급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추후 더 많은 사례를 보완하여 개시무역의 실상에 좀 더 다가가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
- 『備邊司謄錄』
- 『承政院日記』
- 『通文館志』
- 『分類紀事大綱』
- 『公木作米謄錄』
- 『典客司別謄錄』
- 『典客司日記』
- 『增正交隣志』

金柄夏, 「17, 8世紀의 銀蔘問題-對日 人蔘貿易을 中心으로-」, 『政經論集』 9, 경희대, 1972.

今村軾, 『人蔘史』(人蔘經濟篇), 조선총독부 전매국, 1938.

김동철, 「17~18세기 조일무역에서 ‘私貿易 斷絶論’과 ‘나가사키[長崎] 直交易論’에 대한 研究史 검토」, 『지역과 역사』 31, 부경역사연구소, 2012.

김동철, 「17~19세기 부산 왜관의 開市와 朝市」, 『한일관계사연구』 41, 한일관계사학회, 2012.

- 김동철, 「조선후기 왜관 개시무역 상인의 구성과 활동」, 『역사와 세계』 46, 효원사학회, 2014.
- 김동철, 「朝鮮後期 倭館 開市貿易과 東萊商人」, 『民族文化』 21, 民族文化推進會, 1998.
- 김동철, 「朝鮮後期 倭館 開市貿易과 被執蔘」, 『韓國民族文化』 13,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9.
- 김영록, 「조선후기 대일공무역과 公木」, 『한일관계사연구』 42, 한일관계사학회, 2012.
- 다시로 가즈이 지음, 정성일 옮김, 『왜관-조선은 왜 일본사람들을 가두었을까?-』, 논형, 2005.
- 山本進, 『大靑帝國と朝鮮經濟』, 九州大学出版会, 2014.
- 양홍숙, 「17~18세기 譯官의 對日貿易」, 『지역과 역사』 5, 부경역사연구소, 1999.
- 이훈, 「조선후기 東萊府와 倭館의 의사소통 —兩譯 관련 ‘實務文書’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27, 한일관계사학회, 2007.
-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1.
- 田代和生, 『日朝交易と對馬藩』, 創文社, 2007.
- 鄭景柱, 「仁祖-肅宗朝의 倭人 求請慣行과 決濟方式」, 『貿易評論』 創刊號, 慶星大學校 貿易研究所, 1994.
- 정성일, 『朝鮮後期 對日貿易의 展開過程과 그 性格에 관한 研究-1790~1870년대를 중심으로-』,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1991.
- 정성일, 『조선후기 대일무역』, 신서원, 2002.
- 中村質, 「近世日朝私貿易論の再檢討」, 『水邨朴永錫教授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下, 1992.

1. 들어가며

話集은 말 그대로 이야기모음집이다. 『초량화집』 안에는 『증정교린지』이나 『변례집요』에 수록되어 있는 약조, 禁制의 내용이 있는가 하면, 왜관의 건물 구조와 왜관 운영과 관련된 내용, 초량왜관 주변 마을 등 『동래부읍지』에 나올 법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초량왜관이 두모포에서 이관할 무렵부터 小田幾五郎이 왜관에서 활동하던 시기까지 긴 시간대의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왜관을 출입하는 일본인과 조선인 특히 부산사람들의 모습도 담겨져 있다. 이처럼 국가적 차원의 내용부터 개인의 시선과 경험 기록까지 여러 층위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어 책의 성격을 규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게다가 모든 내용의 공통점은 초량이란 공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초량화집』이라고 명명한 것이 아닐까 한다.

초량이라는 지역은 초량왜관이 있는 초량, 구조량, 신초량 등으로 나타나므로 공간 역시 부산의 여러 지역으로 확장된다.

이 글은 『초량화집』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성격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의 부산을 고찰하는 데 『초량화집』이 중요한 텍스트로 사용될 수 있어서 ‘방법으로서의 『초량화집』’이라고 이름하였다. 첫째는 작성 시기의 중요성 때문이다. 조선시대 대일관계, 왜관과 부산과 관련한 대부분의 臚錄이 통신사 관련 등록류를 제외하고는 1754년을 하한으로 한다.¹⁾ 특히 등록은 경상감사의 장계-그 속의 동래부사의 장계, 또 그 속의 역관 수본-나 역관과 부산 수군진에서 보고를 담은 동래부사의 장계를 수록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등록류에는 조일관계의 현장인 부산 지역의 내용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조일관계 예규집이라고 할 수 있는 『변례집요』에서도 18세기 중엽 이후 기록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난다. 18세기 후반부터의 기록은 크게 줄어들고 남아 있는 것은 대체로 節目이나 事目 등이다. 그리고 19세기 중후엽의 조일관계 기록은 주제별로 묶여진 등록은 아니지만 『각사등록』에 수록되어 있는 관청별 啓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18세기 후반에 초고가 작성되는 『초량화집』에는 등록류에 수록되지 않은 부산 기록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둘째, 일본인이 본 부산이라는 시선 때문이다. 조선에서 왜관을 바라보는 시선은 외교와 무역을 비롯한 공식적인 절차와 체계, 그리고 통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조선의 위정자, 동래부사 등 관료가 아닌 일반 백성, 동래 사람들이 기록에 남는 것은 대부분 犯法, 사고 役의 대상자로서 나타난다. 그런데 『초량화집』은 小田幾五郎이 초량왜관을 중심으로 한 관점에서 초량 주변 지역으로 공간을 확대하면서 그 공간에 사는 지역 사람들을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그때 그곳’에 있던 부산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때 그곳’에 등장하는 부산사람들이 왜관 일본인과의 직간접 접촉,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역사적 서술 때문이다. 『초량화집』은 초고가 쓰여지고, 이후에도 수정,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 내용의 증보를 보이는 사료이다. 그런데 초량왜관으로 이전한 때부터의 내용으로 시작해서 小田幾五郎이 기록하는 시기까지의 변화상도 같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까지 서술의 시기가 확장되고 있다.

1) 한문종, 「조선후기 일본에 관한 저술의 조사연구-대일관계 등록류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86, 1999, 222쪽.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주텍스트로 사용하는 『조선초량화집』에 대한 소개를 먼저하고, 왜관 통제와 관련된 조선 수군의 체계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18세기 후반 왜관 운영과 대일 통제책의 변화가 『초량화집』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 변화 속에서 경계를 흔드는 두 나라 사람들의 움직임은 살펴보려고 한다.

2. 부산박물관 소장 『朝鮮草梁話集』 소개

『초량화집』에 관한 연구는 작자인 小田幾五郎 연구와 함께 시작되었다.¹⁾ 그리고 책의 체제, 다수로 남아 있는 『초량화집』 異本 존재, 이본에 대한 내용 비교가 이루어진 바 있다. 安彦는 東京都立圖書館 소장의 『초량화집』(이하 「都立本」)이 도서관까지 오게 된 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도립본」을 正書한 바 있다.²⁾

箕輪교수는 동경도립도서관에 소장된 『초량화집』을 「도립본」, 『釜山府史原稿』(1933~1937년)에 수록되어 있는 『초량화집』을 「所引本」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초량화집』이 최초로 쓰여진 것은 1796년(寬政 8년)이지만, 1800년 초량왜관에서 寫本이 책으로 묶여졌고, 이 때 1796년의 초고에서 내용이 수정, 증보되었는데 이것이 「도립본」임을 밝힌 바 있다. 두 『초량화집』을 비교한 후 「도립본」은 寬政7年(1795)까지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고, 「소인본」에는 관정9년(1797)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소인본」은 「도립본」을 저본으로 하여 1800년 『초량화집』을 수정해서 편집한 것이라고 고찰하였다. 그리고 『초량화집』이 수정, 가필되면서 5종의 사본이 있다고 하였다. 5종은 ① 「도립본」, ② 1825년[문정8년]본(조선사편수회 소장본(「국편본」), 소재불명), ③ 1825년본의 사본, ④ 『부산부사원고』 「所引本」 ⑤ 1796년의 초고로 보았다.³⁾

허지은은 대마도 大浦家 소장 小田幾五郎 관련자료를 정리한 바 있는데, 大浦家에 4권의 『초량화집』이 있고 서지사항이 ① 1825년 편집한 것을 70여 세에 필사한 것, ② 77세 보고들은 것을 스스로 적고 기록한 것(1830년, 文政 13년) ③ 小田藏 ④ 天保年 小田管作 稿라고 정리하였다.⁴⁾ 大浦家의 家藏本을 보면 『초량화집』은 1825년 이후에도 수정되었고, 초량왜관에서 근무한 바 있는 小田의 아들 小田管作이 『초량화집』에 ‘稿’라고 적었다는 것은 수정·증보된 『초량화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초량화집』은 이미 많은 異本들이 발견되고 있고 그 형태도 내용도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은 위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부산박물관 소장의 『조선초량화집』(이하 「부박본」)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⁵⁾ 「부박본」은 표제가 『朝鮮 草梁話集』이며, 내지에 한번 더 ‘朝鮮 草梁話集 全’으로 쓰고, 卷首題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草梁話集이라고 되어 있다. 「부박본」은 『초량왜관』(부산박물관 학술연구총서 제54집, 2017)에 『조선초량화집』의 표지와 초량객사, 연대청, 訓導家 등 삽입되어 있는 그림이 수록되어 있다. 「부박본」은 맨 마지막에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助手/園田庸次郎氏寫之/昭和二年一月六日關釜聯絡船中/ニテ校了ス/小田省棼 識」이라고 쓰여져 있다. 당시 경성제국대학 조수로 있던 園田庸次郎가 옮겨쓰고, 동 대학 교수로 있던 小田省棼가 1927년 1월 6일 관부연락선 안에서 교정 완료했다고 하여 이 책의 생산연도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러나 園田이 보고 쓴 『초량화집』은 다양한 異本 중에 무엇인지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

1) 田川孝三, 「對馬通詞小田幾五郎と其の著書」, 『書物同好會會報』 11, 1940.
 2) 安彦勸吾, 「草梁話集」, 『帝塚山短期大學紀要』, 1989.; 箕輪吉次, 「小田幾五郎『草梁話集』について」, 『일어일문학연구』 71, 2009; 허지은, 『왜관의 조선어통사와 정보유통』, 경인문화사, 2012.
 3) 箕輪吉次, 「小田幾五郎『草梁話集』について」, 『일어일문학연구』 71, 2009, 115~116쪽.
 4) 정확한 서지사항은 허지은, 『왜관의 조선어통사와 정보유통』, 경인문화사, 2012, 99쪽 참조.
 5) 「부박본」을 이해하는 데에는 정성일선생님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고 왜 필사를 하였는지도 쓰여 있지 않다. 다만 小田省吾가 1926년 2월 釜山府史編纂顧問으로 위촉되어 1932년까지 활동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⁶⁾

小田省吾는 1926년 부산부사 편찬 고문으로 부산에 왔다가 부산 지역 언론과 몇 차례 인터뷰를 하였다. 3월 2일 부산 잔교에서 부산일보와 인터뷰를 하였는데 “부산부사 편찬을 위해 지금 500여 종의 참고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그 안에 약 80책 정도를 주문했는데 그것도 2.3일 내 도착할 것이다. 오래된 것으로는 500년 전의 역사가 있는 부산이, 그 옛날 일본과 交通 관계를 가지고 있던 것은, 문록경장의 시대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⁷⁾라고 하여 부산 역사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중요시 하고 1926년 당시 자료 수집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小田省吾는 부산부사 편찬 고문으로 임명되기 1년 전에 1925년 조선사편수회 위원으로 임명되는데 이 무렵 부산 왜관 관련 글을 집중적으로 썼다. 「釜山の和館と設門とに就て」(『朝鮮』 125, 1925), 「釜山に於ける和館變遷と遺址」(一).(二).(三)(『부산일보』, 1925)⁸⁾ 등이다. 그런데 「釜山の和館と設門とに就て」는 초량왜관 시기의 글임에도 불구하고 참고문헌에는 『초량화집』이 없고 본문 중에 ‘小田曰く’라고 쓰고 초량왜관과 주변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쓰는 부분이 있다. 「釜山に於ける和館變遷と遺址」(三)에도 ‘小田曰く’이 나온다.⁹⁾ 『초량화집』을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니라 모두 1875년 운요호 사건으로 전권대신으로 파견되는 黒田清隆의 기록 속에서 부산 왜관에 대한 내용을 간접 인용한 것이다.

이러한 인연 때문이었는지 小田省吾 1926년 부산부사 편찬 고문에 임명이 되었다. 그리고 1927년에 『조선초량화집』을 필사하게 되어, 「부박본」은 「所引本」과 체제나 내용이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¹⁰⁾

「所引本」을 보면 ‘中略’, ‘下略’이라고 쓰여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부박본」과 「所引本」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所引本」 船滄修利は任官へ御達有之. 任官より釜山へ申出で, 各/鎮へ相達す. 大修理の節は, 東萊より差圖有之. 各鎮外/の工夫を以て修築有之. 以前は東萊府使為見分, 萬戶修理奉行を致す事有之. 或は内裨將見分に參り. 常躰の修/理には釜山より軍官見分にて多く相濟む. 海陸より石運び候事.

各鎮とは豆毛浦, 開雲浦, 包伊鎮, 西生眞 多太鎮/西平鎮 釜山鎮. 是を七鎮と云ふ. 此中釜山は頭取に付き, 主鎮と申候.

館中修理は七鎮より承り候. (中略) 船滄より鮑を取る事有之¹¹⁾

6) 小田省吾, 「小田省吾略歴自記」, 『辛未洪景來亂の研究』, 1934, 自記8쪽.

7) 『朝鮮時報』 1926년 1월 19일, 3면; 『부산일보』 1926년 3월 3일, 2면.

8) 이 세 편의 글은 『朝鮮史學』 1.2.3(朝鮮史學同攷會, 1926)에 수록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미 1925년경에 『부산일보』에 연재된 글이다. 「釜山の和館と設門とに就て」(1925)의 마지막 문장에 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9) 小田省吾, 「釜山の和館と設門とに就て」, 『朝鮮』 125, 1925, 157~158쪽.; 「釜山に於ける和館變遷と遺址」(三), 『조선사학』 3, 1926, 8쪽. 그런데 李氏朝鮮時代に於ける倭館の変遷-就中絶影島倭館に就て(『朝鮮支那文化の研究』, 1929)은 『조선초량화집』 필사 이후에 나온 논문인데 『초량화집』은 언급되지 않았다. 아마도 이 글에서의 초량왜관은 대부분 移館과 관련한 내용인 것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

10) 「小田幾五郎『草梁話集』について」(箕輪吉次, 『일어일문학연구』 71, 2009, 118~122쪽)에는 「所引本」에만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으므로, 이 발표문에서는 내용 차이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11) 『부산부사원고』, 민족문화, 1984, 318~319쪽.

「부박본」 船滄修築ハ任官へ御達有之任官より釜山へ/申出各鎮え上達大修理之節者東来より差図/有之各鎮外之人夫を以修築有之以前ハ東/萊府使為見分被見萬戶修理奉行を致候事/有之或は内(昇+卑)將見分ニ參り常躰の修理ニ/ハ釜山より軍官見分ニテ多く相濟む海陸より/石運び候事

(두칸 내리기)各鎮と唱候者豆毛浦開雲鎮包伊鎮西/生多太鎮西平鎮釜山鎮是を七鎮と/云此中釜山頭取ニ付主鎮と申候館中修理所/七鎮より承り惣而館中を七鎮守護した/る体に見請候

” 船滄之前夜分通船之節櫓聲を致候者以前/潛商專有之時被仰合為有之由近来ハ稀成/櫓聲

にて折節蟹船共通候事

” 船滄より蛇を取る事有之

「所引本」의 선창 수리 내용은 「도립본」에서도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所引本」의 ‘東萊より差圖有之. 各鎮外/の人夫を以て修築有之. 以前は東萊府使為見分,’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 「도립본」에는 ‘東萊より差圖有之諸方共へ人夫を以て修築有之近例館守/戶田頼母公三任之節大修理有之/以前大修理之節東萊府使/爲見分’로 되어 있다. 왜관을 대수리 할 때의 관수 이름이 「所引本」이나 「부박본」에는 없고, 그리고 「도립본」은 各鎮 대신 諸方로 쓰고 있다. 특히 선창 수리를 담당하는 각 진, 7진, 부산진을 주진이라고 부르는 내용은 「도립본」에서는 선창 수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一 修理所’에서 동관과 서관 수리를 맡은 각 진의 분포를 서술할 때 등장한다. 「도립본」에는 선창 수리 부분에서 내비장에 대한 서술이 없다.

「所引本」과 「부박본」을 비교해 보면 전체 문장 순서와 내용이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所引本」은 「부박본」에서 나타나는 가타가나 대신 히라가나를 사용하고, ‘云ふ, 付き’처럼 한자로만 표기된 것을 일본어로 작성하였다. 또한 よりは 고어로 표기된 것을 により로 바꾸었고, 蛇를 鮑로 많이 쓰는 한자로 바꾸었다. 전체적으로 고어나 한자, 사료적 표현을 당시의 언어로 바꾸려는 경향이 있을 뿐 내용이 달라진 것이 없다. 또한 「所引本」에서 ‘중략’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어느 異本에서 중략한 것인지를 알 수 없으나, ‘중략’ 다음의 문장이 「부박본」과 일치하고 있다. ‘중략’ 다음에 나오는 선창에서 전복 채취하는 내용은 「도립본」에는 없고 새로 추가된 내용으로 이후에 추가된 부분이다.

그러므로 「所引本」은 「도립본」보다는 「부박본」의 체제와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박본」을 정리하고 이를 小田省吾가 『부산부사일고』 편찬 때 참고문헌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3. 왜관과 경상좌수영

『초량화집』의 「도립본」, 「부박본」 모두 부산진, 다대진, 서평진, 개운진, 두모진, 포이진, 서생포진이 7진이라고 적고 있다. 小田幾五郎은 「부박본」에서 ‘惣而館中を七鎮守護した’라고 하여 왜관을 조선의 7진이 수호하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초량화집』에서 7진을 기록한 것은 「도립본」의 경우는 동관과 서관 건물의 수리를 담당하는 관청을 적은 부분이며, 「부박본」의 경우는 선창 수리 부분에서 언급된다. 「부박본」의 내용은 移館으로 시작해서 왜관 규모, 왜관 경계를 설명한 후 바로 선창 부분을 언급하므로, 『초량화집』 「부박본」 앞쪽에 7진 체제가 위치한다. 이후 7진과 관련된 언급은 各鎮 등으로 표현된다. 「도립본」을 기준으로 「부박본」에서는 내용 순서가 바뀌면서 해당 내용이 앞쪽으로 옮겨졌고, 왜관 안팎이 7진 체제로 운영되는 것

이 많아 글 모두에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小田幾五郎은 7진이 왜관을 수호한다고 하였지만 실제 7진 체제는 경상좌수영의 수군 편제로 즉 해안 關防 체계였다. 경상좌수영 산하의 7개 진이 위 7진과 동일하며 곧 왜관 통제 구조인 셈이다.

『조선초량화집』에서 7진이 기술된 부분을 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동래부	부산진	다대진 (多太)	두모진	개운진	포이진	서평진	서생진	비고
6복병			○	○	○	○	○	○	
선창 담당			○ (아래 선창)	○ (위 선창)	○ (위 선창)	○ (위 선창)		○ (위 선창)	
선창 점검	○ (대수리)	○ (일상 수리)							
동관수리		○ (관수가) ○ (개시대청)	○ (재판가)						부박본
서관 점검		○ (각진으로 전달)							
동서관 점검(대수리)	○ (내비장)		○						
초탐장				○	○				
춘추 성묘	○○	○			○				
수리소 수리감관		○							
수문군관	○ (3명)	○ (3명)							
절영도 출입	○	○							
守門 열쇠		○							
水門 열쇠		○							
개시일 수문		○ 부산군관							
탄소옥 탄막		○ 열쇠							
설문군관	○								
연향문 열쇠	○ (복병관리)								
객사 출입 열쇠	○ (설문관리)								
운미감관(운미소)	○	○							

위 표를 보면 바다, 선박과 관련된 선창 그리고 왜관 통제를 위해 설치한 伏兵所는 모두 수군 7진에서 배치되었다. 위 수군 배치는 『초량화집』의 異本에도 유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도

립본」에만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래부	부산진	다대진	두모진	개운진	포이진	서평진	서생진	
동관 수리		○ (관수가)	○ (재판가)						도립본
서관 수리			○ (동대청) ○ (동대청 동행랑)	○ (서대청 西頭) ○ (동대청 서행랑)	○ (서대청 동행랑, 서행랑) ○ (중대청 西頭)	○ (중대청)	○ (서대청) ○ (서대청 東頭)	○ (중대청 동행랑, 서행랑) ○ (중대청 東頭)	도립본

특히 「도립본」에는 왜관 내 서관 건물의 수리 담당을 대청-東西頭-동서행랑 별로 세세히 구분해 놓았지만 「부박본」에는 부산진에서 보고 받은 후 ‘各鎭으로 전달한다’로만 되어 있다. 이는 각 수군진별로 건물 수리 구역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던 것이, 19세기 이후 수군진의 제정이나 軍額 등의 변화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 한다.

이상과 같이 『초량화집』에는 7진이라는 경상좌수영의 수군 편제가 기록되어 있다. 원래 경상좌수영의 수군 편제는 임진왜란 후 2개의 첨사영, 8개의 만호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¹²⁾ 8개의 만호영 중에 1751년(영조 27) 1월 경상감사 민백상의 상소로 경상좌수영 하의 감포, 축산포, 칠포 3개 진에 폐지되었다.¹³⁾ 이러한 이유로 『초량화집』에는 10진이 아닌 7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1751년 이후 경상좌수영 하 7진 체계가 구축되어 있었고 7진 체계에 따라 왜관 수리, 복병 윤번이 시행되고 있었다. 동래부에 있지 않는 서생진의 군병이 왜관으로 오는 이유가 경상좌수영의 7진 체제와 관련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경상좌수영 수군 편제가 왜관 운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경상좌수영이나 경상좌수사에 대해 제대로 고찰하지 못하였다.¹⁴⁾ 지금까지는 외교와 무역, 왜관 운영과 관련해서 동래부사와 부산진첨사, 그리고 경상감사를 부각해 왔다.¹⁵⁾

경상좌수영이 조일교류, 조일관계에 개입하는 것은 통신사 때도 나타난다. 통신사가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 부산진에서 행해지는 전별연을 주관하는 것이 경상좌수사였고, 통신사 선박 건조도 경상좌수영에서 담당하였다.¹⁶⁾

왜관 통제와 경상좌수영의 관계는 경상좌수영관 읍지라고 할 수 있는 『萊營誌』¹⁷⁾에서도 살필 수 있다. 『내영지』 關防 조항에는 금정산성, 守門, 設門만 기록되어 있는데, 수문에 대해서

12) 김강식, 「17·18세기 부산의 행정과 관방」, 『항도부산』 10, 1993, 27~28쪽.

13) 『영조실록』 영조 27년(1751) 1월 3일, 『비변사등록』 영조 27년 1월 19일. 1850년에 작성된 『萊營誌』에는 헐파된 칠포, 축산포, 감포에 대해 만호와 군관은 없고, 鎭吏, 知印, 使令이 있다고 적고 있다(『내영지』 舟師 屬官).

14) 경상좌수사는 왜관 운영에서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통신사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공식 전별연 거행, 통신사행 부산 체류 때의 응접, 통신사 선박 건조 등이 그것이다. 현재 부산 영도구 해련사에는 통신사행에 집사로 간 경상좌수영 장교 이름이 적힌, 좌수사 전별연에 사용된 床卓이 보관되어 있다.

15) 양흥숙, 『조선 후기 東萊 지역과 지역민 동향-倭館 교류를 중심으로-』,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09, 34~58쪽.

16) 김동철, 「통신사행과 부산 지역의 역할」, 『통신사, 한·일 교류의 길을 가다』, 조선통신사문화사업추진위원회·경성대학교한국학연구소, 2003, 10~18쪽.

17) 경상좌수영, 『내영지』(1850).

는 ‘좌수영 남쪽 30리, 왜관 밖에 있다. 동래부와 부산진의 비장 각 1인이 윤번으로 거래 및 일본인과 조선인의 출입을 기찰한다’하고 설문에 대해서는 ‘좌수영 남쪽 27리에 있다. 1709년 부사 권이진이 장계로 조정에 알려 華夷의 구별을 엄하게 하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하여 수문 밖 3리 쯤에 바닷가에서 石城 수백 보를 쌓아 산 위에까지 이르게 하고, 거기에다 문을 설치하여 위와 같이 윤번으로 기찰하게 하고 일본인들은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내영지』 舟師 屬官 조항에는 좌수영 산하의 우후, 부산첨사, 다대첨사, 서생첨사, 울산부사, 기장현감, 포이만호, 두모만호, 개운만호, 서평만호 등 각진의 첨사를 나열한 다음 ‘譯學: 훈도 1인, 별차 1인’을 적어두었다. 수문과 설문, 역관을 군사 체계 속에 넣은 것은 좌수영의 왜관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邊情 조항에는 左漂와 右漂를 넣어 일본인 표류민에 대한 보고 및 처리에 좌수영이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⁸⁾ 『조선초량화집』에도 표류가 발생하였을 때 ‘下/毛よりハ釜山へ届釜山より水營へ申越水營より/啓聞=至候由’해서 부산첨사에게 보고 받고, 중앙으로 보고하는 기관으로 좌수영을 인지하고 있다.

표류와 같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은 수군의 관할 업무이지만, 바다가 아닌 왜관의 운영 역시 ‘邊情’에 속하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1780년 왜관에 화재가 발생하자 동래부사, 경상감사는 물론 경상좌수사도 같이 장계를 올렸다.¹⁹⁾

특히 부산 지역의 수군들이 관련된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경상좌수사의 역할은 더욱 커졌다. 1665년 5월, 6월 연이어 일본인이 육로로 다대포와 왜관, 왜관과 西山 甌臺를 오간 적이 있었다. 5월은 다대포에서 바람을 피하던 일본 선박의 일본인 3명이 육지에 내려서 왜관까지 걸어서 온 적이 있었다. 이 일로 다대진첨사와 다대진수호장, 서평진 權管은 막지 못한 일로, 부산진첨사는 다대진첨사의 馳通을 돌려보내서 동래부사가 알지 못하게 한 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또한 왜관 주변에 있는 역관, 소통사, 수문군관 또한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不告之罪’를 면하기 어려웠다.

6월은 왜관 일본인 6명이 대마도에서 나오는 선박을 살핀다는 이유로 왜관 밖 서산에 올라간 일이었다. 왜관을 나온 일본인을 잘 타일러서 왜관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이들을 막기 위해 파견된 군관과 무사, 수문군관이 일본인과 싸우고, 일본인에게 매질을 가한 일이 있었다. 잘 타일러서 일본인을 돌려보내야 하는데 두 나라 사람들이 싸우도록 한 것에 대한 처벌을 부산첨사에게 물었다. 그리고 수문을 지키던 把守 군인을 수영에 가두었다.

조정에서는 이 두 건의 처리를 모두 경상좌수사에게 맡겼다. 5월에는 이미 다른 일로 갇힌 부산진첨사를 제외하고 다대진첨사와 서평진 권관에게 곤장형을 내리게 하였다. 6월 역시 부산진첨사는 이미 拿命을 받았기 때문에 수문군관 등에게 곤장형을 내리게 하였다.²⁰⁾

즉 부산 수군 진영의 첨사들이 곤장형의 처벌 대상이 되었을 때 경상좌수사가 이들을 처벌하는 지위가 된다는 점이다. 특히 7진 중의 하나인 포이진의 경우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경상좌수영과 같은 경내에 있어 좌수영이 직접적으로 왜관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조선후기에 그려진 부산(동래) 지도 가운데 유일하게 왜관 외곽에 있는 禁標를 표시한 지도가 ‘경상좌수영지도’이다.²¹⁾ 경상좌수영은 왜관을 통제 공간으로 인식하고 왜관

18)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국역 내영지』, 2001, 27쪽, 31쪽, 39쪽.

19) 『전객사일기』 정조 4년(1780) 12월 22일.

20) 『변례집요』 권 15 水陸路去來, 을사(1665). 『순조실록』 순조 5년(1805) 11월 12일 기사를 보면, 통신사 易地聘禮와 관련된 서계를 가지고 온 일본 議聘使가 왔는데 조선 조정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훈도와 별차에게 이를 전달하라고 하는데 조정의 뜻을 전달하는 책임을 경상좌수사와 동래부사에게 하도록 하였다.

을 직간접으로 관할하는 위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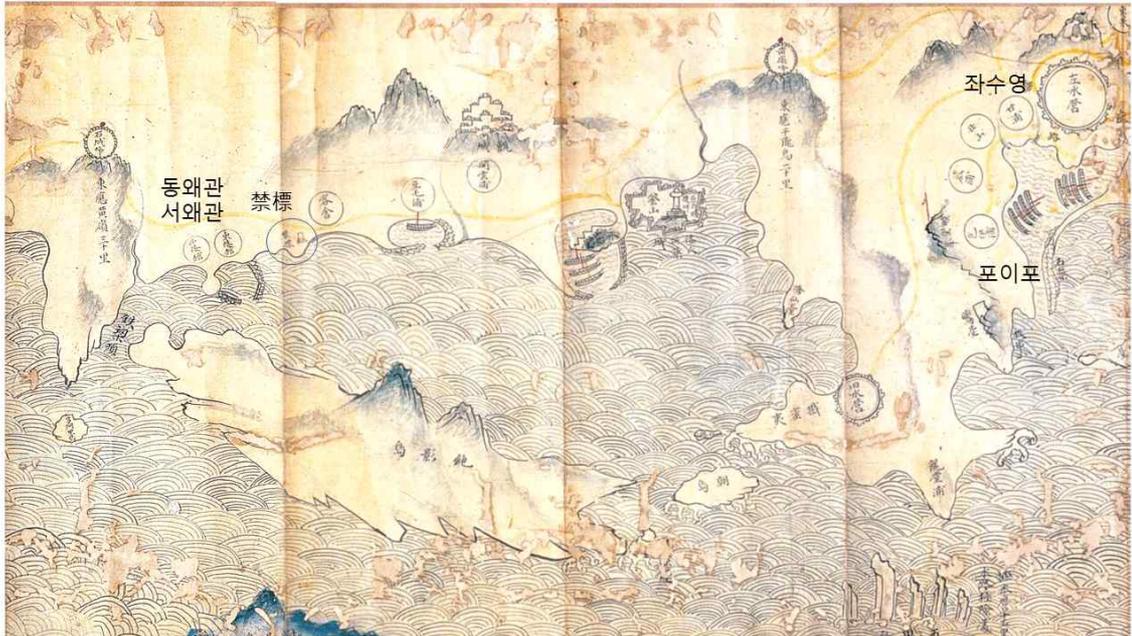


그림 2 경상좌수영지도(조선후기, 규장각 소장)

경상좌수영이 경상좌도의 수군을 관할하고 邊情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일본 선박에 대한 問情, 표착선이 생겼을 때였다. 부산을 중심으로 동해안으로 일본 선박이 표류될 때는 해운대 간비오봉수에서 확인하고, 가까운 수영에 바로 보고하였다.

4. 표류 기록에서 보이는 송환 과정의 변화

18세기 중후반은 조선에서 편찬되는 등록류가 거의 나오지 않는 시기이다. 『초량화집』은 초고가 1796년에 쓰여지므로 18세기 후반의 부산(동래)의 상황을 수록하고 있을 것으로 중요한 사료로 인식하였다. 『초량화집』에는 경상좌우도에 표착하는 일본 선박에 대한 송환과정이 나타나 있는데 그 변화상을 포함하고 있다. 아래는 「부박본」에서 발췌한 표류 내용이다.

가. 左右道^上ミ^下モトウエ^欠乘之船廻り来候節ハ萬戶致守護喇/叭令^旗等為持来候而守門ニ揚
り外向手数之通/取斗在之 近来ハ守護將と唱へ百摠書手^{軍官頭}杯別船/ニ乗り來相濟候事も有
之(중략)

나. 上^ミ下^モニ不時之事有之 飛船被差越候節/ハ吹嘘^{スイキヨ}を取り被差越候事 尤吹嘘無之船者/
嚴敷さ、へ御手入ニ相成たる事在之館より多太浦え三里/此所五日次無之 吹嘘不用 館より南川え三里右同
斷/館より加徳迄七里 館より玉浦迄拾八里(하략)

가의 내용을 보면 경상좌도와 경상우도로 일본 선박이 표류[欠乘]하면 대마도 선박의 경우는 만호가 수군의 나팔과 영기를 내세우고 왜관까지 인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근래에

21) 1872년 동래부지도, 부산진지도, 두모진지도, 개운진지도, 다대진지도 모두 금표 표시가 없다.

는 守護將이라고 하여 百摠이나 書記가 별선을 타고 와서 일을 마무리한다는 내용이다.

두모포만호와 개운포만호는 초담장으로서 부산 앞바다로 들어오는 일반 선박의 왕래를 살피는 지위에 있었다. 그리고 바로 바다에 나가 일본에서 들어오는 선박을 안내하여 왜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²²⁾ 그런데 ‘근래’에는 만호가 아니라 백총과 서기가 수호장이 되어 만호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내용이다. 백총은 동래부 別騎衛廳 또는 守堞廳 소속의 武任들이며 서기 역시 동래부 소속일 가능성이 높다. 별기위청과 수첩청에는 백총 위에 수장인 別將이 있으므로 백총이 만호와 같은 수군진의 지휘장급도 아니다. 즉 종4품 수군 만호이 아니라 지역의 무임들로 대신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조정에서도 논의되어 해당 관리가 처벌받기도 하였다.

하교하기를 “倭船의 왕래를 보고하는 狀啓가 아주 중대한 일인데, 下吏로 하여금 대신 보고하게 하고서 마음대로 任地를 비운 관리를 申飭하지 못한 경상좌수사와 경상감사는 緘辭 추고하도록 한다. 해당 기장현감은 만약 감영에 있으면 감사로 하여금 杖刑을 거행하게 하고, 만약 기장현에 도착하였으면 경상좌수사로 하여금 곤장형을 내리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²³⁾

기장쪽으로 표류된 선박에 대한 보고가 문제시 되자 경상감사와 경상좌수사에게 기장현감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하였다.

나의 내용은 ‘경상좌우도에 不時的 일이 있어서, 비선을 보내는 일이 있을 때는 취허[路文]를 가지고 건너갈 일인데, 또한 취허가 없는 선박은 엄히 단속을 받게 되는 일이다. 왜관에서 다대포까지는 3리, 이곳은 오이리가 없고 취허도 필요없음. 왜관에서 남천까지는 3리, 위와 같음. 왜관에서 가덕도까지는 7리, 왜관에서 옥포까지는 18리.’라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일본 선박의 좌우도 표착 때 조선측의 문정과 보고 과정을 적은 내용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不時的 일’ 역시 일본 선박 표류의 일이다.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왜관에서 선박이 표착한 곳에 여행증명서를 가진 일본의 비선을 보낸다는 것이다. 다만 왜관에서 3리 떨어진 다대포와 남천까지는 증명서 없이 일본 선박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3리를 벗어난 곳에 비선을 보낼 때에는 증명서를 가지고 간다는 말이다.

『경상좌수영계록』을 보면 ‘(대마도가 아닌) 다른 島의 표왜가 右沿을 해서 (부산쪽으로) 건너올 때는 다대포에 도착하여 館倭 등과 서로 만난 후 우암포로 데리고 가서 정박시키는 것이 이미 시행되는 예[自是已例]이다’라고 하였다. 1843년에 우암포로 온 일본 선박은 肥前州에서 온 것이었다. 표왜들이 水疾이 있어 우암포에서 왜관으로 옮기고, 표착선에 실린 물건들을 안전하게 옮기기 위하여 왜관에서는 우암포로 大船 1척과 飛船 3척을 보냈다.²⁴⁾ 이런 까닭에 왜관에서 우암포나 다대포로 보내는 비선에는 路文이 없어도 되었는데, 『초량화집』에서는 이외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 路文을 지녀야 한다는 의미인 듯하다.

『변례집요』 권15 「水陸路去來」를 보아도 표류가 발생하였을 때 다대포와 우암포로는 왜관 일본인들이 가서 문정을 하고 돌아오는 사례가 많다. 우암포가 동래부 南川面가 속해 있었기 때문에 『초량화집』에도 왜관과 남천 사이를 표시한 듯하다. 「水陸路去來」에는 표류, 표착 사

22) 『왜인구청등록』 갑술(1694년) 7월 22일. 부산첨사가 두모포만호 안계민을 초담장으로 정하여 대마도에서 나오는 小船을 데리고 와서 왜관에 정박시켰다는 내용이다.

23) 『영조실록』 영조 47년(1771) 4월 17일.

24) 『경상좌수영계록』 헌종 9년(1843) 8월 29일(『각사등록』 12(경상도편 2), 1987, 704쪽).

고가 발생하였을 때 왜관 일본인들이 다양한 이유로 왜관 밖을 벗어나는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1637년 울산에 표착한 伯耆島 사람들이 울산을 떠나 옛 수영 앞바다에 정박하고 있었다. 이때 ‘留館倭人四名 伯耆島漂倭往見次 訓導押領 出往漂倭船所泊舊水營前洋 當日即還事’라고 하여 당시 훈도가 호키 표민에게 갈 때, 왜관에 있던 일본인 4명이 같이 옛 수영 앞바다까지 갔다가 당일 바로 돌아온 적이 있다.²⁵⁾ 1639년에는 매를 실은 선박이 가덕도 앞바다에 표착하자 매 먹이를 주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왜관 일본인들이 왜관 밖을 나오려고 하였다. 아무리 막아도 듣지 않자 소통사는 船格整齊倭人 2명을 데리고 가덕도에 갔다가 매 모이를 준 후 돌아오기도 하였다.²⁶⁾ 여기서 조선은 먼저 ‘開諭防塞’ 즉 말로 일깨워 왜관 밖을 나오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일본인들이 조선 선박에 동승하거나 별도의 선박으로 표착지로 같이 이동하였다.

1659년이 되어서야 일본인이 왜관을 벗어나는 것을 막지 못한 소통사에 대한 처벌이 내려졌다. ‘禁徒倭乘小船一隻 出往于加德漂泊倭船處 還入 禁徒倭船越去多大 曾前雖或有之 而此是規外 故不能禁防是白在 小通事 從重決棍事 啓’²⁷⁾라고 하여 가덕도로 표착한 일본 선박을 살피기 위해 왜관 금도왜가小船을 타고 다대진을 지나 가덕도에 갔다가 돌아온 일이 있었다.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는 ‘規外’라고 간주하고 이를 막지 못한 소통사를 처벌해야 한다는 동래부사의 장계 내용이었다. 이전부터 있어온 관례와 왜관 밖을 벗어나면 안된다는 규례가 부딪친 사건이었다. 그후 왜관 일본인들이 표류된 일본 선박을 문정하기 위해 왜관 밖을 벗어나더라도 다대포를 지나 경상우도로는 갈 수가 없었다.

그런데 『초량화집』의 내용은 다대포와 우암포를 지나, 특히 경상우도로 비선을 보낸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1801년의 표왜 사례를 통해 유추해 보고자 한다. 당시 김해 명지도에 대선 1척이 표착되었는데 문정을 담당하는 별차가 가지 않고 船體를 살핀다는 명목으로 소통사가 먼저 파견되었다. 소통사는 표착선에 실렸던 짐[物]을 일본인과 함께 사사로이 하역을 하고, 부산쪽으로 데리고 와서 일본인이 마음대로 경계를 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소통사 박우춘은 일본인과 같은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배에 실린) 물건을 운반하여 돌아왔다는 이유로 처벌대상이 되었고 같이 간 소통사 김종복 역시 옥에 갇히게 되었다. 여기서 소통사가 데려간 일본인이 있는데, 이때에는 비선을 보내지 않고 왜관의 일본인을 보낸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런데 조정의 논의 중에 표착지가 김해 지역인지 동래 지역인지 정확하지 않고, 두 곳은 지척의 거리에 있으므로 越境으로 논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 죄가 사형이 아니므로 책임을 맡고 있는 帥臣(통제사)이 미미한 별차와 통사들을 바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하였다.²⁸⁾ 김해 명지도는 다대포와 가깝지만 관례에서는 벗어나는 지역이다. 그리고 다대포가 아닌 지역에 일본인을 대동하고 가는 소통사가 있었던 점은 표왜 송환에 대한 절차, 처리 방식 등이 오랜 ‘관례’ 등으로 익숙해져서 해이해지고 있는 시기가 반영하는 듯하며, 이에 『초량화집』에 반영된 것은 아닐까 한다.

25) 『변례집요』 권 15 水陸路去來, 정축(1637).

26) 『변례집요』 권 15 水陸路去來, 기묘(1639).

27) 『변례집요』 권 15 水陸路去來, 기해(1659).

28) 『비변사등록』 순조 1년(1801) 6월 5일. 而稱以看審船體 徑送通事 以至物之與倭私卸者 固已可駭 而倭人之擅許越境 罪難容貸 小通事朴遇春 則與倭同船 馳往他境 運歸物種 不以實告 究其罪犯.(중략) 漂船來泊處之爲金海境與東萊境 初未能詳細區別 且其相距 卽是咫尺之地 則不可遽以越境論 既非一律 則帥臣受閫外之責 么麼別差通事輩之直爲勘斷 有何難事

5. 『초량화집』 속의 일본인

「부박본」의 첫머리는 小田幾五郎이 초량이라는 지역의 범위를 설명한다. 當館[지금 왜관], 사카노시타[坂ノ下] 마을, 히토츠야[一ツ家]의 해변이다. 그런데 어느 異本이든지 마을 소개는 왜관 주변부터 두모포왜관이 있던 고관까지에 이르며, 왜관 주변의 명소 소개에서는 동래 범어사, 해운대와 물운대까지 이르기 때문에 『초량화집』은 초량뿐만 아니라 부산 일대의 다양한 곳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초량 설명 후 移館, 그리고 초량왜관을 소개한다. 왜관의 경계, 왜관 담장 수리, 선창, 왜관 안을 흐르는 中川, 서관과 동관 건물 이름과 수리 문제가 언급되어 있다. 이 다음이 일본에서 오는 송사와 표류 건이다. 그리고 약조제찰을 비롯하여 禁制가 나열되어 있고 왜관을 출입하는 조선인, 왜관 주변에 배치된 조선인에 대한 설명이 길게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訓導家와 別差家가 있는 사카노시타마을, 즉 任所를 소개하였다. 임소에서 상주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임소의 구조를 그림과 같이 설명하였다.

다음에는 왜관 개시와 조선 상인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다시 공간은 초량객사와 연대청으로 옮겨지고 있다. 왜관과 초량객사 사이의 炭幕과 해안 소개 후 사스토바라 즉 왜관 서쪽 지역으로 시선을 옮긴다. 사스토바라와 인근에 있는 여러 마을을 소개한 후에는 영도, 그리고 고관, 왜관 주변 명소를 소개하고 『초량화집』은 끝이 난다.

이렇게 공간을 옮길 때마다 곳곳에 있는 많은 조선인들이 등장하지만 왜관 밖을 다니는 일본인들도 많이 발견된다. 두모포왜관에서 초량왜관으로 옮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왜관 통제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래서 왜관 경계에 관한 約條 체결은 물론, 왜관 주변에 禁標를 세워 양국 사람들의 통행을 막았다.

그런데 『초량화집』에는 그 경계를 넘나드는 일본인이 나타난다. 그리고 일본인의 모습 속에서 18세기 후반의 부산과 부산 사람들을 상상할 수 있고, 조선측 사료에서는 볼 수 없는 부산의 모습을 복원할 수도 있다.



그림 3 1873년 殿牌移奉安時侍衛圖式

첫째로는 조선의 의식을 보는 일본인들이다. 「부박본」, 「도립본」 모두 초량객사의 殿牌 移安(奉安)式 모습이 그려져 있다. 초량객사를 수리할 때에는 전패를 영가대로 옮기는 일이 많았다. 초량객사는 일본인들이 와서 보는 장소이므로 훼손이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수리를 해야하는 건물이었다.²⁹⁾ 전패 이안 또는 봉안식은 ‘依丙午年例’처럼 전례에 따라 행해지며 택일을 받아 동래부사를 비롯하여 900명이 넘는 인원이 움직이는 거대한 의식이였다.³⁰⁾

그러므로 왜관의 일본인들도 장대한 조선의 의식을 보기 위해 구경을 나섰다. 뿐만 아니라 초량객사를 구경하기 위해 일본인이 훈도와 별차에게 요구하면 동래부사의 허락을 받고 구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량객사는 일본 사절이 왔을 때 肅拜禮를 하는 국왕을 상징하는 공간이므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동래부사의 허락만 받으면 일본인들이 왜관을 나가서 구경을 할 수 있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위에서 말한 객사 전패 이안(봉안)식은 조선인에게도 구경거리가 되어 ‘다른 곳에서 구경을 와서 사카노시타 주변에는 숙소가 없다라고 한다’라는 내용이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므로 다른 지역에서 구경오는 조선인이 있었고 그들 때문에 숙소가 없다는 것이다.³¹⁾ 의식 준비를 위해 匠人 등 많은 사람들이 부산진으로 모여들어 임시 가옥을 짓기도³²⁾ 하므로 숙소는 이미 부족한 상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는 조선인 마을에 들어가는 일본인들이다. 일본인들이 왜관 서관 밖에서 매추리 사냥을 즐겨한 것은 그림으로도 남아 있을 정도이다. 『초량화집』에도 이전부터 해오던 일이라고 했는데, 사냥을 하다가 조선인의 농사를 훼손해서, 조선인과 싸움을 일으키는 일본인이 기록되어 있다. 반면 소전기오랑은 조선의 國忌日을 잘 따져서 왜관 밖을 나가지 말도록 하여 조선인과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³³⁾ 그리고 구덕산 아래 마을에서는 조선인은 일본인들이 오는 것을 싫어하지만 무시하는 정도는 아니므로 禁標 밖에서는 조선인을 만나도 잘 배풀어줄 것,³⁴⁾ 대치촌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사람됨이 나빠서 일본인들이 마을에 들어가면 싸움을 하고 산쪽에서 돌을 던져 큰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였는데 근래에는 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싫어하지만 앞과 같은 일은 없다라고 하였다.³⁵⁾

왜관을 초량으로 옮긴 후 조선측에서는 왜관 경계를 강화하고 출입을 통제하기 禁標를 세웠다. 그리고 난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의 조선의 대응 등을 보면 왜관 문밖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小田幾五郎이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기록한 『초량화집』에는 朝市 등 거래 장소가 아니지만 조선인과 접촉하는 일본인이 발견된다. 왜관 주변의 조선인 마을에서는 일본인이 왕래하기도 하는데 마을에 따라 일본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고 하는 점이 흥미롭다. 또한 조선인들은 자신들의 생활 공간으로 들어오는 일본인들을 처음에는 싫어하고 강하게 배척하지만, ‘近來=’이라고 쓴 부분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선인의 태도가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인들도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산사람들이나 왜관 일본인들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기록 속에서 발견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런데 『초량화집』은 왜관과 주변 마을을 아우르는 초량을 소개하면서도 왜관 운영과 같은 제도적 측면, 공식적인 무역과 상인 외 주변 마을, 옛 이야기, 마을 유래, 생활, 일상 등 여러 층위의 이야기를 수록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지는 인식 등을 발견할 수 있다.

6. 맺음말

29) 『승정원일기』 정조 17년(1793) 12월 18일.

30) 『초량객사중수록』 2, 계유(1873) 9월 1일(『각사등록』 13(경상도편 3), 1987, 513~514쪽)

31) 「부박본」. “日本人見物川より此方不苦事/他所より見物来り坂ノ下邊宿無之ト云”, “尤日本人見物之望在之せつは/任所より明け候様府使より申付有之”

32) 『초량객사중수록』 2, 계유(1873) 9월 1일(『각사등록』 13(경상도편 3), 1987, 514쪽)

33) 「부박본」. “附鶉狩之節前比より時々喧嘩起り土臺者作/物を損し”

34) 「부박본」. “此所=行事嫌候へ共 靚程/=者無之 兎角際木外と心得朝鮮人=逢候而も/善ク饗ヒ置候事”

35) 「부박본」. “此村之/者共前比ハ人物惡敷日本人村家ニ至候得/ハ喧嘩を致山手より礮を打時々大喧嘩有之/候處 近來ニ村家ニ入候事ハ嫌候へ共 右様/之事無之”

1. 머리말
2. 개항 전의 역관(통사) 활동
3. 조일수호조규와 그 후속 관련 활동
 - 1) 조일수호조규 때의 활동
 - 2) 두모진해관 수세, 인천·원산 개항, 한행이정
4. 수신사·조사시찰단의 통역·영접
5. 경제 활동
6. 조선어·일본어 번역책 저술·출판
7. 맺음말

1. 머리말

이 글은 쓰시마(對馬)번 출신 조선어역관 나카노 교타로(中野許多郎, 中野許太郎)의 개항 전후 활동을 살펴본 연구다. 그의 할아버지는 오다 이쿠고로(小田幾五郎, 1755~1831), 아버지는 오다 칸사쿠(小田管作)다. 이쿠고로는 『상서기문』·『통역수작』·『초량화집』·『북경노정기』 등, 칸사쿠는 『상서기문습유』 등을 저술한 유명한 역관이다. 나카노가 이쿠고로의 손자, 칸사쿠의 아들이란 사실만으로도, 그의 역관 활동은 주목할 만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나카노의 이런 인적 관계는 학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오다 가계를 소개한 대표적인 연구에도¹⁾ 나카노에 대한 언급은 없다. 최근 나카노가 지은 『日語工夫』(1891)를 검토한 연구가 나왔다.²⁾ 독립된 주제로 나카노를 고찰한 유일한 연구인데도, 가계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다에서 나카노로 성이 바뀌어서, 인적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나카노와 오다씨의 관계는 “『小田家譜』는 小田管作이 작성한 것 같은데, 그것에 管作의 차남 中野許多郎이 가필보족하였다고 생각된다. 『(幾五郎乍恐)口上覺(扣)』, 『小田家先祖代々』도 中野許多郎이 63세 때 쓴 것이다”³⁾라는 해제가 유일하다. 해제를 쓸 때 안도 료순(安藤良俊)은 히라야마 쿠라지(平山庫次)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쿠라야마는 칸사쿠가 외가쪽 증조부라서, 이즈하라(嚴原) 카이간지(海岸寺)에 있는 오다家 무덤을 이따금 참배했고, 또 오다家 자료도 약간 소장하고 있었다. 안도는 히라야마의 도움으로 이쿠고로·칸사쿠 무덤을 확인하고, 자료를 열람·조사하였다. 안도가 나카노 나이를 63세라고 한 것으로 보아, 나카노가 칸사쿠의 아들(차남)인 것은 틀림없는 듯하다.⁴⁾

나카노는 초량왜관·초량공관(일본공관)·관리청·영사관에서 역관(통사, 외무서기생)으로 활동했

1) 山口華代, 「朝鮮語通詞小田幾五郎とその墓所について」 『對馬歴史民俗資料館報』 32, 2009.
 2) 黃雲, 「韓國開化期の日本語學習書『日語工夫』(1891)に關する考察」 『일본어문학』 67, 2015.
 3) 安藤良俊, 「(象胥紀聞)解題」 『象胥紀聞』, 小田幾五郎 著 鈴木棠三 編, 村田書店, 1979, 148쪽. 해제는 安藤良俊/鈴木棠三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箕輪吉次, 「小倉文庫本『北京路程記』について」 『일어문학연구』 75, 2010, 46쪽에서도 해제를 인용하고 있다.
 4) 직원록에는 나카노는 ‘長崎縣 平民’이다. 최보영, 「개항 초기(1876~1880) 부산주재 일본관리관의 파견·활동과 그 특징」 『동국사학』 57, 2014, 486쪽. 이 논문에는 『일어공부』도 언급하였다.(487쪽)

다. 부산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개항 전후 일어난 한일관계사의 주요한 사건에서 통역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활동을 독립된 주제로 종합적으로 정리한 연구는 아직 없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개항 이전 할아버지 이쿠고로, 아버지 칸사쿠에 집중되어 있다. 쓰시마번의 조선어통사에 관해서는 이미 연구사가 정리된 바 있다.⁵⁾ 이 글은 파편화된 활동들을 정리하여, 나카노 교타로라는 역관(통사)를 드러내고, 이쿠고로·칸사쿠와 이어보려고 한 첫 기초적인 작업이다.

2. 개항 전의 역관(통사) 활동

나카노가 언제 쓰시마번 조선어역관으로 활동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현재로는 1864년이 처음이다. 1864년 『每日記』를 분석한 정성일 연구에 단편적으로 언급된 나카노의 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64년 1월 24일 왜관에 표범으로 보이는 맹수가 나타났다. 표범 포획에는 一代官 등 많은 일본인이 동원되었다. 通詞 나카노도 맹수 포획에 참가하였다.⁶⁾ 1864년에 열린 초량왜관 開市는 1년 통틀어 12번이었다. 1864년 1월 28일 개시대청에서 열린 첫 개시(初市)에 통사도 참석하였다. 통사를 데리고 가는 것이 격에 맞지 않으나, 최근에는 데리고 가게 해서 이날 동반하였다는 것이다. 개시에 참석한 통사는 勤番通詞 助勤 나카노와 五人通詞 고쿠분 료스케(國分良介)였다. 一代官과 함께 참석하였다. 개시와 관련된 일 등에 대해 통역하였다.⁷⁾

1864년 4월 6일 告襲使를 태운 順榮丸이 초량왜관을 출발하였다. 승선자 명단에는 통사 나카노도 포함되어 있었다.⁸⁾ 1864년 11월 8일, 9번째 개시가 열렸다. 都中 8명이 개시에 들어와 開座하였음을 代官 나카노가 一代官에게 알렸다.⁹⁾ 이날은 ‘代官’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관은 ‘町代官’을 가리킨다¹⁰⁾고 생각한다. 이처럼 나카노는 1864년 ‘근번통사’로서 왜관에서 근무하였다.

쓰시마번 통사는 五人通詞→ 稽古通詞→ 本通詞→ 大通詞 등급이 있었다. 모두 통사직을 전문으로 하는 ‘通詞中’에 속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전문 통사는 아니면서 통사를 돕는 ‘御免札’(詞稽古御免札, 詞稽古札)을 거친다. 전문 통사의 주된 근무지는 이즈하라(후추, 府中)·왜관·나가사키 3곳이다. 왜관·나가사키에는 ‘勤藩通詞’가 주재하였다. 왜관 근번통사는 계고통사·본통사·대통사 중에서 선발되었다.¹¹⁾ 오다 이쿠고로는 1774년(20세) 御免札, 1776년(22) 오인통사, 1779년(25) 稽古通詞·長崎勤番, 1781년(27) 朝鮮勤番, 1785년(31) 朝鮮勤番, 1789년(35) 본통사, 1795년(41) 대통사 등을 역임하였다.¹²⁾

5) 허지은, 「쓰시마 조선어통사 연구의 동향과 과제」 『상명사학』 13·14, 2008.

6) 정성일, 「증가문서와 왜관-1864년 매일기로 본 왜관과 한일관계-」 『대마도의 증가문서』(발표 자료집), 2013, 82~83쪽 <표 28>에서 인용.

7) 『(一代官)每日記』 1864년 1월 28일. 정성일, 「왜관 개시 때 제공된 일본요리 기록의 비교(1705년, 1864년)」 『한일관계사연구』 52, 2015, 242쪽; 위의 논문, 2013, 48쪽.

8) 정성일, 위의 논문, 2013, 90쪽.

9) 『(一代官)每日記』 1864년 11월 8일. 정성일, 위의 논문, 2015, 247~248쪽에서 인용.

10) 정성일, 위의 논문, 2013, 78쪽.

11) 米谷均, 「對馬藩の朝鮮通詞と雨森芳洲」 『海史研究』 48, 1991, 99~100쪽. 川端千恵, 「對馬藩朝鮮語通詞の朝鮮認識-大通詞小田幾五郎を中心に」 『문화교섭: 동아시아문화연구과원생논문집』 1, 2013, 312쪽. 酒井雅代, 「近世後期對馬藩の朝鮮通詞」 『일한상호인식』 6, 2015, 51쪽. 김우빈, 「근세 쓰시마 번의 조선어 통사의 직계와 보장에 대하여」 『조선시대 속의 일본』, 허남린 엮음, 경인문화사, 2013, 146쪽. 김우빈, 135쪽 오인통사는 대통사의 오역이다.(319쪽 일본문 참조)

12) 田代和生, 「解説 小田幾五郎と『通譯酬答』」 『通譯酬答』, ゆまに書房, 2017, 508~515쪽 <小田幾五郎

오다와 나카노를 바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오다의 경력으로 보아 나카노도 御免札, 오인통사를 거친 후 朝鮮勤番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카노의 생몰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현재까지 없다. 1876년 1차 수신사 정사 김기수는 나카노가 40에 가깝다고 하였다.¹³⁾ 이것이 맞다면, 1864년 나카노 나이는 30세 전이다. 나카노는 20대에 쓰시마번 통사로 활동했다고 생각한다.

1870년 4월 일본 주차 북독일연방 대리공사 브란트(Max Brandt)는 외무성 허가를 받고, 군함 '헤르타(Hertha)'로 타고 주고쿠(中國)·시코쿠(四國)·규슈(九州) 연안을 시찰하였다. 브란트는 부산 시찰을 계획하면서 나가사키현에 조선어 통역을 부탁하였다. 나가사키현은 쓰시마에 의뢰하여, 나가사키에 체재 중인 통사 나카노를 고용하였다. 나가사키를 출발한 헤르타함은 1870년 5월 3일 부산에 입항하였다. 배에는 외무소승 마와타리 토시유키(馬渡俊邁), 나카노 등 일본인 5명도 타고 있었다.¹⁴⁾

異樣船인 독일 군함이 부산에 무단 입항한 것은 큰 사건이었다. 왜관에서 근무했던 쓰시마번 통사 나카노가 동승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은 倭洋이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큰 충격을 받은 것이다. 동래부사 정현덕은 훈도 안동준·별차 이주현 등을 왜관 관수에게 보내어 일본인이 동승한 것을 비판하였다. 특히 나카노의 행동은 매우 痛惡하므로, 쓰시마에 통보하여 특별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¹⁵⁾

일본측은 나카노가 개인 자격으로 동승한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안동준은 조정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조선측의 강력한 항의로 헤르타함은 다음날 출항하였다. 동래부사의 장계를 접한 조정은 5월 12일 예조참의 이름으로 쓰시마번에 엄중 항의하였다. 청나라 예부에도 자문을 보내 '倭洋 通謀' 혐의를 알렸다¹⁶⁾ 헤르타함 사건으로 '왜양 일체'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한일 관계의 파국이 현실화 되어 갔다.¹⁷⁾ 나카노는 1870년 당시 나가사키 '勤藩通詞'로 활동하고 있었다. '왜양 통모', '왜양 일체'라는 이 사건의 중심에 나카노가 있었다. 브란트가 나가사키에서 부산에 갈 통역을 요청했을 때, 나카노의 능력이 뛰어났기[敏出 崎人] 때문에 선발된 것이다.¹⁸⁾

1871년 1월 21일 전라도(제주도) 대정현 우면 일과리에 사는 姜信周(선주)·高成鶴(사공) 등 5명이 고기잡이 나갔다가 표류하였다. 이들은 1월 30일 미국 선박에 구조되었다. 이 배는 2월 22일 상하이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3월 19일 상하이를 떠나, 23일 나가사키에 도착했다. 강신주 등은 4월 10일 일본 배로 떠나, 23일 쓰시마 후추에 도착했다. 이들은 5월 25일 기장현 무지포에 도착하였다.¹⁹⁾ 이들의 표류 내용은 이즈하라번 니이 한자에몬(仁位半左衛門)이 3월 25일 발신한 '口上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문서는 표류민이 3월 23일 나가사키에 도착한 후 발신된 것이다. 문서에는 니이와 함께 통사 칸자키 도쿠지로(神崎徳次郎)·나카노의 이

關係年表> 참조.

13) 김기수 지음·구지현 옮김, 『일동기유』, 보고서, 2018, 82쪽.

14)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지음·김종학 옮김, 『근대 일선관계의 연구』(상), 일조각, 2013, 253쪽.

15) 『동래부계록』 고종 7년(1870) 5월 5일(『각사등록』 12, 256~257쪽).

16) 『일성록』 고종 7년(1870) 5월 12일. 『승정원일기』 같은 날. 『동문회고』 속편 변금. 다보하시 기요시 지음·김종학 옮김, 위의 책, 254~255쪽.

17) 현명철, 「개항전 한·일 관계의 변화에 대한 고찰-일본의 개항부터 왜관접수까지의 일본사 이해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72, 1996, 259~260쪽.

18) 『조선사무서』 5책, 명치 3년(1870) 8월 19일(음) 「朝鮮事務課ヨリ浦瀨最助訓導ト對話書ヲ副へ省議ニ備フル書」(영인본 『조선외교사무서』 2, 성진문화사, 1978, 31~50쪽)

19) 『동래부계록』 고종 8년(1871) 6월 6일(『각사등록』 12, 355~363쪽). 6월 7일(『각사등록』 12, 410~415쪽). 『통제영계록』 6월 10일(『각사등록』 17, 195~203쪽).

름이 병기되어 있다.²⁰⁾ 동래부사 정현덕은 이들을 감옥에 가둔 후, 原籍 관청에 송환할지 여부를 물었다. 의정부의 주장에 따라 원적지로 돌아갈 수 있었다.²¹⁾ 표류민을 데리고 온 ‘領來通事’²²⁾가 나카노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口上覺’에 칸자키와 함께 이름이 있는 것으로 보아, 표류민 송환과 관련된 통사 역할을 하였다.

『조선사무서』에 기록된 1872년 「倭館其他勤番通事氏名」에는 大通詞 스미나가 유스케(住永友輔, 다츠야스·辰妥), 우에노 케이스케(上野敬助, 가게노리·景範), 나카무라 기이치로(中村喜一郎), 나타노, 가와모토 신스케(川本信助), 아라카와 킨스케(荒川金助, 도쿠지·德滋)가 있다.²³⁾ 1872년 당시 나카노는 초량왜관 근번통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이다.

1868년 메이지 정부가 탄생되었다. 메이지 정부가 조선 외교권을 장악하면서, 쓰시마번이 주관하던 조선어통사 양성은 외무성 소관이 되었다. 외무성은 이즈하라의 코세이지(光清寺)에 ‘조선어학소’를 1872년 10월 개설하였다. 메이지 정부가 설치한 최초의 조선어 교육기관이다. 이 어학소는 1873년 8월 폐지되고, 10명의 稽古通詞를 대상으로 하는 어학소가 1873년 10월 초량왜관 兪官屋에 개설되었다. 부산 ‘초량어학소’는 개설과 동시에 문부성으로 이관되었다. 문부성 소속 최초의 국립외국어학교가 탄생된 것이다.²⁴⁾

초량어학소의 조선어 교원은 나카노, 우라세 히로시(浦瀬裕·유타카, 사이스케·最助), 金守喜(조선인) 등이었다.²⁵⁾ 1874년 3월 18일 히로츠 히로노부(廣津弘信)가 발신한 내용을 보면, 외무성 14등출사(出仕) 아라카와 도쿠지(荒川德治, 德滋)가 稽古通詞로서 초량공관 교수로 근무하는데, 그를 면직시키고 후임으로 우라세·나카노 중 1명을 교수로 삼고, 등급은 같은 등급으로 한다는 것이다.²⁶⁾

이상에서 본 것처럼, 나카노는 개항 전 1860·70년대에 쓰시마번 조선어통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초량왜관·나가사키에 파견된 ‘勤藩通詞’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1868년 메이지 정부가 수립된 후 1871년 ‘廢藩置縣’이 실시되었다. 1872년 외무성이 초량왜관을 접수하였다. 1873년 초량공관이 일본공관(초량공관)으로 바뀌었다. 나카노도 쓰시마번 통사에서 외무성 서기생(통역)으로 바뀌었다. 1873년 부산 ‘초량어학소’가 개설된 후에는 교원(교수)로 활동했다. 다만 교원을 역임한 정확한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3. 조일수호조규와 그 후속 관련 활동

1) 조일수호조규 때의 활동

20) 『조선사무서』 7책, 명치 4년(1871) 3월 25일(음) 「嚴原藩ヨリ朝鮮人米船ノ救援ヲ受ケテ長崎ニ來著スルニ依リ差出セシ書」(『조선외교사무서』 2, 559~562쪽). 『조선사무서』 8책, 「大島友之允ヨリ米船ニ救ハレタル朝鮮人ノ義外務卿ニ呈スル書」(『조선외교사무서』 3, 53쪽).

21) 『비변사등록』 고종 8년(1871) 7월 5일. 『승정원일기』 같은 날.

22) 『동래부계록』 고종 8년(1871) 6월 6일(『각사등록』 12, 356쪽).

23) 『조선사무서』 13책(『조선외교사무서』 4, 459쪽).

24) 大曲美太郎, 「釜山に於ける日本の朝鮮語學所と『交隣須知』の刊行」 『ドルメン』 4-3, 1935, 31쪽. 松原孝俊·趙眞璟, 「嚴原語學所と釜山草梁語學所の沿革をめぐって-明治初期の朝鮮語教育を中心として」 『言語文化論究』 8, 1997, 48~57쪽. 정승혜, 「小倉文庫 소장 나가무라쇼지로 자료의 국어학적 고찰」 『일본문화연구』 26, 2008, 102쪽. 초량어학소 소속을 松原孝俊·趙眞璟은 문부성, 정승혜는 외무성으로 보고 있다.

25) 大曲美太郎, 위의 논문, 33쪽.

26) 『조선사무서』 25책, 「荒川免職ト後任」 <廣津弘信ヨリ荒川德滋出仕ヲ免スル伺書>(『조선외교사무서』 8, 447쪽).

1876년 2월 26일(음 2월 2일) 신현·윤자승과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가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였다. 조일수호조규를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8월 24일(음 7월 6일)에는 조인희와 미야모토 오카즈(宮本小一)가 ‘수호조규부록’, ‘통상장정’(무역규칙)을 체결하였다. 나카노가 조일수호조규 체결 현장에 통역으로 직접 참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는 조일수호조규·부록 체결 대표단 수행원으로 동행하였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875년 12월 9일(음 11월 12일) 조일수호조규 체결을 위한 특명전권변리대신으로 구로다가 임명되었다. 12월 27일(음 11월 30일) 특명전권변리부대신으로 이노우에가 임명되었다. 이날 주요 수행원도 임명되었다. 육군소장 다네다 마사야키(種田政明), 외무권대승 미야모토 오카즈, 육군중좌 가바야마 스케노리(樺山資紀), 외무권대승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개척소판관 야스다 사다노리(安田政則), 개척간사 고마키 마사나리(小牧昌業), 准육군소좌 나가야마 다케시로(永山武四郎), 개척사 7등출사 스즈키 다이스케(鈴木大亮), 외무4등서기생 이시바타 사다(石幡貞)·우라세, 6등서기생 아라카와·나카노 등이다.²⁷⁾ 이시바타·우라세·아라카와·나카노는 통역 수행원으로 선발된 것이다.

사절단이 출발하기 전인 1875년 12월 19일(음 11월 22일) ‘先報使’로 외무성 관리(이사관) 히로츠 히로노부가 부산에 와서, 훈도 玄昔運에게 구로다 파견을 통보하였다. 사절단은 군함 닛신(日進) 등 6척으로 1876년 1월 15일(음 1875년 12월 19일) 부산에 입항했다. 일본 함선은 1월 17일부터 차례로 부산항을 출항, 강화도로 향했다.²⁸⁾ 1876년 1월 2일(양 1월 27일) 경기도 남양부사 姜潤이 楓島 부근에 정박한 닛신함에 가서 問情한 후 기록한 수행원 명단이 『을병일기』에 있다. 명단에는 나카노도 포함되어 있다.²⁹⁾

2월 11일 공식 1차회담에 앞서 2월 5일 모리야마 시게루와 윤자승 사이에 예비회담이 있었다. 이 예비회담에 기초하여 모리야마는 전권변리대신의 명령에 따라, 2월 8일 아라카와·나카노, 호위병 등을 거느리고 강화부로 갔다. 그는 조선 부대표 윤자승에게 일본 대표가 2월 10일 강화도에 상륙하여, 11일 공식회담을 할 예정임을 통고하고는, 바로 숙소 준비에 착수하였다.³⁰⁾ 나카노는 공식 1차회담을 위한 준비 작업의 통역으로 활동한 것이다.

조일수호조규 체결을 주도한 미야모토 오카즈는 6개월 안에 두 나라 위원이 경성이나 강화부에서 통상장정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수호조규 제11관에 따라 이사관으로 파견되었다. 파견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76년 6월 7일(양) 미야모토 이사관의 조선 파견 명령이 있었다. 6월 17일 가와카미 후사노부(河上房申, 외무대록), 오쿠 요시노리(奥義制, 외무중록), 우라세(3등서기생), 이시바타(4등서기생), 아라카와·나카노(6등서기생), 오마 게지(尾間啓治, 7등서기생), 니라야마 야스타카(仁羅山篤孝, 13등출사), 스미나가 다츠야스(14등출사) 등에게 수행을 명하였다.³¹⁾ 그리고 우라세·아라카와·나카노·오마는 당시 일본에 체재하고 있는 수신사(김기수)가 귀국하는 배[黃龍丸]에 승선하도록 명하였다.³²⁾

27) 다보하시 기요시 지음·김종학 옮김, 앞의 책, 413쪽. 김종학, 「근경에서의 탈출: 조일수호조규의 체결 과정」 『조일수호조규-근대의 의미를 묻다』, 한일관계연구소 편, 청아출판사, 2017, 79쪽, 128쪽.

28) 김종학, 위의 논문, 83~86쪽.

29) 김종학 옮김, 『국역 을병일기』, 병자년(1876) 1월 4일(양 1월 29일), 국립중앙도서관, 2014, 20쪽, 133쪽.

30) 다보하시 기요시 지음·김종학 옮김, 앞의 책, 436쪽.

31) 김흥수, 「조일수호조규 부속 조약의 결과 속」 『조일수호조규-근대의 의미를 묻다』, 145쪽. 다보하시 기요시 지음·김종학 옮김, 앞의 책, 551쪽. 김의환, 『조선대일교섭사연구』, 통문관, 1966, 450~451쪽. 사카다 모로토 지음·이효정 옮김, 『향한필휴』, 보고서, 2018, 123쪽. 『동문회고』 4, 附編, 公使 1, 「公使及隨員」에는 나카노 관직이 외무권소록이다.

외무경은 6월 13일, 미야모토 이사관 파견을 수신사 김기수에게 통고하고, 예조에 전달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미야모토의 중요한 임무는 조일수호조규 부록과 조일무역규칙 및 무역관련 사항의 협정이었다.³³⁾ 수신사를 태운 배는 윤5월 5일(양 6월 26일) 이즈하라에 도착하였다.³⁴⁾ 미야모토는 수행원, 야노 요시테츠(矢野義徹, 해군軍醫) 등과 함께 군함 아사마(淺間)로, 7월 14일 이즈하라에 도착하였다. 배는 수신사 귀국 호위를 마치고 기다리던 우라세·아라카와·나카노 등을 태우고 밤에 출항, 7월 15일 아침 부산에 도착했다.³⁵⁾ 부산에 도착한 당일, 우라세는 외무중록, 야마노조 스케나가(山之城祐長)는 외무권중록, 아라카와·나카노는 외무권소록에 임명되었다.³⁶⁾ 이처럼 나카노는 1876년 8월 24일(음 7월 6일) 체결된 ‘수호조규부록’, ‘통상장정’(무역규칙) 때, 일본 대표 미야모토 이사관의 통역으로 활동하였던 것이다.

조일수호조규 체결과 관련하여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것은 나카노가 소장한 사진이다. 국편 홈페이지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는 ‘江華古府 寫眞 受領書’ 이미지가 제공된다. 조일수호조규를 맺을 때 찍은 ‘江華府’의 사진을, 나카노가 1876년 5월 도쿄에서 받은 것에 대한 수령증이다. 내용에는 구로다·이노우에가 파견되었을 때 수행을 명받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사진을 준 사람은 구로다이다.

사진을 찍은 사람은 구로다를 수행한 개척사 15등출사 가와다 키이치(河田紀一)다. 이 사진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오다 쇼고(小田省吾)다. 그가 쓴 논문(1931)에 따르면, 5·6년 전에 조규 체결 당시 사진이 부산부 나카노家에 있는 것을 알고, 청하여 복사하였는데, 최근에 경성부 어느 조선인 집에서 같은 사진첩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나카노家에 있는 사진은 27점이다. 사진은 「부산에 정박한 배, 전권대신의 상륙 지점, 대신 일행의 행진, 두 전권대신의 여관, 양국 사신의 회견 장소, 강화부 각 방면의 實景, 강화유수 조병식 외 4명」 등이다.³⁷⁾ 그런데 1926년 간행된 『釜山大觀』에도 관련 사진 4장이 수록되어 있다. 『청구학총』 도판 사진 외에 「중군영 건물, 강화부유수 조병식, 수신사 김기수 인물」 사진이다. 김기수 사진에는 ‘信使 印信’이라 적힌 함도 보인다. 김기수 사진의 소장 경위는 분명하지 않다. 부산부 혼마치(本町) 3에 거주하던 나카노 모토스케(中野元介, 교타로 손자)가 소장하던 것이다.³⁸⁾

오다 쇼고가 5·6년에 조사했다고 한 것과 『부산대관』이 간행될 때가 시기가 비슷하다. 『부산대관』은 부산 개항 50년을 기념하여 간행된 책이다. 쇼고의 조사와 책의 간행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카노가 조일수호조규·수신사 관련 사진을 가지고 있고, 그 사진(복사)이 지금도 전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2) 두모진해관 수세, 인천·월산 개항, 한행이정

(1) 두모진해관 수세

32) 사카다 모로토 지음·이효정 옮김, 위의 책, 124쪽.

33) 다보하시 기요시 지음·김종학 옮김, 앞의 책, 551쪽. 김의환, 앞의 책, 450~451쪽.

34) 안광목 지음·구지현 옮김, 『창사기행』, 보고사, 2018, 169쪽.

35) 김흥수, 앞의 논문, 145쪽. 다보하시 기요시 지음·김종학 옮김, 앞의 책, 553쪽.

36) 김흥수, 위의 논문, 146쪽.

37) 小田省吾, 「江華條約締結當時の寫眞と遺跡に就て」, 『청구학총』 4, 1931, 151~152쪽. 신헌 지음·김종학 옮김, 『심행일기-조선이 기록한 강화도조약』, 푸른역사, 2010, 38~39쪽. 『청구학총』에는 「강화부 중군영 일본국 전권공관」이란 사진 도판이 수록되어 있다. 中軍營[副帥營]이다. 이 외에 閱武堂, 練武堂 사진도 있었다.

38) 大曲重義 편찬·川島喜彙 발행, 『부산대관』, 부산출판협회, 1926, 「日韓修好條約の締結場所と當面の人物」. 小田省吾, 위의 논문, 152쪽에서는 호주가 증손이라 하였다.

1878년 9월 6일(음 8월 10일) 정부는 조선 무역상인에게 수세하는 방침을 정한 후, 동래부에 이를 지시하였다.³⁹⁾ 동래부는 9월 28일(음 9월 3일) 豆毛鎭에 해관을 설치하고, 조선상인에 대한 징세할 것이라는 것을 부산 관리관 야마노조 스케나가에게 통고하고 『징세책자』를 보냈다. 야마노조는 과세는 명백한 협정 위반이고, 이 때문에 무역이 중단될 지경이라고 항의했다. 10월 9일에는 일본상인 135명이 동래부에 가서 집단항의했다. 하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⁴⁰⁾

일본은 두모진 수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월 18일 대리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파견을 결정하였다. 하나부사는 곤도 마스키(近藤真鋤, 권소서기관)·오쿠 요시노리(御雇) 등과 히에이(比叡)함을 11월 29일 부산에 도착하였다. 곤도는 판찰관 현석운을 만나, 「상경 왕복 기한은 15일로 하거나, 먼저 세금 부과를 정지한 후 상경해야 한다. 둘 다 이행할 수 없으면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뜻을 보였다. 그리고 12월 4일 두모진 뒷산에서 병사 훈련을 하고, 함상에서 대포 사격까지 하였다. 12월 5일 현석운은 나카노에게 몰래 사람을 보내 「15일만에 서울을 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부 명령 없이 停稅하는 것은 어렵다. 잠시 ‘撤市’라 칭하고 징세를 중단한 후에 상경하면 어떠한가」라는 타협안을 문의하였으나, 일본측은 撤市는 부당하다면서 현석운의 타협안을 거절하였다.⁴¹⁾ 현석운이 협상과정에서 나카노와 비밀 연락을 시도한 점이 주목된다.

1879년 3월 14일 하나부사는 조선 파견 명령을 다시 받았다. 두모진 수세 문제에 대한 배상과 추가 개항장 설정이 주요 임무였다.⁴²⁾

(2) 인천 개항

조일수호조규 제5관에는 20개월 안에 경기·충청·전라·경상·함경도의 5개 도 중에서 2개 항구를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1877년 9월(음 8월) 하나부사 요시모토가 초대 대리공사로 임명되었다. 그는 1880년 4월 변리공사로 승진하였다. 조일수호조규의 핵심 쟁점은 한성에 일본공사관을 개설하는 것(公使 駐京)과 2곳을 개항하는 것이다. 원산 개항은 그가 대리공사 때, 공사 주경과 인천 개항은 변리공사 때 실현되었다.⁴³⁾

개항 이후 큰 변화는 일본 공사와 수행원의 한성 출입이 가능하게 된 점이다. 공사의 한성 상주 전까지, 일행은 서대문 밖에 있는 淸水館을 임시 숙소로 사용하였다.⁴⁴⁾ 인천·원산 개항과 관련된 하사부사의 활동 때, 나카노는 수행원으로 참여하였다.

일본이 개항장으로 인천을 주목한 것은 1879년부터다. 서울과 가까워서 정치력을 행사하기 쉽고, 청의 동향을 살피기 좋기 때문이었다.⁴⁵⁾ 하나부사 일행은 윤3월 3일(양 4월 23일) 부산에 도착했다. 며칠 머문 뒤, 윤3월 9일(양 4월 29일) 다카오(高雄)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호소(鳳翔)함의 호위를 받으며 서해안을 따라 올라가면서, 전라·충청·경기도 연해의 수심과 해안을 조

39) 『일성록』 고종 15년 8월 10일(음)

40) 박한민, 「1878년 두모진 수세를 둘러싼 조일 양국의 인식과 대응」 『한일관계사연구』 39, 2011, 380쪽. 다보하시 기요시 지음·김종학 옮김, 앞의 책, 610쪽. 부정애, 「조선해관의 창설경위」 『한국사론』 1, 1973, 254~256쪽.

41) 『일본외교문서』 11, 문서번호 150, 「釜山港ニ於テ朝鮮國政府專斷課稅ノ件」(1879년 1월 대리공사 花房義質이 외무경 寺島宗則에게 보낸 문서임). 국편 『사료 고종시대사』 9에서 재인용.

42) 박한민, 『조일수호조규 체제의 성립과 운영 연구(1876~1894)』,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25쪽.

43) 김흥수, 「하나부사(花房義質) 공사의 조선정책과 인천개항」 『동국사학』 63, 2017, 155~157쪽.

44) 박한민, 「조일수호조규 관철을 위한 일본의 경찰활동과 조선의 대응」 『역사학보』 217, 2013, 276쪽.

45) 김흥수, 앞의 논문, 2017, 169쪽.

사하였다.⁴⁶⁾

윤3월 15일 충청도 비인현 월하포에 정박하였다. 충청병사 윤석구는 비인현감 홍용주의 첩정에 따라 異樣船 問情 내용을 보고하였다. 동래부 장교 김채길, 사령 김희수가 작년 8월 수심 측량하러 온 적이 있는 아사야마 겐조(淺山顯藏)·나카노와 잠시 내린 것이다. 이들은 한산·강경·군산 등지로 갈 예정인데, 미리 통지해서 방해하지 말 것과 안내할 사공을 부탁하였다. 비인현감 첩정에는 「사공에게 水路 상황을 물은 것, 서천·개야도·장암·한산·두무치·신아포·도리포·지사포·임천·남당·강경 등지를 물은 것, 아사야마·나카노가 陸路로 가기를 원했지만 현감이 거부한 것 등」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내용 가운데 주목하고 싶은 것은 나카노 신상에 관한 것이다. 나카노는 자신이 일본인이 아니라 일본으로 유입된 조선인이고, 조선 성은 '許', 일본 성은 '中野'라고 하였다. 어릴 때 조선을 떠나서 부모 생몰이나 본거지는 모르고, 친척도 연락이 끊어져서 고국을 그리워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⁴⁷⁾ 이 말의 사실 여부는 알 수 없다. 나카노가 육로로 가기 위해, 임기응변으로 한 말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許씨 조선인'이라고 한 점은 흥미롭다. 앞으로 오다家·나카노家 가계 문제와 함께 해결해야 할 난제다.

하나부사는 수행원 15인, 호위병 15명, 종자 4명과 함께 4월 24일(양 6월 13일) 숙소 淸水館에 들어갔다.⁴⁸⁾ 수행원에는 나카노도 포함되어 있었다.⁴⁹⁾ 핵심 수행원은 곤도·오쿠·이시바타 등이다. 조선 근무 경력이나 조선에 대한 식견·경험이 있는 자들이다. 하나부사가 들어가기 앞서 선발대가 청수관에 '大日本國欽差公署'라는 문패를 걸었다. 조선측은 6월 12일(양) '흠차공서'를 '대리공사관'으로 바꾸고, 반접관(洪祐昌)과 의논해서 달아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나카노는 조선정부가 관여할 바 아니라면서 거절했다.⁵⁰⁾

『왜사일기』에는 하나부사 일행과 함께 간 동래 소통사 김채길과 나카노가 현안에 대해 문답한 '探問錄'이 수록되어 있다. 핵심 내용은 인천 개항과 한성에 일본 공사관을 개설하는[公使駐京] 문제다. 나카노는 인천 개항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조선의 '大失計'이며, 공사관으로 쓰기 위해 청수관 구입을 원했다. 두 사람의 私談이지만, 조일수호조규의 핵심 쟁점에 대한 나카노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⁵¹⁾

(3) 원산 개항

1879년 5월 원산 개항이 합의되고, 개항장 위치는 영흥만 남쪽 元山津으로 정해졌다. 1879년 7월(양 8월) '원산개항의정서[元山津開港豫約]'가 체결되었다. 1880년 1월(양) 일본정부는 5월 1일(음 3월 23일)부터 원산진이 개항될 것을 포고하였다.⁵²⁾ 원산 개항을 앞두고 文臣 당상관 중에서 변방의 일과 사무 능력을 겸한 사람을 임명해야 된다는 의정부 상계가 있었다.⁵³⁾ 1차 수신사(정사) 경력이 있는 안동부사 金綺秀가 덕원부사로 임명되었다.⁵⁴⁾

46) 『왜사일기』 기묘(1879) 윤3월 22일(한양대 국학연구원 영인본, 296쪽)

47) 『일성록』 고종 16년(1879) 윤3월 23일.

48) 『고종실록』 고종 16년(1879) 4월 24일.

49) 『왜사일기』 기묘(1879) 4월 10일 啓下(영인본, 329~330쪽); 『동문회고』, 附編, 公使1, 「公使及隨員」(영인본 4-4145쪽).

50) 박한민, 앞의 박사학위논문, 25~26쪽.

51) 구체적인 것은 김동철, 「동래부 소통사 김채길 관련 준호구와 그의 개항 전후 활동」 『한국민족문화』 69, 2018, 214~218쪽 참조.

52) 손정목, 『한국개항기 도시변화과정연구』, 일지사, 1984, 114~119쪽.

53) 『비변사등록』 고종 16년(1879) 6월 30일.

54) 『승정원일기』 고종 16년(1879) 6월 30일. 손정목, 앞의 책, 117쪽.

부임 몇 달 후에, 김기수는 원산 개항장 자리를 살피고, 경계를 정하기 위해 정박한 일본 군함을 탐문한 내용을 보고하였다. 내용은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월 18일, 원산포에서 5리 정도 떨어진 連島 앞 바다에 일본 다카오함이 정박했다. 함장은 해군 소좌 아오키 주신(靑木住眞)이다. 대리공사 하나부사와 從倭 6명, 수행원 곤도(권소서기관), 기도 사다요시(木藤貞良, 해군대위), 카이즈 미쓰오(海津三雄, 육군중위), 오쿠(외무4등속), 이시바타(5등속), 미사카 구니아스(三坂邦寧, 8등속), 오오 시게오(緒侯重雄, 해군 1등警吏), 新莊鏡(2등筆記), 지가 마사토시(千賀方利, 등외2등), 고노 가츠요시(小野勝義, 등외3등), 공사 호위병 30명, 士官·水火夫 140명, 의사 1명, 나카노(권소록), 통사 3명, 下代 6명, 마에다 겐키치(前田獻吉, 관리관) 등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덕원부에 개항될 항구 형편을 살피고, 그에 맞게 定界하기 위해, 8월 16일 부산을 출발한 것이었다.⁵⁵⁾

동래부사 沈東臣은 하나부사 일행이 덕원에서 돌아와 부산에 도착한 사실은 조정에 보고하였다. 이들은 8월 28일 부산 黑巖 앞바다에 정박하였다. 역학 劉光杓가 이들을 問情한 내용을 보면, 함장 아오키, 공사 하나부사, 從倭 6명, 수행원 10명, 호위병 30명, 水火夫 140명, 의원 1명, 권소록 1명[나카노], 통사 3명, 하대 6명, 관리관 마에다가 타고 있었다. 이들은 덕원 元山浦 개항할 곳에 가서 경계를 정하고 표지를 세웠다.⁵⁶⁾ 김기수의 보고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관리청 직원인 마에다, 스미나가, 나카노, 통사 3명, 하대 6명 등은 배에서 내려 관리청으로 갔다. 이 원산 개항장 조사에는 조선인도 함께 하였다. 동래부 장교 邊宅浩와 종인 2명, 소통사 朴成浩는 원산 현지에 내려서 같이 부산에 돌아오지는 않았다. 동래부 소통사 河桂祿·金成振은 전 조사 과정에 함께 하였다.⁵⁷⁾

변택호는 1876년 1차 수신사 때 鄉書記로 김기수, 나카노와 함께 일본에 다녀온 경력이 있다. 그가 원산에 내린 이유나 현지 활동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는 1881년 조사시찰단 때도 나카노와 함께 일본에 갔다 왔다. 하계록은 인천 개항과 관련하여 1879년 윤6월 하나부사 일행이 부산-서울을 왕복할 때, 소통사 김채길과 함께 호송장교 역할을 하였다.⁵⁸⁾ 나카노와 관련있는 조선인이 원산 조사 때 함께 하였다. 나카노는 관리관 마에다를 비롯한 관리청 통역·직원과 원산 개항 조사에 참여하였다.

(4) 한행이정 확장

한행(간행)이정은 일본인이 개항장 주변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리다. 1876년 체결된 ‘조일수호조규부록’ 4관에는 부산항 부두에서 사방 각 10리(朝鮮里法)로 규정하였다.⁵⁹⁾ 1882년(고종 19) 8월 30일(음 7월 17일) 체결된 ‘조일수호조규속약’ 1관에는 부산·원산·인천항의 한행이정을 금후 확장해서 사방 각 50리(조선리법)로 하고, 2년 후에 다시 100리로 한다고 규정하였다.⁶⁰⁾ 속약이 체결된 지 1년 후인 1883년 7월 25일(음 6월 22일) ‘조선국한행이정취극약서’가 체결되어, 부산·원산·인천항에서 확정된 지역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약정서 체결 전에 이미 확장된 지역을 답사하고 다녔다. 부산 영사 마에다 겐키치는 5월 2일~11일 80리 떨어진 양산까지 확보해 두었다. 1884년 11월 29일 ‘조선국한행이정취극약서부록’이 체결되었다. ‘조일수호조규속약’의 100리 규정에 따라 확장된 지역을 정하기 위해서였다.⁶¹⁾

55) 『일성록』 고종 16년(1879) 8월 27일.

56) 『일성록』 고종 16년(1879) 9월 9일.

57) 『일성록』 고종 16년(1879) 9월 9일, 12일.

58) 김동철, 앞의 논문, 214쪽.

59) 박한민, 「개항장 ‘間行里程’ 운영에 나타난 조일 양국의 인식과 대응」 『한국사연구』 165, 2014.

60) 손정목, 앞의 책, 80~83쪽.

1884년 10월 4일(음 8월 16일) 영사 마에다, 전어관(통역) 나카노·쓰에 나오스케(津江直助) 등이 100리 한행이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답사하고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동래부에 갔다. 거기서 숙박하고 다음 날 기장·울산·언양·양산·밀양·김해·창원·웅천 등지로 갈 예정이었다.⁶²⁾ 1885년 3월 4일(음 1월 18)에는 영사대리 미야모토 히쿠마(宮本羆)와 나카노가 한행이정 표지 세우는 일로 감리서를 방문했다.⁶³⁾ 범위는 부산항에서 동쪽 南倉, 북쪽 언양, 서쪽 창원 마산포 삼랑창, 남쪽 天城島까지다. 범위가 확장된 곳에 立標하기 위해 히쿠마와 나카노는 종자 1명을 데리고 3월 4일 동래부 溫井에서 숙박하고, 6일 기장으로 출발하였다.⁶⁴⁾

기장에 가서는 원래 있던 표목을 제거하고, 남창에 가서 남창리 길옆에 입표하였다. 7일 언양현 上府面 동북리, 9일 밀양 삼랑창, 10일 창원 마산포에 입표하였다. 11일 웅천현에서 숙박했다. 天城島는 건너가지 곤란해서 지방관에 입표를 부탁하고, 3월 13일(음 1월 27일) 영사관으로 돌아왔다. 한행이정 표지 일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⁶⁵⁾ 이 전체 일정에 나카노는 통역으로 활동한 것이다.

날짜(음)	1.20	1.20	1.21(22)	1.23	1.24	1.25
지역	기장	남창 (남창리 노변)	언양 (상부면 동북리)	밀양 (삼랑창)	창원 (마산포)	천성도
표지 활동	처음 표목 제거	立標	입표	입표	입표	입표(부탁)
출전: 『동래부계록』 고종 22년(1885) 1월 28일. 『서계소보관록』 같은 날.						

4. 수신사·조사시찰단의 통역·영접

1876년 3월 28일(음 3월 3일) 별차 이준수는 초량공관에 가서 서기생 야마노조·나카노·오마와 면담하였다. 수신사(김기수) 파견 결정을 통보하기 위해서다.⁶⁶⁾ 개항 후 일본에 가는 첫 사행인, 1차 수신사는 4월 29일(양 5월 22일) 부산을 출발하였다.⁶⁷⁾ 1876년 개항 이후 1884년까지 6번 사행이 일본에 갔다. 일본 외무성은 조선 사행의 접대·통역 등을 맡는 통역관을 임명하였다. 부산 초량공관·관리청·영사관에서 근무한 나카노는 사행단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6번의 사행과 그의 참여 여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시기	1876	1880	1881	1881	1882	1884
사행	1차修信使	2차수신사	朝士視察團	3차수신사	4차수신사	흠차대신

61) 박한민, 앞의 논문, 2014, 166~168쪽.

62) 『해은일록』 갑신(1884, 고종 21) 8월 16일(국역본 1-175쪽). 『동래부계록』 고종 21년 8월 18일(『각사등록』 12, 576~577쪽). 『서계소보관록』 갑신 8월 16일(『각사등록』 13, 702~703쪽). 『각사등록』에는 津江直助를 守江直油로 탈초하였다. DB도 마찬가지다. 『서계소보관록』 갑신 9월 3일(『각사등록』 13, 706쪽).

63) 『해은일록』, 을유(1885, 고종 22) 1월 18일(1-270쪽)

64) 『서계소보관록』 을유(1885) 1월 20일(『각사등록』 13, 724~725쪽).

65) 『동래부계록』 고종 22년(1885) 1월 28일(『각사등록』 12, 587쪽). 『서계소보관록』 같은 날(『각사등록』 13, 726쪽). 『해은일록』, 을유(1885) 1월 27일(1-274쪽).

66) 『일본외교문서』 9, 문서번호 51, 「朝鮮國修信使發遣ノ儀治定ノ由告知ノ件」. 『사료 고종시대사』 8, 1876년(고종 13) 3월 3일(음)에서 재인용.

67) 안광목 지음·구지현 옮김, 앞의 책, 169쪽. 김기수 지음·구지현 옮김, 앞의 책, 40쪽.

정사	金綺秀	金弘集	암행어사 12명	趙秉鎬	朴泳孝	徐相雨
출발지	부산	부산	부산	부산	인천	인천
참여	○	△?	○	○		

6차례 사행 가운데 나카노는 3~4차례 참가했다. 2차 수신사는 참여 여부가 모호하다. 제4·5차 수신사는 인천에서 출발해서, 부산에서 근무한 나카노가 참여하기가 어려웠다고 생각한다. 3~4차례 사행에서 나카노의 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876년 제1차 수신사

1876년 4월 9일(음 3월 15일) 동래부사 홍우창은 5월 18일(음 4월 25일) 쯤 수신사가 부산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야마노조(초량공관장 대리)에게 통고하면서 외무성에 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외무성은 수신사를 맞을 준비에 착수하였다. 迎接掛로 외무소록 미즈노 세이치(水野誠一, 외무소록), 아라카와(6등서기생), 오마(7등서기생) 등을 부산에 파견하기로 했다. 그리고 초량공관에 근무하는 6등서기생 나카노, 통역어용견습 요시조에 기하치로(吉副喜八郎), 한어유학생 나카무라 쇼지로(中村庄太郎), 요시무라 헤이시로(吉村平四郎), 아사야마 겐조, 구로이와 기요미(黒岩清美), 다케다 진타로(武田甚太郎), 아비루 유사쿠(阿比留祐作), 오이시 마타사부로(大石又三郎), 쓰에 나오키, 스미나가 슈조(住永琇三) 등 통역은 수신사와 같은 배를 타고 올 것을 명하였다.⁶⁸⁾ 안광목의 『창사기행』에는 외무성이 외무소록 미즈노, 6등서기 아라카와·나카노, 7등서기 오마, 4명을 영접관으로 임명하여 보냈다고 하였다.⁶⁹⁾

사카다 모로토(坂田諸遠)의 『항한필휴』(병자 4월 艦內規則)를 보면, 통역과 사신 延接 업무는 아라카와·나카노 및 생도 11명이 담당하였다.⁷⁰⁾ 『항한필휴』 「信使同伴指令」을 보면, 외무성은 4월 21일 나카노에게 수신사와 같은 배로 올 것을 지시하였다. 요시조에·나카무라 등 나머지 통역은 4월 26일 지령을 받았다.⁷¹⁾ 나카노가 가장 먼저 지령을 받은 것이다. 5월 22일 부산을 출발한 수신사는 배에서 미즈노, 나카노·오마 등과 인사를 나누었다. 수신사의 출발에서 도착까지 간단한 절차에 대해서는 미즈노, 아라카와·나카노·오마 이름으로 보고되었다.⁷²⁾

수신사 숙소에서의 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누어졌다. 『항한필휴』(권2, 旅館分課)를 근거로 대략 정리하면 <표 3>과 같다.⁷³⁾

이름	미즈노	오마	아라카와·나카노	하라 요시아(原吉也)	오타 요시아(太田芳也)	이마이 다카에이(今井孝衛)
직임	외무소록	7등서기생	6등서기생	등외1등	같음	등외3등
업무	서무·회계	식료 조달	일기·문서 보관	한인 난방	한인 집, 출입인수(今井 겸임)	식료 주의(太田 겸임)
	금은 출납	식료품 보관	使行員 보호 단속	한인 집 총괄		

68) 다보하시 기요시 지음·김종학 옮김, 앞의 책, 533쪽. 坂田諸遠, 『航韓必携』 권1, 信使前報; 권2, 迎官復命; 권9, 草梁公信 참조.

69) 안광목 지음·구지현 옮김, 앞의 책, 169쪽.

70) 사카다 모로토 지음·이효정 옮김, 『항한필휴』, 보고서, 2018, 34~35쪽. 김기수 지음·구지현 옮김, 앞의 책, 151~154쪽.

71) 사카다 모로토 지음·이효정 옮김, 위의 책, 38~40쪽.

72) 사카다 모로토 지음·이효정 옮김, 위의 책, 46~50쪽.

73) 사카다 모로토 지음·이효정 옮김, 위의 책, 59~61쪽.

信使 금은 보관(尾閭검입)	여러 縣과의 처리, 公信, 電信	통역	한인 인원 조사		
----------------	-------------------	----	----------	--	--

<표 3>처럼 나카노는 일기·문서 보관, 사행원 보호 단속, 통역 등 업무를 맡았다. 수신사 사행원 전체에 대한 통역 업무도 분장되어 있었다. 통역의 업무 분장은 <표 4>와 같다.⁷⁴⁾

사행원	통역				비고
수신사	우라세				3명은 일행 전체 통역 겸함
상상관	아라카와	나카노			
상관(10명)	아라카와	나카노	요시조에	나카무라	요시조에·나카무라는
중관(49명)	아사야마	구로이와	다케다 진타로	다케다 구니타로	하관 담당하거나, 중
하관(18명)	아비루	오이시	쓰에		관 담당과 5일째 교대
출전: 『향한필휴』 병자 4월 25일 「通辨分課」					

<표 4>처럼 나카노의 주 담당은 상상관이다. 상상관은 별견당상 玄普運, 별견한학당상 이용숙으로, 수신사의 대표적 두 역관을 담당했다. 나카노는 우라세·아라카와와 함께 사행단 전체의 통역도 맡았다. 1차 수신사 때는 우라세·아라카와·나카노 3명이 일본측의 가장 핵심 역관이였다. 수신사 역관을 대표하는 현석운은 병자년 5월에 외무권소승 후루사와 가게히로(古澤經範), 외무3등서기생 오쿠, 외무소록 미즈노를 비롯하여, 아라카와·나카노 등 많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다. 나카노가 받은 선물은 <표 5>와 같다.⁷⁵⁾

물품	虎皮	綿細	세저포	백목면	색지	圓扇	摺扇	붓	먹	참빗	書畫
수량	1점	1필	2필	2필	2권	5자루	10자루	20자루	1자루	1자루	각1쌍

나카노는 수신사가 도쿄에 체재하는 기간 내내, 거의 매일 통역을 맡았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향한필휴』(권 7·8)에 수록된 ‘信使滯京日記’에 상세하다.⁷⁶⁾ 나카노에 대해 정사 김기수는 “서기생으로 관위는 아라카와 다음이다. 나이는 40에 가깝다. 몸은 왜소하다. 태도는 조심스럽고 조용하다. 나를 부산에서 영접하고 또 부산까지 전송하였는데, 시종 조금도 실수가 없었다”라고 묘사하였다.⁷⁷⁾

(2) 1880년 제2차 수신사

수신사(정사 김홍집) 일행은 1880년 6월 26일(음) 부산 출발하여, 7월 6일 도쿄에 도착하였다. 7월 25일 일왕을 만났다. 8월 4일 귀국길에 올라, 8월 11일 부산에 도착하였다. 동래부사 沈東臣은 4월 12일 부산 영사에게 연락하였다. 김홍집이 수신사로 임명되어 머지 않아 출발하니, 條例와 관련된 것을 의논해서 정해야 하므로, 따로 ‘別柬’을 만들어 통보하니, 잘 살펴보고 의견을 달라는 내용이다. 별간 4항목 중에 3째 항목에 나카노 관련 내용이 있다. 1876년 1차 수신사) 때는 일본 역관 10여명이 탄 前例가 있으나, 이번은 그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가

74) 사카다 모로토 지음·이효정 옮김, 위의 책, 61~62쪽.

75) 사카다 모로토 지음·이효정 옮김, 앞의 책, 91~100쪽.

76) 사카다 모로토 지음·이효정 옮김, 위의 책, 144~193쪽 참조.

77) 김기수 지음·구지현 옮김, 앞의 책, 82쪽.

없으니, 우라세·나카노 등 몇 명, 생도 몇 명, 下代 몇 명만 함께 타기를 청한다는 것이다.⁷⁸⁾ 이에 대해 곤도 영사가 보낸 답신이 4월 18일(양 5월 26일) 도착하였다. 내용은 ‘별간’과 관련된 6항목이다. 2째 항목을 보면, 舌官(역관) 우라세·나카노가 동승하는 것은 당연히 말씀대로 하고, 下代의 동승은 담당 관원에게 맡긴다는 것이다.⁷⁹⁾ 이 두 사료에 근거해서 앞의 <표 2>에서 나카노가 2차 수신사 때도 참가한 듯하다. 그런데 『동도일사』에는 일본인 전어관(통역)은 우라세·스미나가 신다(住永辰妥) 2명, 下代는 이누다(飯田)·가지야마(梶山) 2명만 기재되어 있다.⁸⁰⁾ ‘예단증급처’ 명단에도 나카노는 없다.⁸¹⁾ 정사 김홍집의 관련 자료에도 보이지 않는다. 수신사의 왕복 일정 동안에 나카노의 활동을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다. 동행하지 않았다면, 앞의 <표 2>와 그 관련 설명은 수정되어야 한다. 앞으로 자료 발굴이 필요하다.

(3) 1881년 조사시찰단

1881년 박정양 등 12명의 관료가 중심이 된 朝士視察團이 일본에 파견되었다. 12명 중 船艦시찰을 맡은 김용원은 ‘別遣’이다. 12명은 내무성 등 중앙부서, 세관 등 관청, 육군과 기선 등을 파악·보고하는 임무를 맡았다. 시찰단은 안네이마루(安寧丸)를 타고 4월 10일 부산을 출발했다. 고베·오사카·교토·요코하마를 거쳐 4월 28일 도쿄에 도착했다. 외무성에 가서 입국 신고를 한 뒤, 7월 14일 도쿄를 떠날 때까지 각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였다. 귀로에 올라 요코하마·고베·나가사키를 거쳐 윤7월 2일 부산에 도착했다. 8월 25일부터 각자 복명하였다.⁸²⁾

조사시찰단이 부산에 도착한 후 이현영 등은 3월 28일 영사관에서 곤도 영사의 영접을 받았다. 담화를 마치고 朝士들은 영사·전어관과 함께 안네이마루를 관람하였다. 이날 영접안내·통역은 나카노·스미나가 신다 2명이 맡았다.⁸³⁾ 4월 3일에는 곤도 영사의 답례 행차가 있었다. 11명 조사가 관찰소 동헌에 모여 접대하였다. 이날 역관 나카노·우에노 케이스케·다케다 구니타로·아사야마 겐조, 카이즈 미쓰오(육군공병중위)가 곤도 영사를 수행했다.⁸⁴⁾ 출발 전인 4월 8일 영사 주최로 조사시찰단을 접대하는 저녁 모임이 영사관에서 열렸다. 모임에는 카이즈·우에노·다케다·나카노·우라세·스기무라 후카시(杉村瀧) 등이 참석하였다.⁸⁵⁾

이현영을 수행한 閔建鎬의 사행록 『동행일록』 말미에는 ‘일본 통사(通辭)’라고 적고, 다케다·우에노·나카노·하시베 리타이에몬(橋邊利大衛門) 4명 이름이 있다.⁸⁶⁾ 통사 4명 가운데 핵심은 앞의 3명이다. 어윤중은 동행할 일본인으로 이 3명을 거론하였다.⁸⁷⁾ 우에노·다케다는 조사시찰단이 보수를 주고 고용한 통역이다. 일본측은 시찰단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영사관 통역 나카노를 합류·동행시켰다. 우에노·나카노는 통역은 물론 시찰단의 회계도 맡았다.⁸⁸⁾

나카노는 시찰단이 파견되기 전, 부산에서 조사와 곤도 영사가 2차례 만날 때 모두 주도적 역

78) 박상식 지음·장진엽 옮김, 『동도일사』, 보고서, 2017, 80~81쪽.

79) 박상식 지음·장진엽 옮김, 위의 책, 82~83쪽.

80) 박상식 지음·장진엽 옮김, 위의 책, 90쪽.

81) 박상식 지음·장진엽 옮김, 위의 책, 90쪽.

82) 허동현, 「1881년 조선 朝士 일본시찰단에 관한 일연구-“見聞事件類”와 『隨聞錄』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52, 1986 참조.

83) 이현영, 『일사집략』 신사(1881, 고종 18) 3월 28일. 『국역 해행총재』 수록 『일사집략』(한국고전종합 DB)에는 ‘전어관 중야주영(中野住永)’으로 번역되어 있다. 1명이 아니라 中野·住永 2명이다.

84) 이현영, 『일사집략』 신사(1881) 4월 3일. 민건호 지음·유종수 옮김, 『동행일록』, 보고서, 2020, 44쪽.

85) 이현영, 『일사집략』 신사(1881) 4월 8일.

86) 민건호 지음·유종수 옮김, 앞의 책, 157쪽.

87) 어윤중, 『從政年表』 권2, 1881년 3월 25일.

88) 허동현, 「1881년 조사시찰단의 활동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 66, 1995, 27쪽. 이현영, 『일사집략』 신사(1881) 4월 8일; 『일사집략』, 散錄.

할을 하였다. 시찰단의 왕복길에 동행하면서 호행·통역 역할을 하였다. 이런 활동은 시찰단이 일본에서 머무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였다. 6월 20일 조사들은 造紙局을 견학하였다. 그리고 국립은행국장 시부사와 에이이치(澁澤榮一) 초청을 받아 국립은행국을 방문하였다. 이날 시부사와 집에서 연회가 있었다. 모임에 요시카와 아키마사(芳川顯正, 외무성소보), 미야모토 오카즈(대서기관), 마쓰다 미치유키(松田道之, 도쿄지사), 이시바타 사다(외무5등속), 하나부사(조선공사), 통역 나카노·우에노·다케다 등이 참석하였다.⁸⁹⁾ 박정양·이현영 등 시찰단은 7월 13일 귀국길에 올랐다. 기차로 도쿄에서 요코하마까지 갈 때 우에노·나카노가 동승하였다.⁹⁰⁾

시찰단은 윤7월 2일 부산에 도착한 후 다음날 동래부로 갔다. 이날 곤도 영사와 나카노는 공무차 동래부에 갔다가, 작별 인사를 하였다.⁹¹⁾ 시찰단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카노는 함께 하였다. 나카노의 이런 여러 활동 탓인지 이현영은 “같은 배로 같이 가 그가 주선함이 많았다”⁹²⁾고 하였다. 나카노의 부탁을 받고 이현영은 시 1수를 지어주었다.⁹³⁾ 나카노는 일본에서 민건호에게 시를 청하였으나, 미처 지어주지 못했다. 민건호는 시 1수를 지어 이별의 정을 표하였다.⁹⁴⁾ 시찰단과 함께 부산에 돌아온 나카노는 2달이 지나지 않아, 3차 수신사와 함께 일본에 갔다.

1883년 12월 12일 부산감리서 초대 감리 이현영, 서기 민건호가 첫 부임하였다. 나카노는 영사관에 통역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부임 약 10일 후인 12월 21일, 영사대리(서리) 미야모토 히구마, 통역 히로세·나카노·쓰에가 감리를 만나러 왔다. 이현영은 나카노에 대해서는 ‘신사년(1881) 일본행 때 통역’(辛巳年 日行時 傳語官)이라고 부기하였다.⁹⁵⁾ 민건호도 ‘나카노는 舊緣이 있어서 담화했다. 신사년 봄 일본행 때 통사로 함께 갔다’⁹⁶⁾고 하였다. 나카노가 조사시찰단으로 만난 이현영·민건호와의 인연은 부산에서 감리서 감리·서기의 만남으로 이어졌다.

(4) 1881년 3차 수신사

수신사(정사 조병호)는 1881년 8월 27일(음) 상선 안네이마루를 타고 부산을 출발, 9월 6일 도쿄에 도착하였다. 7일 외무성을 방문, 서계를 전하였다. 18일 일왕을 접견, 국서를 전달했다. 10월 26일 귀로에 올라, 11월 10일 부산에 도착, 29일 복명하였다.⁹⁷⁾ 안네이마루는 적재한 물건을 내린 후, 수신사를 護行하는 배였다. 이 배에는 下代 2명과 나카노(외무권소록) 등이 탔다.⁹⁸⁾ 수신사가 귀환할 때 나카노가 통역으로 護行하였다.⁹⁹⁾

8월 18일 국서 전달 때, 정사 조병호가 국서를 전하고, 일왕이 직접 받았다. 이때 일왕이 품속에서 쪽지를 꺼내 외니, 전어관 나카노가 통역하여 전했다. “귀국 대왕이 안녕하시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쁨을 이길 수 없다. 이제 경을 신사로 뽑아 우리나라에 파견하였으니, 친히 국서를 수령한다”고 하였다.

조병호는 떠나기 4일 전에 귀국한다고 전해 줄 것을 청하였다. 10월 25일 일왕을 만나고 싶

89) 이현영, 『일사집략』 신사(1881) 6월 20일. 민건호 지음·유종수 옮김, 앞의 책, 109쪽.

90) 민건호 지음·유종수 옮김, 위의 책, 120쪽.

91) 이현영, 『일사집략』 신사(1881) 윤7월 3일. 민건호 지음·유종수 옮김, 앞의 책, 133~134쪽.

92) 이현영, 『일사집략』, 문건록.

93) 이현영, 『일사집략』, 시구록.

94) 민건호 지음·유종수 옮김, 앞의 책, 135~136쪽.

95) 이현영, 『釜署集略』 계미(1883) 12월 21일.

96) 민건호, 『海隱日錄』 계미(1883) 12월 21일.

97) 하우봉, 「개항기 수신사행에 관한 일연구」 『한일관계사연구』 10, 1999, 147쪽.

98) 『통제영계록』 고종 18년(1881) 9월 4일(『각사등록』 17, 324~325쪽).

99) 『통제영계록』 고종 18년(1881) 11월 17일(『각사등록』 17, 335쪽).

다고 했다. 조병호 등은 아카사카(赤坂)궁으로 갔다. 조병호가 일왕 앞에서 頌辭를 하니, 나카노가 통역하여 전달하였다. 일왕은 쪽지를 꺼내 口傳으로 말했다. “경이 귀국한 후에 짐의 간절하고 친밀한 뜻을 귀국 대왕께 전달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경의 향로가 무탈하기를 기원한다”고 하였다.¹⁰⁰⁾

나카노는 1876~1881년 당시 초량공관·관리청·영사관에 근무하고 있었다. 사행단이 출발해서 귀환할 때까지 통역·호행 등 업무를 담당했다. 3차 수신사 때는 정사와 일왕이 만나는 현장에서 일왕의 인사말을 직접 통역하는 등 가장 핵심적인 통역이었다.

5. 경제 활동

지금까지는 나카노의 통역 활동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 장에서는 개항장 부산에 살면서 행한 경제 활동을 가늠략하게 정리해 보려고 한다.

(1) 대부[日債] 문제

1889년 일본 영사관에서 부산 감리서에 보낸 공문(14호)을 보면, 居留人 나카노가 동래부에 사는 李善一에게 어업자본으로 빌려준 1,700냥을 갚으라는 내용이다.¹⁰¹⁾ 1년 뒤인 1890년에는 영사대리 미야모토 히쿠마가 좌수영에 공문(19호)을 보냈다. 日商 나카노가 경상좌수영 吏房 李淳則에게 별지 증명서에 적힌 것처럼 돈 100원을 빌려주었는데, 상환 기한이 지났는데도 시간을 끌고 갚지 않으므로, 해당 營吏를 조사해 빨리 갚도록 하라는 것이다.¹⁰²⁾ 좌수영은 李淳則의 빚을 刷還할 방법이 없으므로, 감리서가 양해하고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¹⁰³⁾ 나카노는 1889~90년에 어민 이선일, 수영리 이순칙 등에게 돈을 빌려주는 貸付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 영사관 공문에 居留人·我商으로 칭한 점이 주목된다. 나카노는 부산에 사는 주민·상인으로 대부한 것이다.

(2) 절영도 토지 매매

1894년 청일전쟁 후 일본인의 절영도 토지 소유가 증가하였다. 그 결과 1896년 여름 절영도를 비롯한 부산항 부근 토지 3·4만 평이 일본인에 넘어갔다.¹⁰⁴⁾ 1896년 아관파천 이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는 관계로, 러시아는 石炭庫 설치로 절영도 조차를 요구하였다. 일본 석탄고 서쪽에 있는 부지를 조사하기 위해, 1897년 8월 29일 공사관 서기관 게르베르그가 부산에 왔다. 그런데 부지 안에 일본인 토지가 있었다. 1897년 12월 15일(양) 영사 이주인 히코키치(伊集院彦吉)가 변리공사 가토 마스오(加藤増雄)에게 보고한 기밀문서에 따르면, 소유 토지는 사이토 사쿠지로(齊藤作次郎) 2,700평, 나카노 2,823평, 아라키 가사쿠(荒木嘉作) 1,860평, 합계 7,652평이었다. 값은 1평에 30錢 이하 정도였다. 영사관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외국인에게 팔지 말 것을 이들에게 지시하였다.¹⁰⁵⁾

100) 『동문회고』 4, 附編, 信行別單, 「信使趙秉鎬從事官李祖淵聞見別單」, 고종 18년(1881) 11월 29일.

101) 『부산항감리서일록』 기축(1889, 고종 26) 2월 3일(『각사등록』 17, 628쪽).

102) 『동래관첩외안』 경인(1890, 고종 27) 윤2월 12일(『각사등록』 13, 87~88쪽). 『부산항감리서일록』 경인 윤2월 8일, 14일(『각사등록』 17, 658쪽).

103) 『부산항감리서일록』 경인 윤2월 15일(『각사등록』 17, 658쪽).

104) 김승,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해항도시문화교섭학』 21, 2019, 199쪽.

105)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2, 機密各館往復, 「本邦人 소유토지 처분에 대한 청훈 건」(1897년 12월 15일). 김승, 위의 논문, 212쪽. 원문은 ‘齊藤次郎作’이다.

당시 영사관은 소유자가 부자가 아니고, 부산 금융 사정이 나빠 돈 마련이 급하므로, 러시아가 고가로 유인하면 법률상 제재가 불가능해서, 몰래 러시아의 상담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¹⁰⁶⁾ 1898년 1월 25일, 나카무라 타다시(中村巍, 영사보)가 니시 토쿠지로(西德二郎, 외무대신)에게 기밀문서를 보냈다. 「어제(1월 24일) 나카노가 영사관에 와서 좋은 구매자가 있으면 때를 놓치지 않고 팔고 싶다. 자기는 러시아인에게 팔지는 않겠다고 맹세했다. 이리 말하는 것은 영사관에서 적당한 값으로 매입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는 당연하다」는 내용이다.¹⁰⁷⁾ 이에 영사관은 육군성 의뢰에 따라 땅을 매수하기로 하고, 수속도 끝냈다. 육군성 비밀훈령이 있어서, 명익은 당분간 그대로 두기로 했다. 3명에게 구입한 토지 내역은 <표 6>과 같다.¹⁰⁸⁾

토유자	中野許多郎	齊藤作次郎	荒木嘉作	합계
토지(평)	2,980	2,906	1,791	7,677
대금(圓)	1,490	1,453	895원 50전	3,838원 50전

나카노는 1898년 당시 영도 부지 안에 약 3,000평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것을 약 1,500圓에 영사관에 판 것이다. 그가 언제 이 땅을 구입했고, 이 외 다른 땅도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영사관 통역 경력의 나카노가 영사관에 판 것이 흥미롭다. 1896년 2월 27일 다케다 한시(武田範之)가 세가와 아사노신(瀨川淺之助)에게 보낸 편지에 나카노를 ‘前통역 노인’이라 표현한 것이 있다.¹⁰⁹⁾ 1898년에는 나카노가 이미 통역에서 퇴임했기 때문에 이런 매매가 가능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3) 포경회사와 포경약장(약정)

1890년 1월(음) 일본 扶桑海産會社 포경선이 특허 없이 부산항에 도착하여, 포경업에 착수하였다. 다만 조선 회사에 고용되는 것을 전제로 허가를 받았다. 일본 포경선은 조선 관허회사인 ‘海産會社’에 고용되었다. 당시 포경선 수는 22척, 어부는 256명이었다.¹¹⁰⁾

그후 해산회사는 무너지고, 감리서 관리 몇 명 이름으로 ‘조선해산회사’라는 이름을 인가받았다. 부상해산회사 포경선은 표면상 조선해산회사의 고용선이며, 고래를 잡으면 크기에 따라 조선해산회사에 일정 금액을 납세하는 조건으로 조선에서 捕鯨하는 것을 허락했다. 1891년 2월 5일(양 3월 14일) 조선국 포경위원과 부상해산회사(임원)가 포경 약정(약장)을 맺었다. 1891년부터 만 3년간 경상도에서 포경을 허락하였다. 조선 연해에서 처음 포경을 허락한 것이다. 약정(약장)은 전체 9개 조항이다. 영도 포경기지[仙屯地] 안에 가건물을 짓는 것도 허락하였다(제2관). 약정(약장) 등사본이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¹¹¹⁾ 이 약장과 같은 ‘捕鯨約定證’이 1893년 10월 4일 총영사 무로다 요시아야(室田義文)가 외무대신 무쓰무네미쓰(陸奥宗光)에게 보낸 공문에 ‘別紙’로 붙어 있다.¹¹²⁾

106)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2권, 機密各館往復, 「1897년 12월 7일자 駐부산영사의 西 외무대신 前 右件 보고서 사본」.

107)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3권, 各領事館機密往來信, 「露國 석탄고부지에 관한 件」.

108)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3권, 各領事館機密往來信, 「절영도의 露國 석탄고부지 중 일인소유토지매매에 관한 건」. 원문은 ‘齊藤次郎作’이다.

109) 武田範之, 『洪疇遺績』, 書翰(국편 한국사DB, 동학농민혁명자료총서 참조).

110) 김백영, 「한말~일제하 동해의 포경업과 한반도 포경기지 변천사」 『도서문화』 41, 2013, 13쪽.

111) 『부산항포경약장』(奎 23039). 박구병, 『한반도연해포경사』, 대화출판사, 1987, 224~225쪽에 9개 조항이 번역되어 있다.

비슷한 내용이 『통상회찬』에도 수록되어 있다. 「일본 扶桑海參會社가 수년 전부터 부산항 감리서원과 특약을 맺고, 朝鮮海參會社 명의로 매년 근해에서 포경에 종사해 왔는데, 금년은 부산항에 사는 일본인이 설립한 부산수산회사 외 1명이 새로 포경 특허를 얻어, 일본인 명의로 공공연히 포경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¹¹³⁾는 것이다. 이 내용을 검토한 전우용은 「조선해삼회사는 국내 기록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산회사를 지칭한 것이라 생각한다」¹¹⁴⁾고 하였다. 부상해삼회사·조선해삼회사는 부상해산회사·조선해산회사의 오기이다.

이 약장(약정)은 부산감리서 방판사무겸 捕鯨委任 민건호, 부산항 경찰관 朴琪滌과 부상해산회사 사장 요코야마 유큐(橫山久悠), 이사 하야시 타가지로(林多賀次郎), 語辦 나카노, 이 5명의 공동 명의로 작성되었다. 나카노는 부상해산회사 통역으로 서명하였다. 민건호가 중심이므로, 일기에는 포경과 관련된 중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90년 10월 30일(양 12월 11일) 나카노·사이토 카시노스케(齊藤攄之助)가 外衙門 關旨와 좌윤 趙存斗 편지를 전하면서, 일이 시급하니 포경할 수 있도록 빨리 주선해 달라고 했다. 10월 20일자 ‘관지’에는 포경과 관련해서는 민건호에게 위임, 시행하라는 내용이 있다.¹¹⁵⁾ ‘포경약장’ 민건호 직책에 ‘捕鯨委任’이라 쓴 것은 이에 근거한 것이다. 이 이후로 약장 체결은 빨리 진행된 것 같다.

1890년 11월 5일(양 12월 16일) 민건호·박기종·나카노·사이토 등은 약장 제2관에 명시된 영도 仙屯地 현장을 조사하였다.¹¹⁶⁾ 1891년 1월 29일(양 3월 9일) ‘中野屋’에서 扶桑會社 사장 요코야마 등과 ‘포경약조’를 논의하였으나, 결정을 하지 못하고 뒷날로 미루었다.¹¹⁷⁾ 2월 3일(양 3월 12일) 민건호·나카노·요코야마·하야시가 ‘捕鯨收稅章約’을 의논하여 결정하였다. “木手尺으로 잴 경우, 고래 머리에서 꼬리까지 1척에 7角(70전)을 수세한다”는 것을 서로 공증하였다. 당시 요코야마·하야시는 中野屋에 거주하고 있었다.¹¹⁸⁾ 이날 최종 합의를 보고, 이틀 뒤에 ‘부산항포경약장’을 확정된 것이다. 약장을 맺은 3일 후에 요코야마·하야시가 고래 2마리에 대해 세금 44원 8각 7분을 납부했다.¹¹⁹⁾

이처럼 ‘부산항포경약장’은 中野屋에서 완성되었다. 체결 과정에 나카노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민건호의 『해은일록』에는 ‘中野屋’ 외에도 ‘私寓’¹²⁰⁾라는 표현이 있다. 양자가 같은 곳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6. 조선어·일본어 번역책 저술·출판

오오마가리 요시타로(大曲美太郎)는 1880년 경부터 1904년 러일전쟁 전까지 조선어학에 관한 일본인(저자·교정자) 저서가 많이 출판되었는데, 본인이 직접 본 것만 10여 종이라고 하면서, 호세코 히게카쓰(寶迫繁勝)의 『日韓善隣通話』(1880.10)·『교린수지』(1883.3), 우라세 히로시의 『교린수지』(1881.1)·『인어대방』(1882.5) 등 15종을 소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나카노의 『商語

112) 일본 외무성외교사료관 소장 「鯨鯨捕獲特許ノ義 釜山總領事伺並回訓」.

113) 『통상회찬』 17호(1895.5), 「명치 27년중 釜山商況」(1895년 3월 30일 재부산 총영사관 보고)(여강출판사 영인본 2, 394~395쪽).

114) 전우용, 『한국 회사의 탄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79쪽.

115) 『국역 해은일록』 경인(1890, 고종 27) 10월 30일(2-870~871쪽).

116) 『국역 해은일록』 경인(1890) 11월 5일(2-875쪽)

117) 『국역 해은일록』 신묘(1891) 1월 29일(3-30쪽)

118) 『국역 해은일록』 신묘(1891) 2월 3일(3-32~33쪽). 수세는 포경약장 제3관 참조.

119) 『국역 해은일록』 신묘(1891) 2월 8일(3-36쪽)

120) 『국역 해은일록』 신묘(1891) 3월 8일(3-55~56쪽)

捷解』(1890.11), 『假名韓語早道』(1890.11), 『翻譯物名記』(1890.11), 『假名行商手引』(1891.3) 4종도 포함되어 있다.¹²¹⁾ 나카노 책은 1890년 11월 출판된 것이 3종이나 된다. 야마다 칸토(山田寛人)도 『상어첩해』·『가나行商手引』(1891)은 나카노가 편저자라고 소개하였다.¹²²⁾ 黃雲은 이 2책과 『日語工夫』(1891) 3책 저자가 나카노라고 소개하였다.¹²³⁾

이 책 외에 나카노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선대 오다家 관련 책도 편찬하였다. 나카노의 저작물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책	① 商語 捷解	② 假名 韓語早道	③ 翻譯 物名記	④ 假名 行商手 引	⑤ 日語 工夫	小田家譜	幾五郎乍恐 口上覺扣	小田家 先祖 代々
시기	1890.11	좌동	좌동	1891.3	1891.5		63세 때	63세 때
비고						가필 보정		

<표 7> 책 중에서 필자가 서지사항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일어공부』뿐이다. 이 책은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원문 파일이 제공된다. 책 표지·판권지를 보면, 1891년(明治 24) 5월 21일 부산 ‘許書房’에서 발행되었다. 저자겸 발행자는 中野許多郎이다. 주소는 ‘朝鮮 釜山港 本町’다. 표지에 ‘釜山 許書房 發兌’라고 적혀 있다. 허서방의 ‘許’는 ‘許多郎’에서 유래한 것이라 생각한다.

『가나韓語早道』는 인터넷 사이트 ‘옥팬(Aucfan)’에서 표지와 1쪽, 4~5쪽 이미지를 보았다. 표지 『假名 韓語早道 全』에서 ‘假名’(가나)는 작은 글씨다. 『鄭聖源 出版, 中野許多郎 翻譯, 釜山許書房 發兌』라고 적혀 있다. 『일어공부』와 마찬가지로 ‘허서방’에서 간행되었다. 판권지 등을 확인할 수 없어서, 정확한 서지사항은 알 수 없다. ‘나카노 번역’의 확실하지 않다. 정성원의 인적사항도 확인할 길이 없다.

『일어공부』는 한국인이 일본어를 배우기 위한 교재, 『가나韓語早道』는 일본인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교재로 만든 것 같다. <표 7>의 책에서 『상어첩해』·『가나行商手引』이 주목된다. 商語·行商이란 제목처럼, 상업(무역)과 관련된 내용이 중심이라 생각한다. 1890년대가 되면 이런 상인용 등 개별 학습서의 간행이 성행하였다. 나카노의 책은 ‘상인용 학습서’의 선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런 학습서 등장은 중국상인 세력에 대한 일본상인의 商權 강화와 일본 거류민의 증가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¹²⁴⁾

『일어공부』 판권지에 기재된 나카노의 주소는 ‘부산항 혼마치(本町)’다. ‘許書房’도 여기라고 생각한다. <표 7>의 두 책(②, ⑤)이 허서방에서 간행된 것을 고려하면, 3책(①, ③, ④)도 ‘허서방’ 간행일 가능성이 크다.

민건호는 1890년 1월 12일 ‘中野屋’에 가서 ‘日語冊’ 1권을 사온 적이 있다.¹²⁵⁾ <표 7> 책의 간행 시기는 이보다 뒤이므로 <표 7> 책은 아니다. 민건호가 산 책이 궁금하다. 하지만 ‘중야

121) 大曲美太郎, 「釜山港日本居留地に於ける朝鮮語教育 附朝鮮語學書の概評」 『청구학총』 24호, 1936, 158쪽.

122) 山田寛人, 『植民地朝鮮における朝鮮語奨励政策』, 不二出版, 2004, 239쪽.

123) 黃雲, 『韓國開化期における日本語教育に関する研究』, 麗澤大學 언어교육연구과 박사논문, 2015, 156쪽 <부록> 참조; 앞의 논문, 214쪽.

124) 南相瓊, 「日本人の韓國語學習-朝鮮植民地化過程に焦点をあてて-」 『교육학연구』 58-2, 1991, 16쪽.

125) 『국역 해은일록』 경인(1890, 고종 27) 1월 12일(2-671쪽).

옥'이 '許書房'과 같은 건물일 가능성은 높다. 만약 같다면 허서방은 책 발행·판매를 겸한 서방(책방)인 것이다.

개항 후 부산에 사는 일본상인들은 처자가 부산에 오는 것을 신청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허락하지 않았다. 1876년 10월 14일 부산에 오는 일본인의 처자 동반이 공인되었다. 공인된 후 첫 번째가 나카노라고 알려져 있다. 그는 11월에 처를 대동하고 부산에 왔다.¹²⁶⁾ 일본상인들이 가족을 데리고 부산에 와 머무는 것이 늘어나자, 예조판서(徐堂輔)는 1877년 1월 외무경 데라시마 무네노리(寺島宗則)에게 상인 가족[商眷]을 소환할 것을 촉구하였다.¹²⁷⁾

나카노 가족이 살았던 집 위치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浦山港見取圖'에는 '대일본관' 옆으로 '近藤/中野/荒川, 尾間/川村'이라고 적혀 있다.¹²⁸⁾ 2곳에 '官宅'이라 적혀 있어, 관사임을 알 수 있다. 인명은 近藤進鋤/中野許多郎/荒川德滋, 尾間啓治/川村(미상)이라고 생각한다. 견취도에는 '明治 14년(1881) 1월'이라 있지만, 김재승은 시기를 1885년 10월~1887년 12월로 추정하였다.¹²⁹⁾

그런데 곤도는 1876년 10월 31일~1878년 11월 19일 관리관,¹³⁰⁾ 1880년 2월~1882년 5월 영사로 근무했다. 나카노도 곤도가 관리관·영사일 때 직원으로 근무했다.¹³¹⁾ 인물 추정이 맞다면 곤도의 근무 시기로 보아, 김재승이 추정한 시기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일어공부』에 기재된 주소는 '本町'다. 견취도 관택(관사) 위치도 혼마치(本町)이다. 앞에서 사진을 언급할 때, 손자 나카노 모토스케(中野元介) 주소는 혼마치 3번지인데, 정확하게는 3-18이다. 혼마치 3-18 中野상점(中野元介)¹³²⁾이나 그 옆 3-19 谷直상점(谷禹三郎)¹³³⁾은 초량왜관 때 裁判屋(家)이 있던 곳이다.¹³⁴⁾ 나카노의 혼마치 주소는 혼마치 3-18이고, 여기가 '中野屋', '許書房'이 있던 곳이라고 추정해 본다.

7. 맺음말

126) 김의환, 『부산 근대 도시형성사 연구』, 연문출판사, 1973, 32쪽. 다카사키 소지(高崎宗司) 지음·이규수 옮김,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 역사비평사, 2006, 19쪽.

127) 『동문회고』 附編, 通商 1, 「禮曹判書諭召還商眷書」

128) 장순순, 「새로 발견된 왜관지도-「포산향견취도」-」 『한일관계사연구』 16, 2002, 183쪽.

129) 김재승, 「포산향견취도의 제작년도에 관한 소고」 『역사의 바다, 바다의 역사』(발표자료집), 2004, 58쪽.

130) 최보영, 앞의 논문, 484쪽 <표 3>.

131) 최보영, 「개항기(1880~1906) 부산주재 일본영사의 파견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81, 2017, 19쪽 <표 1>.

132) 上田耕一郎 편집·발행, 『부산상공인명록』, 부산상공회의소, 1936, 73쪽. 부산부, 『釜山の産業』, 1937, 상공인명록 1쪽. 업종은 油紙麪類 도소매업이다.

133) 中村資良,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1937년판), 동아경제시보사. (주)곡직상점 대표는 谷禹三郎(마산부 元町 149), 혼마치 3-19는 부산지점, 谷直은 谷直吉이다.

134) 大曲美太郎, 『釜山の古蹟及遺物』, 부산부, 1936, 28쪽. 일본에는 '十八九番地'다.

근대 이행기 한일 간 무역 통계의 연속성과 단절성

—1874년과 1880년의 비교—

정 성일(광주여대)

차례

1. 머리말
2. 자료에 대하여
3. 1874년과 1880년의 무역 통계
4. 무역 통계의 연속성과 단절성
5. 맺음말

1. 머리말

韓國의 對外貿易은 1876년을 基點으로 하여 近代의 형태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 1876년 2월 2일(양력 2.26.) 조선이 일본과 朝日修好條規(일명 강화도조약)를 맺은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런데 그때를 경계로 하여 모든 것이 한꺼번에 前近代에서 近代로 전환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무역 통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 한국은 1880년까지도 수출과 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통계를 작성하지 못했다.¹⁾ 조선보다는 그것이 더 빨랐던 일본도 外務省 보고 자료와 대장성 통계 자료 사이에 차이를 보이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초기에는 미숙함을 드러냈다.

한국의 근대 무역 통계는 국내 경제 관련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通商彙纂』으로 통칭되는 일본 측 자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1980년대 후반부터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²⁾ 그런데 최근까지도 여전히 1890년대 이후의 연구가 많고, 1880년대나 그 이전 시기에 관한 것은 상대적으로 적다. 더구나 1876년 이전과 이후의 무역 통계를 연속 또는 단절의 관점에서 정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부산항(1876.12.)에 이어 원산항(1879.8.), 인천항(1883.1.)이 일본에 개방되었다. 그런데 그 이전인 조선 후기에도 양국 사이에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1881년 5월 5일(양력 6.1) 朝士視察團(일명 紳士遊覽團)의 일원이었던 李鑣永(1837~1907)이 일본 外務省에 가서 大書記官 宮本少一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다음 발언이 당시 조선의 사정을 잘 말해 준다. “조선에서는 아직 海關이 설치되지 않아 關稅를 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조선의 수출입 규모를 대강은 파악하고 있지만, 정확한 액수를 알지 못하고 있다.”(我曰 弊邦非但不開於商務 姑未定稅則 故至輸出入之數 略有假量 而初不詳探矣). 이현영, 「日槎集略 人」, 問答錄, 『국역 해행총재 속편』 XI, 1977, 145쪽.

2) 『通商彙編』(1881~86년), 『通商報告』(1886~89년), 『通商彙纂』(1894~1913년)을 엮은 『復刻板 通商彙纂』(전 80권)을 일본에서 1988년부터 1992년까지 不二出版이 간행하였다. 이 자료에 대한 해제는 高嶋雅明, 「復刻板 『通商彙纂』 『通商彙纂』 解説」, 『(復刻板) 通商彙纂』 제1권(<原題 『通商彙編』(明治14年~15年), 不二出版, 1988, 1-20쪽을 참조. 이 가운데 한국에 관한 것을 뽑아 펴낸 것이 김경태 편, 『通商彙纂 韓國篇』(1893~1903년, 전 10권), 여강출판사, 1987이다. 최근 발표된 김연지의 「『통상회찬-주한일본영사관보고』 한국편의 체제 검토와 사료적 가치」(『지방사와 지방문화』 19-1, 역사문화학회, 2016, 225쪽)도 참고가 된다.

즉 조선과 일본이 1609년(光海 元) 기유약조(己酉約條)에 근거하여 1611년부터 1872년까지 對馬島(일본에서는 對馬藩으로 부름)의 歲遣船을 통하여 前近代의 형태의 무역을 해오고 있었다. 세견선 제도가 일본 외무성의 개입으로 폐지된 뒤에도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민간 상인 사이에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研究史的으로 보면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이행기의 양국 간 무역 통계를 정비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

이에 필자는 1872~75년 일본 외무성 기록에 근거하여 양국 간 무역 통계의 정리를 시도하였다.³⁾ 이어서 1880년 조선의 대일 수출입 통계를 정리하고, 그것을 1877~84년 통계와 비교 분석을 한 바 있다.⁴⁾ 이 글에서는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체결 2년 전인 1874년과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체결 4년 후인 1880년의 무역 통계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근대 이행기에 해당하는 이 6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무역 통계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2. 자료에 대하여

1) 1872~75년의 일본 외무성 기록

1872년부터 1875년까지 양국 간 무역을 보여주는 자료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외무성 기록인 『對韓政策關係雜纂 朝鮮事務書』이다.⁵⁾ 이 자료는 한국에서 『조선외교사무서』라는 이름으로 영인본이 간행되었다.⁶⁾ 다른 하나는 『對韓政策關係雜纂 宮本大丞朝鮮理事始末』이다.⁷⁾ 이 밖에 『日本外交文書(한국편)』가 있다.⁸⁾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釜山府史原稿』에도 일본 외무성 기록의 일부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참고가 된다.⁹⁾

필자는 1872~75년 무역 통계를 분석한 적이 있다. 그런데 1872년 통계는 11월 한 달분이 전부이다. 다만 이 자료는 1872년 9월 歲遣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뒤의 무역 통계로는 가장 빠르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1873년 통계는 1년 중에서 겨우 3달(3, 4, 7, 10월) 동안의 수출입 실적만 남아 있다. 1874년의 경우는 4~8월을 제외한 1~3월과 9~12월의 수출입 실적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더구나 1875년은 석 달(1~3월) 동안의 기록만 현존한다. 이처럼 1872~75년의 年間 무역 규모를 자세하게 분석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¹⁰⁾

2) 1880년 李鑣永의 「朝鮮國輸出入半年表」(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3) 정성일, 1991, 「조선후기 대일무역의 전개과정과 그 성격에 관한 연구—1790년대~1870년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26-246쪽; 정성일, 1992, 「개항 직전 대일교역품의 특징(1874-1875)」, 『수춘 박영석교수 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상, 1087-1114쪽; 정성일, 2013, 「1872-75년 조일 무역 통계」, 『한일관계사연구』 46, 한일관계사학회.

4) 정성일, 2020, 「조사시찰단의 보고로 본 1880년 조선의 수출입 통계」, 『한일관계사연구』 68, 한일관계사학회.

5) 『對韓政策關係雜纂 朝鮮事務書』, 일본 外交史料館 외무성기록 1.1.2.3-13.

6) 『朝鮮外交事務書』(전 9권), 성진문화사, 1971.

7) 『對韓政策關係雜纂 宮本大丞朝鮮理事始末』, 일본 外交史料館 외무성기록 1.1.2.3-11.

8) 『日本外交文書(한국편)』, 태동문화사, 1981.

9) 『釜山府史原稿』(전 6권), 도서출판 민족문화, 1987.

10) 정성일, 위의 논문(2013).

이 자료는 1881년 朝士視察團(일명 紳士遊覽團)의 일원으로 일본을 다녀왔던 이현영(1837~1907)이 작성한 무역 관련 문서이다. 「조선국 수출입 반년표(朝鮮國輸出入半年表)」 또는 「부산 원산 반년 수출입표(釜山元山半年輸出入表)」라는 제목의 자료가 그것이다. 1880년대 초반 한국의 무역 통계가 빈약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 자료가 갖는 사료적 가치는 크다.

「조선국 수출입 반년표(부산 원산 반년 수출입표)」의 존재에 대해서는 1960년대 중반부터 이미 소개가 되었다.¹¹⁾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 문서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¹²⁾ 그 이유는 이 표가 수출입 통계 숫자만 제시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붙어 있지 않아서 이 표 자체만으로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더구나 이 표는 1880년 7월부터 12월까지 반년분의 실적만 담고 있어서 그해 상반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필자는 현재 일본 국립공문서관과 국립국회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外務省과 大藏省 관련 문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1880년의 年間 무역 규모를 검토한 바 있다.¹³⁾

3) 1877~84년의 일본 대장성 기록

일본 大藏省 關稅局이 펴낸 『大日本外國貿易 十八箇年對照表』(RETURNS OF THE FOREIGN TRADE OF JAPAN for the Eighteen Years from 1868 to 1885 Inclusive)라는 자료가 있다. 여기에는 1868년(明治 元)부터 1885년(明治 18)까지 18년 동안 일본의 대외 무역에 관한 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이 통계 책자의 부록으로 1877년부터 1884년까지 8개년의 조선-일본 간 무역 실적을 정리한 통계표가 필자의 주된 관심사이다. 그런데 이 통계표의 1877년은 하반기(7~12월)만, 그리고 1884년은 1월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 통계표를 필자는 「조선국 무역 8개년 대조표(1877~84년)」라 부르기로 한다.¹⁴⁾

3. 1874년과 1880년의 무역 통계

1) 1874년의 무역 통계(1~3월, 9~12월)

11) 정옥자의 1965년 논문(「紳士遊覽團考」, 『歷史學報』 27, 역사학회) 139쪽의 「釜山·元山 半年輸出入表」와 142쪽의 「朝鮮國輸出入半年表(奎, 3182) (表題) 釜山元山半年輸出入表(1880년 7월 1일~12월 31일)」는 동일한 문서이다. 이 밖에도 「조선국 수출입 반년표」의 소장 기관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해제(解題)가 있다. 그리고 이 문서의 작성자인 이현영(李鑣永)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는 가운데, 「조선국 수출입 반년표」(또는 「부산원산 반년 출입표」)를 언급한 것이 있다(권석봉, 1995, 「이현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 김동철, 「이현영」, 부산역사문화대전).

12) 1877년 하반기부터 1884년 1월까지 일본 대장성 관세국의 무역 통계를 소개하는 기존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이현영의 「조선국수출입반년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박기주·김낙년, 2009, 「한국의 장기 무역통계와 무역지수(1877~1963)」, 『경제학연구』 57-3, 한국경제학회, 135-136쪽).

13) 정성일, 위의 논문(2020).

14) 정성일, 위의 논문(2020), 236-247쪽.

가. 조선의 대일 수출(조선→일본)

1874년 조선의 대일 수출 통계는 필자의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다만 이것은 1874년 1년분 실적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그해 1~3월과 9~12월 실적만 보여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4~8월 기록은 없음).

<표 1> 1874년 조선의 대일 수출 통계(1~3월, 9~12월)

연번	품명(원문)	품명(국문, 필자)	단위	수량*	금액(韓錢)	
					관	문
1	鰻鱈	상어 지느러미	斤	3,749	449	600
2	尾(人)蔘	미인삼	斤	4,075	2,051	500
3	猿手人蔘	원수인삼	斤	35	38	500
4	木綿	목면	疋	11,623	3,295	505
5	布海苔	미역 김	俵	1,216	1,127	900
6	天草	우뭇가사리	俵	670	592	700
7	煎海鼠	마른 해삼	斤	15,366	2,629	890
8	牛爪	소 발톱	斤	3,695	93	125
9	牛皮	소 가죽	斤	146,688	9,160	771
10	晒牛皮	말린 소 가죽	枚	17	10	200
11	牛骨	소 뼈	斤	16,427	75	412
12	牛筋	소 힘줄	斤	187	51	954
13	牛角	소 뿔	斤	100	2	300
14	犬皮	개 가죽	枚	434	19	200
15	虎皮	범 가죽	枚	1	3	500
16	豹皮	표범 가죽	枚	2	10	
17	鹿皮	사슴 가죽	枚	4	1	600
18	山茱萸	산수유	斤	2,524	435	520
19	牡丹皮	목단피	斤	2,835	185	200
20	大豆	콩	俵	1,306	1,305	840
21	小豆	팥	俵	23	39	755
22	白米	흰쌀	俵	1,141	1,660	477
23	餅米	찹쌀	斗	9	4	170
24	小麥	밀	升	11		228
25	明太	명태	連	372	51	930
26	砂金	사금	目	221	229	900
27	圓扇	둥근 부채	枚	6,000	77	900
28	玉子	달걀		1,800	5	275
29	朝鮮疊表	조선 돛자리	枚	22	3	690
30	干鮑	마른 전복	斤	40	4	800
31	干鱈	마른 멸치		8,116	91	237
32	黃芩	황금		500	15	
33	生絲	생사	斤	18	18	
계					23,742	579

자료 : 정성일, 2013, 81-82쪽, 87-90쪽. 원 자료는 『對韓政策關係雜纂 朝鮮事務書』(1874년 1~3월), 『對韓政策關係雜纂 宮本大丞朝鮮理事始末』(1874년 9~12월).

주 : * 단위당 소숫점 이하는 버림.

나. 조선의 대일 수입(조선←일본)

1874년 조선의 대일 수입 통계는 필자의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표 2>로 나타냈다. 이것 역시 1874년 1년분 실적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그해 1~3월과 9~12월 실적만 보여줄 뿐이다(4~8월 기록은 없음).

<표 2> 1874년 조선의 대일 수입 통계(1~3월, 9~12월)

연번	품명(원문)	품명(국문, 필자)	단위	수량*	금액(韓錢)	
					관	문
1	唐木(綿)	당목면	本	4,363	11,080	300
2	天竺木綿	천축목면	本	985	1,886	
3	綾木綿	능목면	本	464	1,834	300
4	海黃	비단(가이키, 甲斐絹)	匹	1,297	5,217	300
5	生平	생평	疋	89	149	500
6	紅ミ	홍견(紅絹 もみ)	疋	308	429	500
7	丁銅	정동	斤	12,400	2,221	
8	古銅	고동	斤	6,202 ¹⁵⁾	955	764
9	檳柑	밀감		500	1	100
10	陳皮	진피	斤	11,000	233	300
11	胡(糊)椒	후추	斤	590	102	800
12	菓子	과자	箱	512	102	420
13	箱菓子	상자 과자	箱	392	73	580
14	素麪	소면(국수)	箱	34	101	600
15	膳部	요리 담는 도자기	組	21	17	640
16	太白膳部	두껍고 흰 도자기	組	45	37	950
17	染付膳部	색깔 입힌 도자기	組	58	31	900
18	錦膳部	도자기의 일종	組	25	21	100
19	染福膳部	도자기의 일종	組	13	16	100
20	礪膳部	도자기의 일종	組	6	4	800
21	別膳部	도자기의 일종	組	168	117	600
22	染付久羽	색깔 넣은 [?]	組	60	4	600
23	錦久羽	채색 [?]	組	20	1	600
24	量	[?]	挺	7	3	500
25	白砂糖	백사탕	斤	50	6	500
26	丸辻傘	우산	本	230	46	
27	妻黒傘	부인용 검정 우산	本	300	135	
28	豬口	작은 술잔	束	4		88
29	染付輪豬口	색깔 입힌 둥근 술잔	束	50		800
30	紅粉	홍분(화장품)	斤	39	232	
31	木實油	나무열매 기름	升	594	211	20
32	蠟燭	납촉	斤	100	18	400
33	黃連	황련		14	7	
34	錫	주석	斤	500	225	
35	鈿<金+丹>	토틸	斤	5,525	495	
36	三合徳久利	3홉 들이 술병		36	2	420
37	錦手三合久利 ¹⁶⁾	채색 3홉 들이 술병		35	2	975
38	四合徳久利	4홉 들이 술병		50	4	250
39	錦四合久利	채색 4홉 들이 술병		24	2	16
40	錦手壹升久利	채색 한 되 들이 술병		16	2	880
41	梅形鍋	매화 모양 냄비	組	82	88	800
42	筑前鍋	지쿠젠 냄비	組	87	65	250
43	葛	쑤	斤	136	9	520
44	棘風呂	가시나무 목욕통		20	1	350
45	木具	나무 그릇	膳	19	5	920

46	玉鑑	옥빛 나는 주석	斤	1,200	323	
47	礮重	찬합	組	50	10	
48	礮五寸重	5치 크기 찬합	組	3		750
49	礮四寸重	4치 크기 찬합	組	3		600
50	春慶重 ¹⁷⁾	옷칠을 한 찬합	組	24	3	840
51	土瓶	주전자		20	1	600
52	中土瓶	중간 크기 주전자		10		800
53	中皿	중간 크기 접시	束	2		500
54	染附中皿	색깔 입힌 중간 접시	束	10	1	960
55	錦拾貳色		組	115	24	
56	炙籠	석쇠(아부리코)	挺	46	6	160
57	中炙籠	중간 크기 석쇠	枚	6		780
58	中刀	중간 크기 칼	挺	80	12	
59	美濃紙	미농지	枚	1,500	9	
60	紋紙	무늬 넣은 종이	枚	2,073	12	438
61	塗蓋	칠을 한 덮개	枚	12	7	200
62	喇竿竹		本	317	11	680
63	秤	저울	挺	5	2	500
64	蠟	밀랍	斤	1,175	422	500
65	七輪	풍로		20	1	400
66	唐絲	외제 실	斤	40	13	200
67	唐鋏	외제 가위	挺	215	33	810
68	煙竹	담뱃대	本	153	3	825
69	五ッ入子手洗	5개 한 세트 세숫대	組	2	1	500
계					27,112	486

자료 : 정성일, 2013, 83-86쪽, 99-103쪽. 원 자료는 『對韓政策關係雜纂 朝鮮事務書』(1874년 1~3월), 『對韓政策關係雜纂 宮本大丞朝鮮理事始末』(1874년 9~12월).

주 : * 단위당 소숫점 이하는 버림.

2) 1880년의 무역 통계(1~12월)

가. 조선의 대일 수출(조선→일본)

<표 3>에 소개한 1880년 조선의 대일 수출 통계는 일본 대장성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의 실적을 집계한 것이다.

<표 3> 1880년 조선의 대일 수출 통계(1~12월)

연번	품명(한자, 일문)	품명(영문)	품명(국문) ¹⁸⁾	단위	수량	금액	
						円	錢

15) 필자의 이전 논문(2013), 83쪽 <부표 6>의 1874년 2월 古銅의 수입량을 4.00으로 적은 것은 4,700의 誤記이다. 동년 1월 1斤 8合, 2월 4,700斤, 3월 267斤, 9월 379斤, 11월 500근과 365근 이므로 이를 모두 더하면 총 6,202斤 8合이 된다.

16) 錦手는 일본어로 '니시키테'라 읽는다. 이것은 도예(陶藝) 기법의 하나인데, 赤·綠·黃·靑·紫色 등 화려한 색을 넣는 우와에[上繪]를 이용하여 도자기를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 일본에서는 五彩, 色繪, 赤繪 등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이것은 지금의 일본 사가현[佐賀縣] 고이마리[古伊万里] 지역에서 불리는 도자기 관련 용어 중 하나이다.

17) 春慶重은 일본어로 '슌케이누리'(春慶塗)라 부르는 칠 바르는 기법으로 제작된 도시락 상자(重箱 주바코)를 말한다. 앞에 이 칠기 도시락이 만들어진 産地名을 붙여서 '〇〇春慶重'이라 부르기도 했다.

1	牛骨及馬骨	Bone, Horse & Cattle	소말 뼈	斤	1,069,058	18,569	90
2	鯨骨	Bone, Whale	고래 뼈	斤	7,500	212	
3	毛皮	Furs	모피	枚		593	40
4	生牛皮及[?]牛皮	Hides, Cattle	생우피와 말린(?) 우피	斤		193,132	87
5	牛蹄	Hoofs, Cattle	소 발톱	斤	3,600	145	
6	鮑殼	Shells, Awabi	전복껍질	斤	103,950	5,556	53
7	諸骨羽毛角類	Bone, Feather, Hair, Horns & Unenum	뼈 뿔 깃털			179	
8	生綿及繰綿	Cotton, Raw	생면과 조면	斤			
9	綿布類	Cotton Piece Goods	면직물류	反	890	995	
10	麻	Hemp	삼	斤	97,400	10,092	
11	麻布類	Hemp Piece Goods	마포류	反			
12	生絲[?]眞綿類	Cocoons & Floss-silk	생사와 진면	斤	21,869	71,266	60
13	絹布類	Silk Piece Goods	견직물류	反	1,460	3,236	
14	五倍子	Gall-nuts	오배자	斤	269	36	90
15	人參	Ginseng	인삼	斤	1,607	8,325	50
16	牡丹皮	Peony Bark	목단피	斤	1,065	127	80
17	黃芩	Wogon	황금	斤	5,118	231	74
18	諸藥材及染料類	Drugs & Dye-stuffs, Unenum	약재 염료류			147	
19	大麥	Barley	보리	石	708	1,883	95
20	豆類	Beans	콩류	石	22,457	119,307	9
21	鮑	Dried Awabi	전복	斤	16,080	1,655	
22	鰾	Dried fish & Sheelfish, Unenum	오징어	斤			
23	諸乾魚乾貝類	Dried Cuttle-fish	건어물	斤	1,750	210	
24	海蘿	Funori	청각채	斤	415,210	24,358	25
25	海參	Iriko or Beche de Mer	해삼	斤	65,480	18,034	50
26	寒天草	Kantenso	우뚝가사리	斤	98,620	3,366	70
27	米	Rice	쌀	石	93,288	729,705	62
28	鱧鰭	Shark's Fins	상어지느러미	斤	23,803	7,634	5
29	小麥	Wheat	밀	石	1,042	5,154	12
30	諸穀物及食物類	Grain & Provisions, Unenum	곡물 식물류			113	40
31	禽獸類	Animals	금수류			717	90
32	乾鰯(肥料)	Dried Sardine, for Manure	말린 정어리(비료)	斤	727,794	20,267	35
33	諸金屬類	Metals	금속류			934	40
34	油蠟類	Oil & Wax	유랍류			207	89
35	油槽	Oil-cakes	갯목	斤		1,806	40
36	黑鉛	Plumbago	흑연	斤	5,000		
37	諸雜貨類	Miscellaneous	잡화류			8,021	21
	輸出通計 ¹⁹⁾	Total Exports ²⁰⁾	수출 계			1,256,225	7
	再輸入品類 ²¹⁾	Articles, Re-imported ²²⁾	재수입품류				
	純計	Net Total	순 합계			1,256,225	7

주 : 원문은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적혀 있음.

자료 : 정성일(2020), 257-258쪽. 원 자료는 「附錄 朝鮮舊貿易八箇年對照表」(自明治十年至同十七年), 『大日本外國貿易』, 大藏省關稅局(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18) 원문에는 없으나 필자가 붙인 것임.

19) 원문에는 (일본의) 수입통계(輸入通計)로 되어 있으나, 필자가 (조선의) 수출통계(輸出通計)로 바꾸었음.

20) 원문에는 Total Imports로 되어 있으나, 필자가 Total Exports로 바꾸었음.

21) 원문에는 (일본의) 수출통계(輸出通計)로 되어 있으나, 필자가 (조선의) 수입통계(輸入通計)로 바꾸었음.

22) 원문에는 Articles, Re-exported로 되어 있으나, 필자가 Articles, Re-imported로 바꾸었음.

나. 조선의 대일 수입(조선←일본)

<표 4>에 제시한 1880년 조선의 대일 수입 통계는 일본 대장성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의 실적을 보여준다.

<표 4> 1880년 조선의 대일 수입 통계(1~12월)

연번	품명(한자, 일본)	품명(영문)	품명(국문) ²³⁾	단위	수량	금액	
						円	錢
1	일본산 繰綿	Cotton, Raw	조면	斤	5,800	1,195	75
2	衣裳類	Clothing	의상류			1,199	
3	蚊帳	Mosquito-nets	모기장	个			
4	改機	Silk, Kaiki	깨끼 비단	反	1,251	8,805	
5	諸絹布類	Silk Piece Goods, Unenum	비단, 포복류	反	1,562	9,195	
6	諸布帛類	Textile Fabrics, Unenum	베, 비단류	反	327	480	
7	明礬	Alum	명반	斤	5,000	358	
8	陳皮	Orange Peels	진피	斤	3,200	88	
9	硫黃	Sulphur	유황	斤			
10	諸藥材類	Drugs, Unenum	제약재류				
11	蜜柑	Orange	귤			287	
12	米其他雜穀類	Rice & other Grain	쌀 기타 잡곡류	石			
13	酒	Sake	술	樽		14,072	67
14	鹽	Salt	소금			66	
15	醬油	Soy	간장	升		298	85
16	砂糖	Sugar	사탕	斤	9,735	1,066	65
17	素麵	Vermicelli	소면	斤		1,607	
18	諸食物類	Food & Provisions, Unenum	제식물류			372	74
19	生銅	Copper, Ingot	생동	斤	46,900	12,578	5
20	熟銅	Copper in Bar, Slab, & c	숙동	斤	113,720	30,970	85
21	故(古)銅 ²⁴⁾	Copper, Old	고동	斤			
22	銅線	Copper Wire	구리선	斤	100	35	
23	銅器類	Copper Ware	구리 그릇류			1,277	50
24	鐵器類	Iron Ware	쇠 그릇류			1,171	60
25	諸金屬及金屬器類	Metals & Manufactures of, Unenum	금속, 금속기류				
26	蠟燭	Candles	납촉	斤	318	68	11
27	木炭	Charcoal	목탄	斤	14,065	133	70
28	珊瑚	Coral	산호			50	
29	刃物類	Cutlery	칼 종류			221	40
30	扇類	Fans	부채 종류	个	60	18	
31	漆器類	Lacquered Ware	칠기류			1,199	30
32	ランプ	Lamps	램프				
33	玻璃鏡類	Looking Glasses	거울류			1,886	30
34	機械類	Machinery	기계류				
35	マッチ	Matches	성냥	[?]	16,313	10,162	70
36	油蠟類	Oil & Wax	기름 밀랍류			126	58
37	提灯	Paper Lanterns	등롱	个	456	84	47
38	磁器及陶器類	Porcelain & Earthen Ware	도자기류			965	25
39	煙草類	Tobacco	담배류	斤	4,141	544	39
40	傘類	Umbrellas	우산류	个	7,163	1,170	57
41	諸雜貨類	Miscellaneous	잡화류			12,866	56
	日本産計		일본산 계			114,622	44

42	외국산	ブランケット	Blankets	담요	枚	200	745	
43		地氈類	Carpets	카펫류			118	
44		繰綿	Cotton, Raw	조면	斤	30,917	8,960	50
45		綿織絲	Cotton Yarn	면직사	斤	43,075	19,243	33
46		更紗	Chintzes or Printed Cotton	경사	反	593	1,119	
47		綿緞	Cotton Balzarine	면러	反			
48		綿縐子	Cotton Satins	면수자	反	200	1,087	70
49		綿綸子	Cotton Satins, Figured	면륜자	反			
50		綿天鵝絨	Cotton Velvets	무명 벨벳	反	20	240	
51		生金巾	Shirtings, Gray	생광목	反		545,301	74
52		綾金巾	Shirtings, Twilled	줄무늬 금巾	反		2,247	35
53		天竺布	T. Cloths	천축포	反		76,065	75
54		緋金巾	Turky-reds	비색의 금巾	反	2,700	6,126	10
55		寒冷紗	Vietoria Lawns	한랭사	反	100,800	105,105	
56		諸綿布類	Cotton Pieco Goods, Unenum	면포류	反	718	1,775	20
57		オルレンス	Orleans	오를리앙즈 면 제품	反	1,190	6,870	33
58		諸毛布類	Woollen Piece Goods, Unenum	모포류	反	35	475	
59		諸布帛類	Textile Fabrics, Unenum	제포백류	反		1,258	
60		明礬	Alum	명반	斤	1,500	37	50
61		染粉	Aniline Dyes	염분	斤		40,788	92
62		緋靑	Blue	비청	斤			
63		甘草	Liquorice	감초	斤	8,345	776	
64		胡椒	Pepper	호초	斤	1,400	265	
65		蘇木	Sapan-wood	소목	斤	6,300	227	
66		諸藥材及染料類	Drugs & Dye-stuffs, Unenum	약재, 염료				
67		鐵器類	Iron Ware	쇠 그릇류			42	
68		白銅	Nickel	백동	斤	5,306	8,484	1
69		錫	Tin	주석	斤	57,150	23,854	35
70		亞鉛	Zinc	아연	斤	17,800	4,151	60
71		諸金屬類	Metals, Unenum	금속류				
72		兵器類	Arms & Munition of War	병기류			3,468	3
73		時計類	Clocks	시계류	个	3	15	
74		總玻璃片	Glass, Window	유리	枚		508	40
75		石油	Oil, Kelosene	석유	[?]	62	221	80
76		藤	Rattans	등나무	斤	4,628	489	
77		諸雜貨類	Miscellaneous	잡화류			3,324	39
	外國産計			외국산 계			863,391	70
	輸入統計 ²⁵⁾	Total Imports ²⁶⁾		수입 계			978,014	14
	再輸出品類 ²⁷⁾	Articles, Re-exported ²⁸⁾		재수출품류			3,720	40
	純計	Net Total		순 합계			974,293	74

주 : 원문은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적혀 있음.

자료 : 정성일(2020), 259-261쪽. 원 자료는 『附錄 朝鮮舊貿易八箇年對照表』(自明治十年至同十七年), 『大日本外國貿易』, 大藏省關稅局(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23) 원문에는 없으나 필자가 붙인 것임.

24) 원문은 고동(故銅)이지만, 이것은 고동(古銅)의 오기(誤記)이다.

25) 원문에는 (일본의) 수출통계(輸出通計)로 되어 있으나, 필자가 (조선의) 수입통계(輸入通計)로 바꾸었음.

26) 원문에는 Total Exports로 되어 있으나, 필자가 Total Imports로 바꾸었음.

27) 원문에는 (일본의) 재수입품류(再輸入品類)로 되어 있으나, 필자가 (조선의) 재수출품류(再輸出品類)로 바꾸었음.

28) 원문에는 Articles, Re-imported로 되어 있으나, 필자가 Articles, Re-exported로 바꾸었음.

4. 무역 통계의 연속성과 단절성

1) 무역 통계의 작성 주체

조선-일본 간 무역 통계는 조선의 개항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선이 개항하기 전에는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자료가 주목된다. 조선의 개항장으로 건너온 일본 領事들이 조선의 현지 사정을 일본 외무성에 보고한 것이 무역 통계의 기초 자료가 되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일본 대장성은 1868년(明治 元)부터 일본의 대외 무역 통계를 작성하였다.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 18년 동안 일본의 무역 통계(1868~85년)를 수록한 책자이다. 이 자료는 현재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인터넷으로 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대장성의 무역 통계는 일본 외무성의 영사 보고 자료와 달리, 일본의 수출품과 수입품의 각각에 부여된 물품 번호와 물품명이 한자(일본문)와 영문으로 적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수출품은 200종, 수입품은 485종이 열거되어 있다. 그 가운데 일본의 1번 수입품은 서적(書籍, Books)이며, 마지막 200번은 기타 제선용(其他諸船用, All other Articles Ship's Use)이다. 그리고 일본의 1번 수출품은 음료제류(飲料諸類, Beverages)이며, 마지막 485번은 기타 제잡화류(其他諸雜貨類, All other Articles)이다. 그리고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의 교역국(交易國)이 12개로 분류되어 있다. 일본의 수출품 가액(輸出品價額)은 조선(朝鮮, Korea)이 호주와 오스트리아, 중국에 이어 4번째에 기재되어 있었다. 일본의 수입품 가액(輸入品價額)도 조선이 호주와 벨기에, 중국에 이어서 4번째에 적혀 있었다.²⁹⁾

위의 『대일본 외국 무역 18개년 대조표』(大日本外國貿易 十八箇年對照表, 自明治元年至同十八年)의 끝부분에는 부록으로 1877년부터 1884년까지 8개년의 조선-일본 간 무역 실적을 정리한 통계표가 수록되어 있다. 다만 1877년은 하반기(7~12월), 1884년은 1월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³⁰⁾ 그리고 이 자료의 표지에는 “조선 주재 일본 영사의 보고에 의거하여 편찬한다”는 언급이 붙어 있다.³¹⁾

위의 「조선국 무역 8개년 대조표」(1877~1884년)에서도 일본의 수출품과 수입품의 각각에 부여된 물품 번호와 물품명이 한자와 영문으로 적혀 있다. 일본의 수출품(조선의 수입품)은 77종이다. 이 가운데 일본산(日本産, Japanese Productions) 41종은 5가지로, 외국산(外國産, Foreign Productions) 36종은 4가지로³²⁾ 각각 나누어 놓았다. 그리고 일본의 수입품(조선의 수출품)은 조선산(朝鮮産, Korean Productions) 37종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것을

29) 정성일, 앞의 논문(2020), 236쪽.

30) 1884년(明治 17) 2월 이후의 조선-일본 간 무역은 정표(正表)에 포함시켰다고 적혀 있다[明治十七年二月以後ノ朝鮮貿易ハ正表ニ編入セリ. The Statistics of Trade with Korea are included in the Principal Return from February 1884]. 그리고 표 안에 기재되어 있는 화폐 단위 원(圓)은 (일본) 지폐라고 설명을 붙여 놓았다[表中ノ圓ハ紙幣ナリ. Values are stated in Japanese Currency]. 정성일, 위의 논문(2020), 237쪽.

31) 정성일, 위의 논문(2020), 236-237쪽.

32) 일본의 수출품[조선의 수입품에 해당] 중 외국산의 첫 번째(1類, Class 1)는 42번(카펫류)부터 59번(기타 布綿類)까지이다. 두 번째(2類, Class 2)는 60번(명반)부터 66번(기타 약제와 염료류)까지이며, 세 번째(類, Class 3)는 67번(철기류)부터 71번(기타 금속류)까지이다. 네 번째(4類, Class 4)는 72번(兵器類)부터 77번(기타 잡화류)까지이다(『附錄 朝鮮舊貿易 自明治十年至同十七年 八箇年對照表』). 정성일, 위의 논문(2020), 237쪽.

다시 5가지로 분류해 놓았다. 이처럼 조선-일본 간 무역을 포함하여 일본의 대외 무역 통계는 대장성 관세국이 외무성의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³³⁾

2) 무역품의 종류에 관한 통계

조선의 개항 직전인 1874년의 무역 통계는 <표 1>과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단 4~8월은 기록 없음). 이 통계는 외무성 기록에서 필자가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다. 외무성 기록은 일본 영사의 현지 보고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무역품의 종류에 관한 통계가 일정한 틀을 갖추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1년분 무역 실적을 완전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이 자료의 단점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자료를 통해서 조선의 개항 직전 양국 사이에 교환되었던 물품의 종류를 어느 정도는 살필 수 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1874년 조선이 일본으로 수출한 물품 중에서 그다지 눈에 띄는 것은 없다. 人蔘을 비롯하여 牛皮와 虎皮, 豹皮, 해산물과 약재, 그리고 쌀과 콩 등이 조선의 주요 수출품이었다. 이처럼 조선의 수출 측면만 보면 개항 직전까지도 조선 후기의 흐름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물품들이 주를 이루었다. <표 2>는 일본에서 조선으로 들어온 무역품을 잘 보여준다. 이를 통해서 조선이 일본산 구리를 비롯하여 주식, 토단³⁴⁾ 등을 수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개항 직전까지도 조선이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던 물품의 종류는 조선 후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볼 수 없었던 특징도 두드러진다. 조선이 개항을 하기 전부터 이미 조선 후기에는 보이지 않았던 직물류(唐木綿,³⁵⁾ 天竺木綿,³⁶⁾ 綾木綿,³⁷⁾ 黃海³⁸⁾ 등)와 각종 공예품 등이 조선으로 유입되고 있었음을 알 수

33) 정성일, 위의 논문(2020), 237-238쪽.

34) 토단은 薄鋼板에 亞鉛을 도금한 亞鉛鐵板 또는 亞鉛鍍鐵板을 말한다. '토단'은 아연을 뜻하는 포르투갈어 토타나가(totanaga)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다. 일본 기록에서는 이것을 鈹<金+丹>으로 적었다. 정성일, 위의 논문(2013), 66쪽.

35) 唐木綿은 일본어로 '도모멘'이라 읽는다. 이것은 '외국에서 수입된 목면'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종래의 면포보다 실이 가늘고 폭이 넓었다고 한다. 정성일, 2012, 「조선시대 한일 경제교류—米綿과 蔘銀의 교환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한국과 일본—같은 점과 다른 점, 교류와 갈등의 역사—』(한일관계사학회·한일문화교류기금 편, 경인문화사), 279쪽.

36) 天竺木綿은 일본어로 '덴지쿠모멘'이라 읽는다. 이것은 天竺 즉 인도에서 수입된 목면을 의미했다. 당시 면직물은 실의 굵기나 밀도가 종류마다 달랐는데, 천축목면은 천이 두꺼워서 보자기나 버선을 만드는 데 썼다고 알려져 있다. 정성일, 위의 논문(2012), 71쪽.

37) 綾木綿은 일본어로 '아야모멘'으로 읽는다. '아야'(綾)란 직조를 할 때 실이 교차된 상태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미가 변하여 직물의 三原組織 중 하나인 斜文組織 또는 綾織을 '아야'라 부르게 되었다. 이것은 날실[經絲, 縱絲]과 씨실[緯絲, 橫絲]이 떠서 교차하는 부분이 織面과 비스듬하게 斜線으로 배열된 직물을 말하는데, 平織과 縐子織과 더불어 직물의 三原組織을 이룬다. 즉 능목면은 綾織綿布의 총칭이다. 좁은 뜻으로는 이것이 굵은 데두리와 드릴 등의 능직 면포를 가리킬 때가 많다. 옷감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탈색 또는 염색을 하거나 가공을 하여 의류 외에 각종 용도로 폭넓게 사용한다고 한다(패션전문자료사전, 패션전문자료편찬위원회; 일본 着物用語事典. <http://minagi.p-kit.com/page71575.html>).

38) 海黃은 絹織物의 일종이다. 일본어에서는 '가이키'라 읽고, 海氣 또는 改機로 썼다. 보통은 날실[經絲, 縱系]과 씨실[緯絲, 橫系] 모두 명주실[練り糸]을 사용하여 平織으로 짰다. 이것은 조직이 치밀하고 광택이 나며 마찰을 시키면 소리가 날 정도였다고 한다. 이것은 침구용[夜具地]이나 하오리 옷감[羽織地] 등에 사용되었다. 일본 근세 초기에 중국에서 수입해 오다가, 일본 가이국(甲斐国)에서 생산이 되면서부터 '가이키'를 甲斐絹라 한자로 쓰기도 했다. 이를 '군나오리'(郡内織)라고도 불렀는데, 지금의 야마나시현(山梨縣)에 해당하는 甲斐国 都留郡 桂川 연안의 76개 무라[村]에서 생산되는 직물을 총칭하는 용어를 가리킨다. 다케다[武田]의 直轄領이 國中[구니나카]의

있다. 왜관에서 작성된 『관수 매일기』를 보면 1868년 이전에 이미 서양 물건이 왜관으로 통해 조선 사회에 전파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⁹⁾

조선의 개항 직후인 1880년의 무역 통계는 <표 3>과 <표 4>에 제시하였다. 6년 전인 1874년과 비교해 볼 때, 교역품의 종류가 큰 틀에서는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출품이나 수입품의 종류가 전보다 더 늘기는 했지만, 그것이 엄청난 격차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물론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개항 직후에 그 전과 다른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변화가 뚜렷했던 것은 조선의 수출품보다는 수입품이었다. 예를 들면 외국산 직물류가 조선으로 유입되는 범위가 전보다 더 확대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地氈類, 更絲,⁴⁰⁾ 金巾, 寒冷紗⁴¹⁾ 등). 직물과 관련된 포르투갈어에서 유래한 일본어가 조선 사회에 전해진 것도 이 무렵부터라고 생각된다.⁴²⁾ 게다가 일본산 물품 중에서도 전에 보이지 않던 품목이 새로 등장하기도 했다(機械類, 성냥, 램프 등).

3) 무역품의 수량과 가격에 관한 통계

가. 조선의 대일 수출액 상위 품목

조선의 대일 輸出額 중에서 상위 10위 안에 들어 있었던 품목을 비교한 것이 <표 5>이다. 대상 시기는 1874년의 경우 1~3월, 9~12월이며, 1880년은 1~12월이다. 수출액의 단위는 1874년은 조선 화폐[韓錢], 1880년은 일본 화폐[円]로 되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5> 조선의 대일 수출액 상위 품목 비교

-
- 로 불린 것과 달리, 야마다[山田]의 所領이었던 이곳을 郡內[군나이]로 부른 데서 이 명칭이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다. 正田健一郎, 「ぐんないおり 群内織」, 1984, 『國史大辭典』 4, 일본 吉川弘文館, 1984, 1050쪽.
- 39) 『관수 매일기』 1868년 7월 22일 기사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동래부사가 任官(假別差)을 왜관에 들여보내, “서양 물건을 취급하는 것은 나라[조선국—인용자]에서 금지하고 있는 바이니, 앞으로는 선물이든 상품이든 서양 물건(西洋之諸品; 洋物)이 일체 왜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할 것”을 왜관 측에 요청하였다. 이를 관수가 받아들여 조선 정부의 뜻을 왜관의 무사들에게 바로 전달한 적이 있었다. 정성일, 앞의 논문(2013), 71-72쪽.
- 40) 更絲는 일본어로 ‘사라사’로 읽는다. 이것은 포르투갈어(saraca)에서 유래하였다. 五彩로써 人物·鳥獸·花木 또는 기하학적 무늬를 捺染한 피륙(아직 꿰지 아니한 베, 무명이나 비단 따위의 천을 통틀어 이르는 말) 또는 그 무늬를 가리킨다. 이것은 12세기 무렵부터 있었던 피륙인데, 현재는 綿에 한정하지 않고 폴리에스테르 혼방 등도 많다. 이는 드레스나 아동복 등에 사용되기도 하고 커튼이나 실내 장식용으로도 흔히 쓰인다고 한다(패션전문자료사전, 패션전문자료편찬위원회). 정성일, 앞의 논문(2020), 255-256쪽.
- 41) 寒冷紗는 일본어로 ‘간레이샤’로 읽는다. 이것은 가는 실로 거칠게 平織으로 짜서 풀을 세게 먹인 직조물을 가리킨다. 얇고 풀기가 세기 때문에 장식이나 造花, 커튼, 모기장 따위에 쓴다. 원래 얇은 麻織物로 되어 있었는데, 그 감촉을 흉내내어 촉감이 약간 질긴 綿織物이 만들어졌으며, 그 뒤 목면 제품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한다(패션전문자료사전, 패션전문자료편찬위원회). 정성일, 위의 논문(2020), 255쪽.
- 42) 生金巾은 일본어로 ‘기가나킨’으로 읽으며 표백하지 않은 면포를 가리킨다. 가나킨 또는 가네킨은 포르투갈어 canequim을 일본어로 옮긴 것으로, 한자로는 金巾으로 표기한다. 보통은 폭이 넓은 廣幅物이지만, 사선으로 교차된 줄무늬가 있는 아야가나킨[綾金巾], 무늬가 들어간 몬가나킨[紋金巾]도 있다. 표백한 사라시가나킨[さらし金巾, 曬金巾], 색이 들어간 이로가나킨[色金巾], 프린트[プリント] 등이 있다. 天竺木綿보다 얇게 만든 것[薄地 우스지]으로 옷감의 안감[裏地], 셔츠, 시트, 앞치마 등에 쓰인다. 정성일, 위의 논문(2020), 255쪽.

순위	1874년(1~3월, 9~12월)				1880년(1~12월)			
	품명	수출액(韓錢)		비중 (%)	품명	수출액(日貨)		비중 (%)
		貫	目			円	錢	
1	牛皮	9,160	771	38.58	米	729,705	62	58.09
2	木綿	3,295	505	13.88	生牛皮及[?]牛皮	193,132	87	15.37
3	煎海鼠	2,629	890	11.08	豆類	119,307	9	9.50
4	尾(人)蔘	2,051	500	8.64	生絲及眞綿類	71,266	60	5.67
5	白米	1,660	477	6.99	海蘿	24,358	25	1.94
6	大豆	1,305	840	5.50	乾鱈(肥料)	20,267	35	1.61
7	布海苔	1,127	900	4.75	牛骨及馬骨	18,569	90	1.48
8	天草	592	700	2.50	海參	18,034	50	1.44
9	蠶繭	449	600	1.89	麻	10,092		0.80
10	山茱萸	435	520	1.83	人參	8,325	50	0.66
계		22,709	703	95.64		1,204,730	68	96.56

자료 : 정성일, 2013a, 70-71쪽; 정성일, 2000, 240쪽.

<표 5>가 잘 보여주는 것처럼 개항 직전과 직후에 연속되는 것은 牛皮와 米豆, 人蔘과 海産物이 여전히 조선의 수출 주력 품목이었다고 하는 점이다. 그런데 6년 사이에 품목별 비중의 차이가 달라진 점은 눈여겨볼 일이다. 먼저 우피의 수출액 비중이 1874년에는 38%로 가장 높았는데, 1880년에는 그것이 15% 수준으로 하락했다. 인삼도 8% 대(1874년)에서 1% 미만(1880년)으로 더욱 낮아졌다. 목면은 1874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의 전체 수출액 중에서 13%를 차지하였는데, 그것이 6년 뒤인 1880년에는 상위 10위권 밖으로 아예 밀려나고 말았다. 그런가 하면 쌀의 수출 비중은 6%(1874년)에서 58%(1880년)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것은 조선의 개항 직후부터 조선의 수출(일본의 수입)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었던 당시 상황을 실증하는 것이어서 매우 주목된다.

나. 조선의 대일 수입액 상위 품목

조선의 대일 輸入額 중에서 상위 10위 안에 들어 있었던 품목을 비교한 것이 <표 6>이다. 대상 시기는 1874년의 경우 1~3월, 9~12월이며, 1880년은 1~12월이다. 수입액의 단위도 1874년은 조선 화폐[韓錢], 1880년은 일본 화폐[円]로 되어 있었다.

<표 6> 조선의 대일 수입액 상위 품목 비교

순위	1874년(1~3월, 9~12월)				1880년(1~12월)			
	품명	수입액(韓錢)		비중 (%)	품명	수입액(日貨)		비중 (%)
		貫	目			円	錢	
1	唐木(綿)	11,080	300	40.87	生金巾	545,301	74	55.97
2	海黃	5,217	300	19.24	寒冷紗	105,105		10.79
3	丁銅	2,221		8.19	天竺布	76,065	75	7.81
4	天竺木綿	1,886		6.96	染粉	40,788	92	4.19
5	綾木綿	1,834	300	6.77	熟銅	30,970	85	3.18
6	古銅	955	764	3.53	錫	23,854	35	2.45
7	鈇<金+丹>	495		1.83	綿織絲	19,243	33	1.98
8	紅ミ	429	500	1.58	酒	14,072	67	1.44
9	蠟	422	500	1.56	諸雜貨類	12,866	56	1.32
10	玉鐵	323		1.19	生銅	12,578	50	1.29
계		24,864	664	91.72		880,847	67	90.42

자료 : 정성일, 2013, 72-73쪽; 정성일, 2000, 241쪽.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개항 직전과 직후에 연속되는 것은 唐木綿, 天竺木綿(天竺布)과 生金巾, 寒冷紗 등과 같은 「외국산」 직물류(일본이 외국에서 수입한 것을 조선에 재수출)의 수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하는 점이다. 예를 들면 1874년 唐木綿, 海黃, 天竺木綿, 綾木綿의 비중이 73%였는데, 1880년 生金巾, 寒冷紗, 天竺布의 수입액 비중이 74%였으니, 조선의 외국산 직물류 수입액(일본의 수출액) 비중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단일 품목으로 본다면 주력 상품의 교체가 뚜렷했다. 즉 1874년 唐木綿이 40%로 1위를 차지했으나, 1880년에는 生金巾이 55%로 1위를 탈환한 것이다. 그리고 조선 후기 이래로 일본의 주력 수출품(조선의 수입품)이었던 구리가 여전히 조선으로 유입되고는 있었지만 그 비중이 갈수록 낮아진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1874년 11%, 1880년 4%).

4. 맺음말

수출입 품목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무역 통계는 무역의 특성을 살피는 데 필수 불가결한 기초 자료이다. 그런데도 조선 후기와 개항 초기의 조선-일본 간 무역에서는 이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 17세기 이후 재개되어 1870년대 초반 폐지될 때까지 歲遣船 제도를 근간으로 하던 朝日間 貿易은 1872년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지만, 그것이 1876년 이후 개항장 무역으로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파악하려면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무역 통계의 부재 때문이다.

이 글에서 1874년과 1880년의 두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것도 무역 통계의 보완 차원이었다. 조선의 개항 직전과 직후에 해당하는 6년 사이에 連續되는 것과 斷絶되는 찾아냄으로써, 당시 양국 간 무역의 특징을 더욱 분명히 밝히고자 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다음 네 가지 사실이 확인되었다.

첫째, 歲遣船 파견을 통해서 外交와 經濟가 분리되지 않은 형태로 이루어지던 前近代의 무역은 이미 1872년부터 해체되었기에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1874년과 1880년 무역 통계에서는 조선 후기 무역에서 보이던 封進·回賜라든가 公·私貿易(또는 公貿와 開市·朝市) 등의 구분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둘째, 무역 통계의 작성 주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조선과 일본의 사정이 서로 달랐다. 조선은 그때까지도 아직 海關(또는 稅關)이 설치되지 않아 정부가 양국 간 수출입의 규모를 대강은 파악하고 있었지만 정확한 액수까지는 알지 못할 정도로 무역 통계를 작성할 만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반해서 일본은 메이지 원년(1868)부터 일본 外務省이 해외 각국에 파견된 領事의 보고를 바탕으로 大藏省이 일본의 대외 무역 통계를 작성하고 있었으며, 1877년부터 대장성이 조선-일본 간 무역에 대해서도 해마다 통계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사용한 1874년 조일 무역 통계표(4~8월은 기록 없음)는 외무성 기록에 근거하여 필자가 작성하였으며, 1880년의 무역 통계표(1~12월)는 대장성의 통계를 이용하여 정리할 수가 있었다.

셋째, 수출품과 수입품의 종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먼저 1874년의 경우 조선은 일본으로 조선 후기와 마찬가지로 人蔘을 비롯하여 牛皮와 虎皮, 豹皮, 해산물과 약재, 그리고 쌀과 콩 등을 수출하고, 그 대신에 일본산 구리를 비롯하여 주석, 토단 등을 수입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선의 개항 이전에 이미 조선 후기에는 보이지 않았던 직물류(唐木綿, 天竺木綿, 綾木綿, 黃海 등)와 각종 공예품 등이 조선으로 유입되고 있었음도 확인되었다. 1880년에도 무역품의 종류가 전보다 더 늘기는 했지만, 무역품의 종류 자체가 양적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본이 해외에서 수입한 것을 조선에 재수출한 외국산 직물류가 조선으로 유입되는 범위가 전보다 더 확대되는 등 질적인 변화가 뚜렷했다(地氈類, 更絲, 金巾, 寒冷紗 등). 조선이 수입한 일본산 물품 중에서도 전에 보이지 않던 품목이 새로 등장하기도 했다(機械類, 성냥, 램프 등).

넷째, 수출액과 수입액의 측면에서도 연속과 단절의 두 가지 단면이 서로 대비되었다. 먼저 조선의 수출(일본의 수입)을 살펴보면, 개항 직전과 직후에 연속되는 것은 牛皮와 米豆, 人蔘과 海産物이 여전히 조선의 수출 주력 품목이었다고 하는 점이다. 그런데 품목별 비중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우피의 수출액 비중이 크게 하락했다(1874년 38%, 1880년 15%). 인삼의 비중도 더욱 낮아졌다(1874년 8%, 1880년 1% 미만). 1874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의 전체 수출액 중에서 13%를 차지하였던 조선의 木綿이 1880년에는 상위 10위권 밖으로 아예 밀려날 정도로 그 비중이 작아졌다. 그런가 하면 쌀의 수출 비중은 급격히 상승하였다(1874년 6%, 1880년 58%). 한편 조선의 수입(일본의 수출)을 살펴보면, 개항 직전과 직후에 연속되는 것은 唐木綿, 天竺木綿(天竺布)과 生金巾, 寒冷紗 등과 같은 「외국산」 직물류(일본이 외국에서 수입한 것을 조선에 재수출)의 수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하는 점이다(1874년 唐木綿, 海黃, 天竺木綿, 綾木綿의 비중 73%, 1880년 生金巾, 寒冷紗, 天竺布의 비중 74%). 단일 품목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1874년 唐木綿이 40%로 1위를 차지했으나, 1880년에는 生金巾이 55%로 1위로 올라서는 등 주력 상품의 교체가 뚜렷했다. 이에 반해서 조선 후기 이래로 일본의 주된 수출품(조선의 수입품)이었던 구리가 여전히 조선으로 유입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비중이 갈수록 낮아졌다(1874년 11%, 1880년 4%).

이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 예를 들면 1876년까지는 일본 외무성 기록을 통해서 조·일 무역 통계에 관한 사료를 새로 발굴하는 일, 그리고 1877년 이후는 대장성이 작성한 조·일 무역 통계와 외무성 기록을 대조하는 일 등 기초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通商彙纂』 등에 흩어져 있는 片鱗의 史料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앞으로 과제로 삼고자 한다. (끝)

【참고문헌】

1. 사료

- 閔建鎬, 『東行日錄』, 부산근대역사관, 2008.
- 李鑣永, 「日槎集略」, 『국역 해행총재 속편』 XI, 민족문화추진회, 1977.
- 李鑣永, 「朝鮮國輸出入半年表」(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3182)
- 일본 國立公文書館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朝鮮國釜山港輸出入半年表自明治十二年七月至同年十二月」(請求番号 公03279100)
- 일본 國立公文書館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別冊朝鮮國輸出入半年表自明治十三年七月至同年十二月」(請求番号 公03279100)
- 일본 國立國會圖書館, 「附錄 朝鮮舊貿易八箇年對照表」(自明治十年至同十七年), 『大日本外國貿易』, 大藏省關稅局(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 일본 外交史料館, 『對韓政策關係雜纂 宮本大丞朝鮮理事始末』(외무성기록 1.1.2.3-11).
- 일본 外交史料館, 『對韓政策關係雜纂 朝鮮事務書』(외무성기록 1.1.2.3-13).
- 『釜山府史原稿』(전 6권), 도서출판 민족문화, 1987.
- 『日本外交文書(한국편 1)』, 태동문화사, 1981.
- 『朝鮮外交事務書』(전 9권), 성진문화사, 1971.

2. 논저

- 고병익, 1965, 「조선해관과 청국해관과의 관계—「메틸」과 「하트」를 중심으로—, 『동아문화』 4,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 김기주, 2004, 「개항기 조선정부의 대일유학정책」, 『한국근대사연구』 29, 한국근대사학회.
- 김동철, 2012, 「1880년 제2차 수신사의 향서기 박상식의 사행일기 『동도일사』」, 『서지학연구』 51, 한국서지학회.
- 김동철, 2013, 「개항장 부산에서 민건호가 경험한 음력과 양력」, 『한일관계사연구』 46, 한일관계사학회.
- 김연지, 2016, 「『통상회관—주한일본영사관보고』 한국편의 체제 검토와 사료적 가치」, 『지방사와 지방문화』 19-1, 역사문화학회.
- 김윤희, 2008, 「1880-1910년 서울 거류 일본 상공업자의 영업실태와 활동」, 『역사교육』 106, 역사교육연구회.
- 민희수, 2012, 「조선 개항장 감리서의 성립 과정(1883~1886)」, 『동북아역사논총』 36, 동북아역사재단.
- 민희수, 2018, 「개항기 감독기관으로서의 조선 감리서의 기원과 특성—동아시아 3국의 세관 제도에 대한 비교를 바탕으로—」, 『한국사연구』 180, 한국사연구회.
- 박기주·김낙년, 2009, 「한국의 장기 무역통계와 무역지수(1877~1963)」, 『경제학연구』 57-3, 한국경제학회.
- 박한민, 2011, 「1878년 두모진 수세를 둘러싼 조일 양국의 인식과 대응」, 『한일관계사

- 연구』 39, 한일관계사학회.
- 박한민, 2019, 「丙子擾錄」을 통해 본 조일수호조규 체결, 『한일관계사연구』 63, 한일관계사학회.
- 박한민, 2019, 「1883년 조일통상장정 체결과 각국의 대응」, 『역사와 경계』 111, 부산경남사학회.
- 손승철, 1994, 「1872년 일본의 왜관점령과 조선친략」, 『군사』 2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연갑수, 2008, 『고종대 정치변동 연구』, 일지사.
- 윤광운, 김재승, 2006, 「부산해관(1883~1905)에 관한 무역사적 연구」, 『무역학회지』 31-1, 한국무역학회.
- 윤광운, 김재승, 2007, 『근대조선해관연구』, 부경대학교 출판부.
- 이영학, 2016, 「1880년대 조선정부의 농업정책」, 『한국학연구』 4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이효정, 2015, 「수신사 및 조사시찰단 기록의 범주와 유형」, 『동북아문화연구』 45, 동북아시아문화학회.
- 이효정, 2018, 「19세기 말 메이지 일본 신문에 드러난 조선 사절단의 모습」, 『동북아문화연구』 57, 동북아시아문화학회.
- 이효정, 2018, 「근대 전환기 조선인의 메이지(明治) 일본 견문—민건호의 『동행일록』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84, 국어국문학회.
- 이효정, 2019, 「1881년 조사시찰단 수행원 강진형의 『일동록』 연구」, 『한국민족문화』 7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정성일, 1991, 「조선후기 대일무역의 전개과정과 그 성격에 관한 연구—1790년대~1870년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성일, 1992, 「개항 직전 대일교역품의 특징(1874-1875)」, 『수춘 박영석교수 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상, 1087-1114쪽
- 정성일, 2012, 「조선시대 한일 경제교류—米綿과 蔘銀의 교환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한국과 일본—같은 점과 다른 점, 교류와 갈등의 역사—』 (한일관계사학회·한일문화교류기금 편, 경인문화사)
- 정성일, 2013, 「1872-75년 조일 무역 통계」, 『한일관계사연구』 46, 한일관계사학회.
- 정성일, 2020, 「조사시찰단의 보고로 본 1880년 조선의 수출입 통계」, 『한일관계사연구』 68, 한일관계사학회.
- 정옥자, 1965, 「신사유람단고」, 『역사학보』 27, 역사학회.
- 차철호·양홍숙, 2012, 「개항기 부산항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관계 형성」, 『한국학연구』 2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최보영, 2017, 「개항기(1880-1906) 부산재주 일본영사의 파견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81, 한국근현대사학회.
- 한철호, 2009, 『한국 근대 개화파와 통치기구 연구』, 선인.
- 한태문, 2011, 「신사유람단 사행록에 반영된 한일문화교류」, 『한국문학논총』 41, 한국문학학회.
- 허경진, 2016, 「수신사에 대한 조선과 일본의 태도 차이」, 『열상고전연구』 53, 열상고전연구회.

- 허동현, 1986, 「1881년 조선 조사(朝士) 일본시찰단에 관한 일연구—“문건사건류”와 《隨聞錄》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52, 한국사연구회.
- 허동현, 1994, 「1881년 조사시찰단의 明治 일본 정치제도 이해—박정양의 내무성 『시찰기』와 『건문사건』 류 등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86, 한국사연구회.
- 허동현, 1997, 「1881년 조사시찰단의 明治日本 사법제도 이해—嚴世永의 《司法省視察記》와 《聞見事件》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84, 진단학회.
- 허동현, 1998, 「1881년 조사시찰단의 明治 일본 사회·풍속관—시찰단의 『문건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01, 한국사연구회.
- 허동현, 2000, 『근대한일관계사연구』, 국학자료원.
- 현명철, 2015, 「1872년 일본 화륜선의 왜관 입항」, 『동북아역사논총』 49, 동북아역사재단.

개항 초기 조일 간 교역 양상과 구포 사건

박한민(고려대)

1. 들어가며
2. 부산항의 무역 규모와 조일 양국 상인의 교역 양상
3. 구포 사건의 발생과 양국의 대응
4. 나가며

1. 들어가며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후부터 1883년 「조일통상장정」을 체결할 때까지 7년 동안은 조선과 일본이 새롭게 개항장과 거류지 선정을 논의하고, 경제 관계를 새롭게 규제할 수 있는 규칙을 협의해 나가는 시기에 해당했다. 기본적으로 선박의 입출항과 관리 등의 기본적인 사항은 1876년 8월 조인희와 미야모토 오카즈(宮本小一)가 후속으로 체결한 「무역규칙」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며, 양자가 공문을 통해 합의한 단서조항으로 ‘수년 간 면세’에 기초하여 교역이 진행되었다. 아직 해관이 설치되어 조일 양국의 교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통계를 작성하던 때가 아니었으므로 교역 규모와 수출입품의 시기별 변동 상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조선시대부터 장기간에 걸쳐 존속했던 왜관이란 공간을 개항장 거류지로 탈바꿈하고¹⁾, 여기에 거주하기 위한 일본인들의 조선 도항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의 조선 내 활동 반경을 설정하고 단속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하나씩 마련되었다.

개항 이후 조선과 일본의 무역은 여러 자료에 나오는 무역통계를 중심으로 교역의 확대 과정과 ‘미면교환체제(米綿交換體制)’의 성립을 다루는 경제사 중심의 연구가 다수 나와 있다.²⁾ 조선 해관의 설치 이전 무역 통계는 수치의 불확실성이 큰 편이라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려운 편인데,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러시아 대장성에 발행한 『韓國誌』, 그리고 주일 영국공사 해리 파크스(Harry S. Parkes)가 롱포드를 통해 입수하고 정리하여 본국에 보고한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다루어 왔다. 최근에는 개항 전후 조일 무역통계를 재검토하면서 교역 양상을 재검토하는 연구도 나오고 있다.³⁾ 한편으로는 1878년 부산 두모진(豆毛鎭)에서 조선정부가 관청을 설치하고 조선 상인들을 대상으로 수세하면서 발생한 조일 간 갈등에 주목하여 1883년 「조일통상장정」을 체결할 때까지 관세 자주권 인식과 수세의 형평성 문제가 어떻게 조일 간에 논의되었는지를 검토해 왔다.⁴⁾ 하지만 부산 지역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이 상언거래를 하면서 충돌

- 1) 아이 사키코, 2010, 「부산항 일본인 거류지의 설치와 형성 - 개항 초기를 중심으로 -」 『도시연구』 3.
- 2) 姜德相, 1962, 「李氏朝鮮開港直後に於ける朝日貿易の展開」 『歴史學研究』 265 ; 彭澤周, 1969, 『明治初期日清韓關係の研究』, 塙書房 ; 村上勝彦, 1975, 「植民地」, 大石嘉一郎 編, 『日本産業革命の研究 : 確立期日本資本主義の再生産構造』, 東京大學出版會 ; 하원호, 1997, 『한국근대경제사연구』, 신서원.
- 3) 정성일, 2014, 「1872-75년 조·일 무역 통계」 『韓日關係史研究』 46 ; _____, 2020, 「조사시찰단의 보고로 본 1880년 조선의 수출입 통계」 『韓日關係史研究』 68.
- 4) 夫貞愛, 1973, 「朝鮮海關의 創設經緯」 『韓國史論』 1 ; 崔泰鎬, 1976, 『開港前期의 韓國關稅制度 - 1880年代를 中心으로 -』, 韓國研究院 ; 김경태, 1994, 『한국근대경제사연구』, 창작과비평사 ; 박한민, 2011, 「1878년 두모진 수세를 둘러싼 조일 양국의 인식과 대응」 『韓日關係史研究』 39 ; 李穗枝, 2016, 『朝鮮의 對日外交戰略 : 日清戰爭前夜 1873-1893』, 法政大學出版局 ; 酒井裕美, 2016, 『開港

이 발생했던 것은 두모진 수세를 정지할 때만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 개항을 통해 부산에 거류하는 일본인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상인들은 상권을 넓히기 위해서 자유로운 왕래와 상업행위 보장했던 ‘한행이정(間行里程)’의 제한 범위를 빈번하게 넘나들면서 조선인들과 거래를 했다. 그러한 가운데 빌려준 금전을 두고 충돌하여 양국민이 크게 피해를 입고 갈등이 고조된 사건이 1881년 구포(龜浦)에서 발생했다.

구포 사건은 조일 간 무역 거래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조일수호조규부록」 제4관에서 설정한 개항장 ‘한행이정’을 위반하고 양산 지역까지 나간 일본인들과 조선인 사이에 금전 대부분 문제로 마찰이 발생했고, 양국민이 충돌하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까지 한 문제였다. 하지만 1878년 9~10월 사이에 발생한 두모진 수세 문제를 둘러싼 조일 양국의 인식과 대응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사건이기도 하다. 관련 자료가 흩어져 있어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쓰시마 출신 한이 센타로(半井泉太郎, 半井桃水)의 부산 체류 활동과 오사카 아사히 신문 특파원 보도를 중심으로 다룬 일본 측 연구와 어윤중이 남긴 『談草』에서 거론된 사건을 소개한 연구, 부산항 거류 일본 무역상들의 기존 거래 방식(貸賣)을 철폐하지 않은 가운데 충돌이 발생했던 사건 가운데 하나로 다룬 연구가 있기는 하다.⁵⁾ 세 편의 연구는 구포 사건을 개관할 수 있는 성과이기는 하다. 하지만 부분적인 자료 소개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 발생의 전후 맥락, 사건을 둘러싼 개항장 내 일본 상인들의 입장차, 조선 지방관들의 인식과 처분까지 다각도로 검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포 사건은 개항 초기 부산 인근 지역에서 조선과 일본인이 금전 대부분 문제로 크게 충돌했던 사건이었다. 또한 ‘한행이정’을 운영하는 초창기에 조선과 일본의 인식과 대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한행이정’ 위반 사례는 이전 연구에서 안변부(安邊府) 사건을 다룬 적이 있기는 하다.⁶⁾ 하지만 이것은 원산항 개항 직후 일본인의 규정 위반과 일본 언론의 보도 양상을 분석한 것이었다. 그보다 앞선 시기에 교역이 활발해져 가던 부산 지역에서는 일본 상인의 ‘한행이정’ 위반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는지를 다루기 위해서는 구포 사건의 전개 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880년 개항한 원산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부산의 경우 개항 이전에도 왜관에 거류하면서 교역을 하던 쓰시마 상인들의 비중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조선 상인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에 이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는지도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다. 왜관 운영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조선 상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던 존재는 쓰시마 출신 일본인들이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구포 사건은 개항 초 조일 양국 상인들의 교역 양상과 ‘한행이정’ 운영에 대한 인식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지역사례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부산항 거류 일본 상인들이 세운 상법회의소(商法會議所)에서는 양국 상인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는지도 살펴보려 한다. 이 작업을 통해 개항 초기 부산 지역에서 조일 양국 상인들의 교역 양상을 확인하고,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역민과 관리들은 각각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였는지를 규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개항 초기 부산항의 교역 규모와 거래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대리공사 하나부사 요

『期朝鮮の戰略的外交 1882-1884』, 大阪大學出版會 ; 박한민, 2019, 「1883년 조일통상장정의 체결과 각국의 대응」 『역사와 경계』 111.

5) 上垣外憲一, 1996, 『ある明治人の朝鮮觀 : 半井桃水と日朝關係』, 筑摩書房, 126~139쪽 ; 相沙希子, 2007, 「부산항 일본인 거류지 연구(1876~1883)」,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1~45쪽 ; 김기엽, 2018, 「1881년 어윤중이 쓴 「담초(談草)」의 특징과 대담에 나타난 한·중·일의 정세」 『정신문화연구』 41-2, 322~324쪽.

6) 박한민, 2014, 「개항장 ‘間行里程’ 운영에 나타난 조일 양국의 인식과 대응」 『韓國史研究』 165.

시모토(花房義質)가 1878년과 1879년에 조선으로 파견되면서 생산했던 문서군을 활용한다. 『明治十一年代理公使渡韓始末』과 『明治十二年代理公使朝鮮事務始末』에는 부산 관리관청(管理官廳)에서 무역 동향을 조사한 통계 보고서, 그리고 양국 상인들의 거래 양상을 채록한 문서, 무역 문제와 관련하여 상인들이 관청에 바친 청원서 등이 들어 있다.⁷⁾ 구포 사건 발생과 처리에 대한 조선 지방관의 조사와 처분 내역은 『統制營膳錄』에 상세히 실려 있다.⁸⁾ 1881년 조사 시찰단으로 파견되었던 어윤중(魚允中)이 시찰 업무를 마친 후 일본에 체류하면서 청일 외교관들과 만나서 문답한 기록을 남긴 『談草』에서도 구포 사건이 등장한다.⁹⁾ 청국공사관의 하여장(何如璋)과 황준헌(黃遵憲), 일본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와 면담하는 가운데 사건에 대해 인물별로 가지고 있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포 사건의 전말을 복원하는 데에는 당시 일본에서 발행된 여러 신문 기사도 폭넓게 활용하였다. 특히 『東京橫濱毎日新聞』은 연재 기사까지 내면서 사건 경과를 상세히 보도하였다.¹⁰⁾ 부산에 거주한 일본 상인들의 동향에 대해서는 통신원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구포 사건 발생 당시 부산 현지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다만 일본인 중심으로 사건을 보도하는 편향성이 강하므로, 조선 측 기록과 교차시켜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항 이전부터 부산항 거류지가 확장되어 나간 연혁은 『釜山府史原稿』에서 방대한 1차 자료를 인용하면서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구포 사건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지는 않다.¹¹⁾ 당시 부산영사였던 곤도 마스키(近藤真鋤)가 거류민에게 내린 주의사항만 단편적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이 기사만으로는 선후관계와 발표한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다. 구포 사건의 전반적인 경과를 알아야 부산영사가 주의하라고 지시를 내리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1881년 구포 지역에서 발생한 조일 양국민의 충돌 사건을 규명해 보려 한다. 본문에서의 일자는 모두 양력을 기준으로 환산하고 통일하여 서술한다.

2. 부산항의 무역 규모와 조일 양국 상인의 교역 양상

1) 부산항 거류 일본인의 증가와 조일 무역

재조일본인 관련 최근 연구에서는 외무성 소장 영사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인구통계를 재집계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1877년에는 273명, 1878년에는 410명, 1879년에는 922명이었다.¹²⁾ 새로 조선에 건너와서 상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이들도 20명 정도가 있었지만, 이들을

7) 1878년 한 해의 부산항 수출입무역통계는 오키다이라 다케히코가 그의 책에서 표로 정리하여 소개한 적이 있다. 하지만 강덕상을 비롯한 선행 경제사 연구에서 그리 활용되지 않았던 자료이기도 하다. 奥平武彦, 1969, 「朝鮮の條約港と居留地」, 『朝鮮開國交渉始末』, 刀江書院.

8) 『統制營膳錄』(송수경 번역, 2015, 『국역 각사등록 52 : 경상도편 1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9) 『談草』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이다. 최근 연세대학교에서 수행한 수신사 기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에서 원문 입력과 번역 작업이 이루어졌다. 본 발표문에서는 한중연 소장 원문 기록을 열람하였으며, 본문을 서술할 때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부분도 아울러 활용하였다. 수신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연구책임자 허경진 교수님께는 감사드린다. 번역문의 경우 맥락상 수정이 필요한 경우 손질한 부분이 있음을 밝혀둔다.

10) 1881년 9월 7일 2면에 처음으로 사건 발생을 보도한 이후, 「朝鮮釜山浦暴動の顛末」이라는 제목으로 9월 20, 21, 22, 24, 27일에 잇달아 후속 보도를 냈다.

11) 都甲玄郷 編, 1937, 『釜山府史原稿』 卷6, 釜山府(1986년 民族文化 影印).

12) 1879년 7월 부산항 거류 일본인수는 당시 언론에서 대략 700명 정도로 소개되었다. 부산항 거류 일본상인도 이보다 세 달 전에 자신들의 인구가 700명에 이르렀으며, 이 가운데 노약자와 부녀자 40%를 제외하면 60%인 420명 정도가 실제로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수라고 보았다. 「前田管理官口達(前號の続き)」 『東京日日新聞』 1879년 7월 16일 ; 「朝鮮國貿易ノ儀ニ付内稟書」 『明治十二年

제외하고 가게를 내어 영업하는 자들은 90% 정도가 쓰시마(對州) 출신이었다고 한다.¹³⁾ 1880년 들어서는 부산 거주 일본인 인구가 천 명 이상 증가하면서 2,066명이 되었다.¹⁴⁾ 해마다 대략 2배씩 개항장 거주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인구 증가에는 일본정부가 조선으로 도항하는 일본인에게 발급하는 여권의 수수료를 50센(錢)으로 인하한 것도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¹⁵⁾ 거류민수가 증가하면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교역도 점차 활발해졌다.

1878년 9월 6일 조선정부에서는 조선 상인을 대상으로 한 징세를 결정했고, 지시를 받은 동래부에서는 이달 28일부터 두모진에 관청을 설치하고 징세를 개시했다. 여기에 반발한 일본 상인들은 10월 6일부터 관리관(管理官)에게 수세 정지를 요구하고, 상법회의소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논의했다. 3일 후에는 관찰관(辦察官) 처소에 몰려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10일에도 200여 명 이상이 동래부로 몰려가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조선인들과 큰 충돌이 발생하였다.¹⁶⁾ 두모진 수세 문제로 충돌이 발생할 무렵 양국인의 거래 양상이 어떠하였는지는 다음 기록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수세하려는 거동이 있음에 따라 부산 무역은 일시적으로 완전히 폐절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점차 다시 단서를 열어서 쇠퇴 중이면서도 상로(商路)는 우선 계속 열어 두어 한인으로 거류지를 출입하는 자가 오히려 날마다 수백 명이나 있었다. 다만 당목면(唐木綿)과 우피(牛皮), 기타 세금이 있는 물품(有稅品)은 매매가 적었다. 저들 다수가 와서 값을 주고 판 것은 쌀, 대두의 두 가지 종류로, 그 수량은 되(斗) 내외에서 가마(石) 단위까지 넘나들었다. 노년과 장년, 유년을 가리지 않고 모두 이것을 등에 짊어지고 왔다. 그렇지만 나날이 이어지면서 200석을 넘게 가져오는 자도 있었다고 한다. 우리 상인은 각자 점포 밖에다 발을 치고 가져온 바를 모아서 가격을 흥정하는 가운데 몹시도 북적북적했다. 다수를 운반해 온 자들은 저들 관리의 기휘(忌諱)를 저촉한 것을 두려워하면서 이것을 야상(夜商)으로 하여 몰래 해로(海路)를 이용했다.¹⁷⁾

조선인들이 쌀과 콩을 중심으로 일본인들과 적지 않게 밀무역을 감행하고 있었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다. 일본인 가게 앞에서 거래로 ‘북적북적’한 모양이었고, 심지어 야간에 배를 이용해서 몰래 교역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 어떻게든 교역을 해서 이익을 보려는 욕망이 양국 상인들에게 큰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밀무역을 하다 순졸(巡卒)에게 적발될 경우 술값을 조금 쥐어주면서 사건을 무마하는 경우도 있었다.¹⁸⁾ 이 당시 백미 1가마는 3엔에서 3엔 50전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었다고 한다.¹⁹⁾ 이 기록 안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거래되던 백미 1되 가격도 실려 있다. 대구 근방은 8문, 양산 근처는 11문이었다. 지역별로

代理公使朝鮮事務始末』卷17(이하 『事務始末』).

13) 「朝鮮國貿易ノ儀ニ付内稟書」 위의 자료.

14) 李東勳, 2019, 『在朝日本人社会の形成 : 植民地空間の変容と意識構造』, 明石書店, 51쪽. 덧붙여 1880년 6월 1일 기준으로 거류지 인원수는 1,800명에 300호 정도였는데, 본국으로부터의 은행송금으로 생활을 하는 자가 80% 이상이었다고 한다(「朝鮮釜山港通報 6月1日發」 『東京日日新聞』 1880년 6월 21일).

15) 아이 사키코, 2010, 앞의 논문, 28~29쪽.

16) 김경태, 1994, 앞의 책, 278~281쪽 ; 박한민, 2011, 앞의 논문, 380쪽.

17) 「釜山形勢見聞書(一)」 『明治十一年代理公使渡韓始末』(이하 『渡韓始末』). 이 자료에는 ‘釜山形勢見聞書’란 제목의 문서가 두 개 첨부되어 있는데 편철된 순서에 따라 (一)과 (二)로 구분하였다.

18) 「釜山形勢見聞書(二)」 『渡韓始末』.

19) 「釜山形勢見聞書(一)」 『渡韓始末』.

쌀의 거래에도 시세 차이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활발하게 미곡을 거래하는 가운데 이해 12월에 일본인들은 쓰시마로 운반할 하적(積荷) 분량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한다. 이해 상반기 미곡의 일본 수출량은 5,152석으로 20,408엔 35센(전체 수출액의 23.8%)이었고, 하반기에는 6,522석 7두로 31,519엔 88센(전체 수출액의 29.9%)이었다. 거래총액으로 보면 11,111엔 53센 증가했다. 상반기 대두의 일본 수출량은 2,749석 8두로 9,233엔 29센(전체 수출액의 10.7%)이었고, 하반기 대두 수출은 3,489석 8두로 11,205엔 16센(전체 수출액의 10.6%)이었다.²⁰⁾ 대두 수출은 상반기보다 1,971엔 87센 늘어났다. 관 차원에서 파악한 교역 수치를 통해서도 두모진에서 수세 문제로 마찰을 빚으면서도 곡물의 거래량과 금액은 증가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금(砂金)의 경우 일본으로 반출해 간 양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상인들이 부산 관리관청(管理官廳)으로 제출한 '적하보단(積荷報單)'에 따르면 '9貫 548匁'를 수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관 차원에서 상인들의 보고에는 "소략하고 탈루하는 폐단이 몹시 많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 조사해 보면 10명 중 7~8명은 최소가 '50~60貫'이 이를 것으로 보는 자도 많았다. 사금의 경우 분량이 적고 휴대하기 쉽기 때문에 행낭(行李)에다가 숨겨서 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관리관은 일본인들의 사금 반출량을 대략 50관으로 추산해 보더라도, 여기서 14만 엔의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²¹⁾ 이러한 요소까지 무역총액에 합산할 경우 1878년 한 해 동안 "수출이 수입을 초과한 것이 68,192엔 82전"으로 판단했다. 조선에서 일본으로 빠져나간 쪽의 거래 규모가 더 컸던 것이다. 1878년 관리관청에서 조사하여 작성한 수출입표의 거래액에서 상반기와 하반기 차액을 비교해 보더라도, 사건이 발생한 하반기의 거래액이 58,490엔으로 더 큰 편이었다.²²⁾ 두모진 수세를 통해서 일본 상인들이 본국 정부로 상업이 두절되다시피했다고 한 호소는 실제 교역상황과 교차시켜 보더라도 자신들의 이익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을 제거하려고 교역상의 피해를 과장했을 가능성이 높았다.²³⁾ 당시 일본 신문에서도 부산항 거류 자국 상인들의 행동에는 문제가 있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애초에 강소(強訴)와 강청(強請), 경거폭동(輕舉暴動)은 이것을 출신 고향에서 부득이하게 기획하고 시행하더라도 오히려 사회와 법률(社會法律)이 동시에 용납하지 않는다. 하물며 이것을 외국에서 기도하고 시행하여 본국 정부의 면목을 더럽힌 데 있어서라? 이것은 어찌 그 개명(開明)함에서 스스로 조선보다 우위에서 한국 인민을 교화의 영역으로 유도할 의무를 덕의상으로 부담하는 일본 국민의 거동인가? 우리들은 일찍이 조선 분란의 소식을 들었다. 한국 조정이 상리(常理)에 어둡고 시세에 통달하지 못하여 가혹한 세금을 무역품에 부과함으로써 스스로 그 나라의 손해를 초래한 완고한 견해에 대해서는 오히려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다. 도리어 일본 상인이 강소와 강청을 기획하여 경거폭동을 한 일은 마땅함을 잃은 행위여서 놀랍다. 지금 담판은 다행히 평화롭게 국면 종결을 하기 위해서 곤란을 양국의 교제상으로 야기하지 않도록 그친 것은 실로 우리나라의 행운이라고 해야 한다.²⁴⁾ (밑줄은 인용자)

20) 「朝鮮國釜山港輸出物品表」 『渡韓始末』.

21) 「釜山商況」 『渡韓始末』.

22) 박한민, 2011, 「1878년 두모진 수세를 둘러싼 조일 양국의 인식과 대응」, 『韓日關係史研究』 39, 395쪽.

23) 奥平武彦, 1969, 앞의 책, 44쪽.

24) 「朝鮮紛紜ノ結局」 『東京日日新聞』 1879년 1월 15일.

마지막 부분에서 이 사설은 조선 정부를 향해서 통상의 중요성을 깨닫고 “쇄양(鎖攘)의 국가방책(國策)을 장래에 시행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일본 거류민에게는 “통절하게 스스로 반성하여 인내와 자중을 지키고, 다시 경거폭동의 비평을 초래하여 우리 일본 제국의 면목을 외국에게 더럽히지 말라고 충고”했다. 상인들의 경거망동한 행위는 조선보다 개명함을 보여주어야 할 일본의 위신에 손상을 가할 수 있으니 처신에 주의해 달라는 요구였다.

1879년 들어 새로 부임한 마에다 겐키치(前田獻吉) 부산총영사도 부산 상인들을 대상으로 훈시하면서 양국 간에 원활한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시하였다. 양국이 교역하는 근간은 ‘부국강병(富國強兵)’에 있다고 하면서 인접 국가와의 교제와 친목을 두텁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조선 같은 국가는 아직 ‘미개한 번국(未開の蕃國)’이며, “아직 해외 여러 나라의 경향을 알지 못하므로, 자존(自尊)하거나 혹은 조약을 경시하는 의사가 없다고도 말하기 어렵다”는 단서를 달아 일본과는 내부적인 상황이 다르다고 보았다. 마에다는 교역과 관련하여 일본 상인들이 절대 ‘조포(粗暴)한 거동’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거동 원인을 생각하니, 제반 약속을 조약하게 하거나, 혹은 피차 언어가 통하지 않고 인정이 다른 데에서 발생하는 폐해로 보인다. 따라서 매매할 때 반드시 약속을 엄중하게 하고, 약속을 위반하지 않도록 이야기로 잘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저들 상인이 약속을 위반하는 일이 있을 때는 관리관청에 신고하고 처분을 기다려야 하며, 결단코 스스로 조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업은 피아 신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서서히 개진의 길로 가는데 관계가 있다. 하지만 폭행 등을 감내하고 있는 일로는 개진(開進)할 기약에서 점차 멀어지게 된다. 모두 이 뜻을 잘 알았으면 한다.²⁵⁾

2) 일본상인의 무역 건의서 제출과 금전 대부 문제

1878년 12월 27일 시즈오카현(靜岡縣) 사족 마스다 주세키(増田充績)와 나가사키현(長崎縣) 사족 소시마 와사쿠(惣島和作) 외 일본인 15인은 부산 관리관 야마노시로 스케나가(山之城祐長)에게 무역 문제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였다.²⁶⁾ 마쓰다는 부산에 설치된 제일국립은행(第一國立銀行)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상법회의소의 선거를 통해 의장으로 선출된 자였다.²⁷⁾ 마쓰다를 비롯한 일본 상인들은 정부가 하나부사 대리공사를 파견하여 두모진 수세를 정지하도록 조처해 준 데 대하여 “감읍하고 몹시 기뻐한다”는 심정을 먼저 알렸다. 그러한 다음 조일 무역에서 향후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를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고, 각 조항별로 자신들의 상황 판단과 의견을 개진했다.

- 첫째, 이미 선정 기한을 초과한 새 항구를 속히 개항할 것
- 둘째, 속히 광산을 개설하고 새로운 화폐를 주조하여 통상의 편리를 도모할 것
- 셋째, 동래부 안을 비롯하여 조선의 내지를 자유롭게 통행하도록 할 것
- 넷째, 조선정부에 조회하여 조선인이 일본인에게 빌린 돈을 청산할 방도를 마련해 줄 것

25) 「前田管理官釜山浦赴任の咄し前号の続き」『東京日日新聞』1879년 7월 15일.

26) 「朝鮮國貿易之儀ニ付上陳書」『事務始末』卷17. 문서에는 ‘明治十二年’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본문 안의 ‘당년(當年)’은 모두 1878년 상황을 가리키고 있다. 또한 첨부문서와 1879년 3월 4일에 재차 제출한 청원서 등과의 관계까지 고려하더라도 1878년 연말에 작성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연도 오기(誤記)를 바로잡아 서술하였다.

27) 『東京日日新聞』1878년 11월 28일.

다섯째, 새 항구로 교역품을 운반할 기선의 항로를 개설하고 특별히 보호해 줄 것²⁸⁾

첫 번째는 「조일수호조규」 제5관을 속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교역품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성에 근접한 지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동전 한 종류만 사용하고 있으며, 화폐 유통량이 부족(缺乏)한 조선 내 상황을 거론하면서 새 화폐의 주조를 통해 상인들의 교역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이 사항은 1879년 3월 4일 재차 마스다가 청원서를 제출할 때 ‘제일의 급무’라면서 시급히 처리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 화폐의 경우 먼 길을 운반해 오기에는 무겁고, 운반비용도 허다하게 들어가 상업상으로 손실이 크다는 문제점을 거론하였다. 그리고 ‘한전상장(韓錢相場)’에서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조선인들은 시세를 따져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주 지역에 가서 교역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부산에서는 불경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²⁹⁾ 물론 야마노시로 관리관은 자기의 권한을 넘어서는 청원이지만,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정부에 보고해 두겠다고 회답하였다. 새로운 화폐 주조가 무역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임은 한 달 후 하나부사 대리공사에게 제출한 청원서에서도 다시 등장했다.³⁰⁾ 청원서는 마스다와 다카하시 헤이가쿠(高橋平格)가 연명으로 작성하였는데, 이들이 상법회의소 임원이었던 만큼 부산 지역 일본 상인들의 여론을 반영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새로운 화폐 주조와 유통을 통해 자신들이 경제적 주도권을 장악하고 상권을 확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컸음을 잘 보여준다.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사항에서는 자신들이 교역을 전개할 수 있는 조선 내 활동 범위를 확대해 주고, 새 개항장으로서의 정기 항로 개설과 각별한 보호를 요구했다. 여기서는 공사가 한성에 주재하도록 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네 번째는 조선인들이 기존에 일본인과 금전을 거래하는 관행을 폐단이 많으므로, 이것을 청산하고 앞으로 새 개항장을 개설하면서부터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들은 별지를 통해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전에 일본 상인이 조선인에게 대부한 금액은 8만 엔이었고, 체결 이후에는 17만 엔으로 전체를 합산하면 25만 엔의 규모가 된다는 점을 알렸다. 여기에는 1877년과 1878년의 수출입 총액과 차액이 간단하게 첨부되어 있다.³¹⁾

연도	일본→조선 수출액	조선→일본 수출액	차이
1878년	329,174엔	203,908엔	125,266엔
1879년 (1~11월)	273,327엔	217,385엔	55,942엔

표 19 1878~1879년 조일 무역액

이들은 청원서를 제출하는 시점까지 조선인들에게 대부한 금액의 누적이 한 해 무역의 수출액에 필적할 정도로 적지 않으며, 부채 상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상인에게 자금을 빌려 상업활동을 하는 조선인들의 관행(貸賣)은 “자본이 부족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폐단을 교정”해야 하며 조선정부에 부채를 상환하고 없앨 수 있도록 엄중히 조회해

28) 「朝鮮國貿易之儀ニ付上陳書」 『事務始末』 卷17.
 29) 「朝鮮國貿易通貨之儀ニ付再願書」 『事務始末』 卷17.
 30) 「朝鮮國貿易ノ儀ニ付内稟書」 『事務始末』 卷17.
 31) 「朝鮮國貿易之儀ニ付上陳書」 첨부 제1호·제2호, 위의 자료.

달라고 요청했다. 자금 대역을 통해 상업활동을 하는 관행이 적지 않았는데, 이것을 제때 처리하지 않을 경우, 향후 새롭게 개항장을 개설할 경우 양국민의 교역상 더 큰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었다. 물론 일본 상인들이 조선인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면서 갈등을 빚는 문제는 청원서 제출 이후에도 끊이지 않았다. 구포에서 발생한 조일 양국민의 마찰도 결국 청원서에서 거론한 금전 대여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3) 부산 상법회의소의 청원서 제출과 교역 현황

1880년 5월 29일 부산 상법회의소에서는 양국의 교역이 조선 관리의 단속으로 인하여 거래가 경색되고 있다는 국면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원서를 영사 곤도 마스키(近藤真鋤)에게 제출하였다. 신문에서는 이 청원서를 입수하여 전문을 공개하였는데, 여기에 전년도(1880) 수출입 통계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일본에서 조선으로 수출한 총액은 566,953엔이고, 조선에서 일본으로 수출한 총액은 677,058엔이었다.³²⁾ 이 수치는 호 타쿠슈(彭澤周)가 정리하여 제시한 1879년 조일 무역통계, 그리고 강덕상(姜德相)의 연구에 기초하고 다른 통계자료까지 추가 보완하여 정리한 무라카미 가쓰히코(村上勝彦)의 수치와도 거의 일치한다.³³⁾ 당대 언론에서도 조일 간 무역총액을 비교적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대(對) 조선 수출액 가운데 당목면과 한랭사 같은 면포류가 80%, 조선의 대 일본 수출액 가운데 쌀과 콩 그리고 우피가 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기서 가장 비중이 큰 조선의 수출품은 기존 연구를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듯이 쌀이었는데, 이것을 두고 “한국 지역의 수출은 쌀이 대중(大宗)”이라고 소개하였다.³⁴⁾

상법회의소에서 제출한 청원서(上願書)에서는 하나부사가 전년도에 조선 정부와 교섭하는 가운데 미곡수출 금지는 양국의 통상에 곤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점을 거론하였다. 그러면서 현재 조선 관리의 단속으로 인하여 조선인 물주가 겁박을 당하거나 거래액의 절반 정도를 빼앗기는 사태가 속출하면서 미곡 거래가 경색되다시피 한 국면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저들 정부에서 미곡은 수출품 가운데 하나의 물건임을 공인하였고, 국가에서 금지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까지 강변하였다.³⁵⁾ 미곡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래품목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이다. 물론 이들의 주장은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와 통상문제를 교섭하는 가운데, 조선 내 상황과 각국의 사례를 들어 미곡의 해외수출을 엄히 금지하려 했던 2차 수신사 김홍집의 발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³⁶⁾ 부산 내에서 자신들의 교역 이익을 위해서 미곡 수출을 마치 조선정부에서 공인했던 것처럼 아전인수로 해석하면서 사태를 해결해 달라고 압력을 가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1881년에도 곡물 수출을 조선 관리가 지역으로 나가 압류하거나 단속하는 상황은 계속 발생했다. 부산영사 곤도 마스키는 대구 관리가 양산(梁山) 지역의 구포(九浦), 김해(金海) 등으로 출장을 나와 곡물 거래와 운반하려 하던 조선인들을 단속하면서 교역이 경색되고 있다는

32) 「朝鮮釜山港通報 6月1日發」 『東京日日新聞』 1880년 6월 21일.

33) 彭澤周, 1969, 『明治初期日清韓關係の研究』, 塙書房, 283쪽 第2表 1877-82年日韓貿易統計表; 村上勝彦, 1975, 「植民地」, 大石嘉一郎 編, 『日本産業革命の研究: 確立期日本資本主義の再生産構造』, 東京大學出版會, 233쪽 第1表 日朝貿易額およびその比重. 무라카미의 통계는 1천 엔 단위 기준으로 줄여서 표기하는 가운데 수치상 반올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4) 「朝鮮釜山港通報 6月1日發」 『東京日日新聞』 1880년 6월 21일.

35) 「朝鮮釜山港通報 6月1日發」 『東京日日新聞』 1880년 6월 21일.

36) 박한민, 2019, 앞의 논문, 254~256쪽.

첩보를 입수하였다. 사실 여부를 동래부사 김선근(金善根)에게 문의하면서 폐단을 일으킨 것이 사실이라면 관련자를 처벌하여 법이 바르게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³⁷⁾ 상인들의 교역과 관련하여 조일 양국의 관리에게 거론되던 지역 가운데 한 군데가 양산군 구포였음을 공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동래부사는 매해 식량이 궁핍해지는 철이 되면 각 고을에서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곡물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상례가 있다고 했다. 대구에서 파견하여 각지를 돌아다닌다는 관리 건은 탐문하여 알려주겠다고 회답했다.³⁸⁾ 곤도는 조선 각 지역에서 곡물을 방지하는 명령을 발동하면 곧 곡물의 수출 금지와 동일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조일수호조규」 제9관과 미야모토 이사관의 공문의 취지를 거론하면서 양국 상인들의 교역에 방해가 되는 폐단은 제거(革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덧붙여 여전히 아전들과 수하들이 구포와 김해 지역에서 곡물상을 억류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³⁹⁾ 곤도는 곡물 수송을 금지한 조선 관리의 처분은 상로(商路)를 막은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이러한 폐단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김선근은 대구 지역에서 “세미(稅米)의 농간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과연 관리를 보낸 거동”이 있었음을 시인하였다. 이들로 인하여 상업 거래에 지장이 초래된 면이 있었으므로, 파견지역에서 철수하고 돌아가도록 지시했음을 전하였다.⁴⁰⁾ 6월 9일 곤도는 김선근에게 파견 관리들이 철수하도록 힘써 처리해 준 데에 감사하면서도, 양국이 체결한 조규(條規)의 취지를 중시하겠다는 의사를 회신에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는 아쉬움을 표했다.⁴¹⁾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구포 지역에서 양국인들이 금전 거래를 하는 가운데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3. 구포 사건의 발생과 양국의 대응

1) 구포에서의 조일 간 충돌과 동래부 소요 발생

양산군 구포는 일본인 거류지에서 16km(일본 거리로 4리, 조선 거리로 40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다.⁴²⁾ 1876년 8월 「조일수호조규부록」에서 ‘한행이정’을 설정한 조선 거리 10리(4km)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일본인이 행상을 나갈 수 있는 지역으로 허락된 지역은 결코 아니었다. 이 점은 사건 발생 후 일본 측 신문 보도에서도 “애초부터 일본인의 한행이정 바깥”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⁴³⁾

사건의 발단은 8월 18일 쓰시마 출신의 무역상 가메타니 미치지로(亀谷道二郎)와 중간 관리자(手代) 호리타 추타로(堀田忠太郎), 중매상 쓰루 사다스케(津留定助), 우메노 도쿠지(梅野徳治), 스에나가 슈이치(末永秀一)가 ‘한행이정’을 어기고 바깥으로 나간 데서 기인했다. 이들은 구포까지 나가서 조선인과 빌려준 금전을 갚으라고 채근하던 중 말싸움이 벌어졌다. 금전 채무를 진 자는 김치옥(金致玉)이었다고 한다.⁴⁴⁾ 조선 측 기록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본 마을에

37) 「大丘官吏輸穀差留候義ニ付東萊府使ト照會ノ始末上申」(이하 始末上申) 別紙甲號, 『通商彙編 : 明治14年 釜山港之部』(『通商彙纂』 第1卷, 大學書院, 145쪽).

38) 「始末上申」 別紙乙號, 위의 자료(같은 책, 145쪽).

39) 「始末上申」 別紙丙號, 위의 자료(같은 책, 145~146쪽).

40) 「始末上申」 別紙庚號, 위의 자료(같은 책, 147쪽).

41) 「始末上申」 別紙辛號, 위의 자료(같은 책, 147쪽).

42) 『大阪日報』 1881년 9월 4일 ; 『統制營啓錄』 高宗 18年 閏7月 15日, “自倭館十里外, 無得出入, 已有新定條規, 而稱以推債, 潛越於四十里者, 究厥情跡, 已是乖當”

43) 『東京橫濱毎日新聞』 1881년 9월 20일.

사는 김문치(金文致)·노인업(盧仁業)·정원서(鄭元瑞) 등 3인에게 받을 빚이 있다”고 발언했다고 한다.⁴⁵⁾ 채무자로 ‘김치옥’과 ‘김문치’로 양쪽 기록에서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눈에 띈다. 조선 측의 추후 조사를 통해 양산군수가 인명을 잘못 보고한 사실이 확인할 수 있다.⁴⁶⁾ 기사 보도대로 ‘김치옥’이 정확한 이름이었다.⁴⁷⁾ 일본인들은 조선인에게 돈을 빌려주려 사건 발생 전에도 구포 지역까지 종종 나간 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금전 문제로 언쟁을 벌이는 가운데, 조선인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한 언론에서는 쓰시마인이 평소에 한인들을 개나 고양이처럼 대하려 하면서 때리는 안 좋은 습관(惡習)이 있었는데, 그 습관대로 대우하려 한 데서 기인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⁴⁸⁾ 이때 주변에 있던 조선인들 200~300명이 몰려들어 이들을 둘러싸고 구타했다. 조선 측 기록에 따르면 일본인을 가로막으려다 상해를 입은 조선인이 세 명이었고, 그 광경을 목격한 각처에서 온 마상(麻商)들이 일제히 일본인 구타에 가담했다고 한다.⁴⁹⁾ 당시 양국인이 충돌하게 된 경과는 사건 발생 이후 동래부사가 교리(校吏)들을 시켜 탐문한 내용이 상세한 편이다. 일본 언론에서는 나오지 않는 양국인의 충돌 정황이 세부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다.

왜인 4명이 구포 사람 김치옥·노인업·정원서 등에게 추심할 빚이 있다고 하면서 관소의 뒷산 길을 통해 곧장 구포로 갔습니다. 왜인이 처음에 사람이 에워싸 몹시 피곤하다는 이유로 옆에서 보고 있던 안두칠(安斗七)에게 공연히 시비를 걸다가 먼저 수통(水桶)을 던지고 이어서 총대로 두들겨 패자, 그의 뒤통수가 파열되어 피가 왼쪽 겨드랑이로 흘러내리고 상흔(傷痕)이 청흑색으로 변하였는가 하면 심지어 혼절하여 부축해 돌아왔습니다. 그 왜인 등이 이어서 김치옥의 집으로 가서 당사자를 만나지 못하자, 그의 어린 아우를 잡아가려고 하니 구포 사람 안성백(安性白)·손흥조(孫興祚)가 옆에서 뜯어말렸습니다. 그때 각처에서 온 마상(麻商)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왜인을 쫓아내려고 돌을 던지기까지 하였는데, 왜인 가메타니 주지로(龜谷忠次郎)·우메노 도쿠지(梅野德治)·스에나가 슈이치(末永秀一) 등이 모두 상처를 입고 곧바로 서로 부축하며 관소로 돌아가고 마상들도 각자 뿔뿔이 흩어져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안성백·손흥조 두 사람은 겁을 먹고 멀리 도망가서 붙잡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왜인을 설득하여 관소로 돌려보냈습니다. 왜인 3명의 상처를 살펴보니, 가메타니 주지로는 왼쪽 뺨과 오른쪽 뺨 세 곳이 찢어져 상흔이 조금 중하였습니다. 우메노 도쿠지는 왼쪽 귀 위에 조금 상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스에나가 슈이치는 오른쪽 볼이 높이 부어올랐는데, 모두 가벼웠습니다.⁵⁰⁾

조선 측 보고에서 거론하는 일본인들의 부상 정도는 일본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는 상이했다. 신문에서는 일본인 가운데 호리타와 우메노 두 명이 ‘반죽음 상태(半死半生)’가 되었는데, 간신히 이들을 부축하여 저녁 9시 무렵 거류지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자국민의 부

44) 『東京橫濱毎日新聞』 1881년 9월 20일.

45) 『統制營啓錄』 高宗 18年 閏7月 15日, 양산군수(梁山郡守) 조만식(趙晩植) 치보.

46) 『統制營啓錄』 高宗 18年 閏7月 15日.

47) 처음에 빚을 진 조선인 이름을 잘못 기재한 책임을 물어 경상좌수사는 “동래·부산진의 차지감색(次知監色)과 양산군의 수리(首吏)·수향(首鄕)을 잡아다 곤장을 치고 징계했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48) 「朝鮮釜山浦の變動」 『東京日日新聞』 1881년 9월 6일. 쓰시마인들이 부산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권세(權勢)’를 휘두르는 모습이 있었다는 점은 다른 신문에서도 거론하였다(『東京橫濱毎日新聞』 1881년 11월 25일).

49) 『統制營啓錄』 高宗 18年 閏7月 15日, 양산군수 조만식 치보.

50) 『統制營啓錄』 高宗 18年 閏7月 15日, 동래부사 김선근 치보.

상 소식을 들은 거류지 내 쓰시마 출신 일본인들은 교야쿠샤(協約社)를 중심으로 200여 명이 모여들어 복수하려고 창검 등을 휴대하고 세력을 규합하여 구포로 출발했다.⁵¹⁾ 이 소식을 접한 영사관에서는 오카 효이치(岡兵一) 3등 경부(警部)와 순사 5명을 이들에게 보내 행동을 저지하려 했으나 거류민은 통제를 따르지 않았다.⁵²⁾ 역학 유광표는 이날 “순사왜(巡查倭) 2명과 장사꾼 왜인 2백 30명 등이 총칼과 죽창(竹槍)을 들고 구덕산(九德山) 길을 통해 구포로 직행”하였다고 부산첨사 임형준(任衡準)에게 보고했다.⁵³⁾

이들은 8월 19일 오전 2시 구포 근처에 도착했다. 구포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은 일본인들이 몰려옴에 따라 소란스러워졌고, 난을 피하려고 집을 비운 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⁵⁴⁾ 거류민을 뒤쫓아간 오카 경부는 구포의 이임(里任, 일본 측 기사에서는 ‘村吏 李君’이었다고 기재)과 만나 구타를 한 범인을 색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선 측에서는 소통사(小通事)를 동원하여 구타한 자를 수색하여 조선인 두 명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민들은 현장에서 도주하여 종적을 감추었다고 답했다. 일단 두 명을 확인하였으므로, 오카 경부는 몰려온 거류민들이 돌아가도록 명했다. 동래부에서도 군관 정사인(鄭士仁)을 비롯하여 네 명의 관리를 구포로 파견하였고, 오카와 만나 상황을 들은 다음 구포 이임을 동래부로 압송했다. 현지에서 상황을 수습하고 돌아가려던 차에 오카는 영가대(永嘉臺)에 모여 있던 또 다른 일본인 무리와 조우했다. 쓰시마 출신의 하나다 마고베(花田孫兵衛), 슈고 데쓰지로(修行鐵次郎) 등이 100여 명이였다.⁵⁵⁾ 구포로 먼저 갔던 일본인들도 돌아갔으므로, 이들 역시 지시에 따라 거류지로 복귀하라고 지시했다.⁵⁶⁾

거류지 내 일본인들의 소란스러운 상황은 이날 밤까지 진정되지 않았다. 40~50명 정도가 부산의 수영(水營) 앞으로 몰려가 칼을 뽑아들고 거리를 다니기도 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심지어 길거리에 알몸으로 드러누운 자도 있었다. 부산영사관에서는 순사 다나카 쇼조(田中省三)와 나가무라 후사지로(長村房次郎)에게 엄명을 내려 소란을 피우는 이들을 제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무리를 타일러 다음날 새벽 1시 반에 해산시켰는데 절반은 집으로, 나머지 절반은 교야쿠샤로 돌아갔다.⁵⁷⁾ 문제는 난동을 피우는 와중에 시노다 도라키치(篠田寅吉)란 일본인이 휘두른 칼에 크게 다친 조선인이 나왔다는 데 있었다. 이자는 “구포의 원망을 부산서 풀었다”며 기뻐했다고 한다. 조선인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관찰관이 통보해 옴에 따라 이번에는 곤도 영사가 동래부로 출장을 나가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 거류민을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훈시했다.

근래 거류지 내에 불온한 이야기가 있다. 원래 당 항구는 양국이 화친하고 무역을 위해서 개방한 장소이다. 그러므로 만일 부적절한 일이 있다면 교제상으로도 관계가 있고, 용이하지 않은 일이므로 어긋남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취지로 유달(諭達)함.⁵⁸⁾

곤도는 거류민에게 신망이 있던 아비루 고스케(阿比留護助)를 활용하여 무리를 타이르려 했

51) 『東京横濱毎日新聞』 1881년 9월 20일.

52) 『東京横濱毎日新聞』 1881년 9월 7일.

53) 『統制營啓録』 高宗 18年 閏7月 15日.

54) 「朝鮮釜山浦の變動」 『東京日日新聞』 1881년 9월 6일.

55) 역학(譯學)의 보고에 따르면 영가대에 머물고 있던 일본인은 순사 2명과 상인 80명이었다고 한다(『統制營啓録』 高宗 18年 閏7月 15日).

56) 「朝鮮釜山浦暴動の顛末(前號の續)」 『東京横濱毎日新聞』 1881년 9월 21일.

57) 「朝鮮釜山浦暴動の顛末(前號の續き)」 『東京横濱毎日新聞』 1881년 9월 22일.

58) 「朝鮮釜山浦の變動」 『東京朝日新聞』 1881년 9월 6일 ; 『朝野新聞』 1881년 9월 7일.

으나 이들이 쉽게 응하지 않았다. 이러한 와중에 동지를 규합하면서 거동을 획책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젊은이들 가운데 중책을 맡은 자가 한이 소타로(半井宗太郎)⁵⁹⁾, 무라카미 에이지로(村上栄次郎), 후지자키 마쓰사부로(藤崎益三郎) 등이었다고 한다. 곤도는 오카 경부에게 무리를 제지하고 통제에 따르지 않는 자는 포박하고 구속하도록 지시했다.⁶⁰⁾ 오카는 순사들을 데리고 대암(大岩) 근처까지 나가 후발대를 기다리는 인원 가운데 두 명을 붙잡았다. 나머지는 무기를 버리고 도주했다. 아비루는 영사에게 거류지회 의원들을 관리관청으로 불러 설득하도록 건의했다. 곤도는 의원들을 소집하여 연설을 하였는데, 이 자리에는 슈고 데쓰지로(修行鐵次郎) 외 20여 명의 인원도 와 있었다. 연설이 끝나기 전에 경부와 순사가 하나다와 슈고 등을 연행해 가서 조사를 벌였지만, 죄가 없다는 취지로 이날 밤에 바로 석방했다. 경찰이 난동을 일으킨 자들을 붙잡아 간다는 소식을 접한 한이 센타로 외 두 명의 선동자들은 20일 밤 11시 반 무렵에 “어젯밤 거동은 모두 우리들의 선동 교사로 일어났다”고 시인하면서 경찰서로 자수했다.⁶¹⁾

8월 21일에는 상법회의소에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무역상 60명이 모여 임시회의를 열었다.⁶²⁾ 여기서 구포 사건은 관청의 처분에 맡기며, 거류민들은 동요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한편으로 충고위원(忠告委員) 다섯 명을 선발하고 소란을 일으킨 구심점이었던 교야쿠샤로 파견하여 대표에게 진정시킬 것을 요청하도록 했다. 교야쿠샤 회원들은 충고위원의 조언을 수용하지 않았다. 도리어 자신들이 작성한 연판장에 날인하고 행동을 같이 하자고 충고위원들에게 요구해 올 정도였다. 결국 소요 진정을 위한 타협에는 실패했다. 오카 경부도 교야쿠샤를 찾아가 집회 해산을 요청했지만 이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밤 10시에 일행의 해산을 명했다.⁶³⁾

이튿날 상법회의소에서는 대표(會頭) 가와부치(川淵正幹) 명의로 소란을 일으킨 교야쿠샤 일행을 두고 ‘몽매하고 완고하며 어리석은(蒙昧頑愚) 무리’라고 지칭하면서 자신들과 선을 긋는 입장문을 영사관에 제출했다. 교야쿠샤 회원들의 거동이 오래 지속된다면 항구 전체의 양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전망했다. 상법회의소 회원들은 논의를 통해 “성법을 준수함으로써 안녕을 보호하고, 피아 교제상 추호도 틈이 벌어지고 신뢰를 잃는 감이 없도록 하기로 맹세”한 결의를 전달하면서 영사관에서 문제를 잘 해결하여 평안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⁶⁴⁾ 쓰시마 출신의 상인들과 무역 문제를 두고 거류지 상인들 사이에서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비단 이때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전년도 4월 상법회의소 다카하시와 마스다가 하나 부사에게 올린 청원서 내용을 보더라도 이러한 점은 “거류인민이 항시 일치 합동하지 않아 실로 통탄”스럽다는 표현을 통해서도 우회적으로 표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⁶⁵⁾ 『초야신문』에서도 이 소식을 전하면서 부산항 거류 일본인들이 “매번 조포(粗暴)한 거동을 하는 것은 탄식할

59) 신문 기사 내 인명 표기에는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半井宗太郎’가 아니라 ‘半井泉太郎’가 본명이다.

60) 「朝鮮釜山浦暴動の顛末(前號の續き)」 『東京横濱毎日新聞』 1881년 9월 22일.

61) 「朝鮮釜山浦暴動の顛末(前號の續き)」 『東京横濱毎日新聞』 1881년 9월 24일.

62) 『大阪日報』 1881년 9월 11일.

63) 「朝鮮釜山浦の變動」 『東京日日新聞』 1881년 9월 6일 ; 「朝鮮釜山浦暴動の顛末(前號の續き)」 『東京横濱毎日新聞』 1881년 9월 24일.

64) 「朝鮮釜山浦の變動」 『東京日日新聞』 1881년 9월 6일.

65) 「朝鮮國貿易ノ儀ニ付内稟書」 『事務始末』 卷17. “貿易事務協議ニ於テ居留人民ノ常ニ一致合同セサルモノ実ニ痛歎スル處ナリ。此弊タルヤ對州地方ノ人民ハ前日宗家ノ公貿易ニ慣習スルモノナレハ敢テ之ヲ惡ムヘキモノニ非ストイヘトモ、今日ノ際此旧弊ヲ一洗シテ将来ノ幸福ヲ謀ラント一般人民ハ一家ノ如ク一致協同セサルヲ得ス。是皆各自ノ一身上ニ關係スルコトニ付、官廳ニ於テハ厚ク御注意アリ御教諭アラントヲ希望ス”

일”이라며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할 정도였다.⁶⁶⁾

이후 구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동래부사와 일본영사가 만나 교섭을 진행하였다. 8월 21일에는 3일을 기한으로 하여 주모자를 포박해 달라고 곤도가 동래부사에게 요구했다. 24일까지 동래부에서 하등의 회답이 없자, 3일의 기한을 더 주면서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28일에 곤도가 동래부로 가서 협상을 벌였고, 7일 이내의 범죄자 포획, 일본인 피해자가 관리와 함께 구포에 가서 마을 사람들과 대면하기로 결정했다. 조선 측에서는 주모자 한 명을 체포했으므로 일본인들이 굳이 구포까지 직접 갈 필요는 없다는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일본 측에서 완강하게 반대함에 따라 동래부에서는 결국 정사인이 포졸 20명을 이끌고 구포에 가서 관련자 15명을 포박해 오도록 하였다. 이후에도 일본영사관 측에서 입장을 바꾸지 않아, 결국 30일에는 구포 지역민 150명을 붙잡아 동래부로 대거 끌고 오기에 이르렀다. 일본인 부상자와의 대면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색출하도록 했는데, 실제로 얼굴을 기억하고 지목한 자는 한두 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구포 지역의 조선인 가해자를 특징하는 일을 마무리한 다음, 양측은 상해를 가한 일과 범죄자 포획의 지체에 대한 사과 건을 논의하면서 협상을 마무리하였다.⁶⁷⁾

8월 30일 동래부사 김선근은 “관소에 있는 왜인들이 빛을 추징한다는 핑계로 제멋대로 경계를 침범하였는데도 제대로 탄압하지 못하여 이렇듯 경계를 침범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니, 모두가 신이 직분을 잘 수행하지 못한 죄”라고 하면서 처벌을 청했다.⁶⁸⁾ 경상감사 윤자승(尹滋承)은 사건이 발생하도록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김선근과 부산첨사 임형준(任衡準), 판찰관(辦察官) 현성운(玄星運)을 묘당에서 논의하고 처리해 달라고 장계를 올렸다.

경상좌수사 김동수(金東壽)도 그간 수집한 지방관들의 보고에 기초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정리한 다음, 관련자들에 대하여 처분한 내역과 자신의 의견을 정부에 아뢰었다. 구포 사건 발생에 대하여 지역 차원에서의 입장을 집대성한 것으로, 조선 측이 당시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첫째로 일본인들이 ‘한행이정’을 어기고 몰래 40리까지 나간 일은 사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였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동래부를 경유하여 공적으로 추심하는 편이 나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것은 타당한 지적이다. 경상좌수사는 향후 일본인들이 ‘한행이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역학을 통해 일본영사에게 주의를 주었다. 둘째, 일본인들에게 빛을 진 조선인들이 조속히 채무를 상환하고 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지시했다. 구포에서 충돌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결국 금전 대부 문제에서 기인하였던 만큼 향후 조일 양국인이 접할 때 빛을 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연해의 각 고을로 관문을 발송했다. 셋째, 사건 발생에 대한 보고를 지체하거나 관할 지역민의 단속을 소홀히 한 지방관이나 역관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특히 진행 상황을 가장 상세하게 알면서도 보고를 신속 정확하게 하지 않은 역학 유광표(劉光杓)에 대해서는 책임을 유관기관에서 가장 엄중하게 물어야 함을 명확히 했다. 동래부사와 부산첨사, 양산군수는 각각 임무를 소홀히 하여 이번 사태가 벌어졌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과실을 명명백백하게 논하였다.⁶⁹⁾ 각 주체별로 규정을 위반한 내역을 상세히 논하면서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두루 취했음을 알 수 있다.

의정부에서는 1876년에 체결한 「조일수호조규부록」에서 ‘한행이정’이 10리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빛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40리나 되는 다른 고을의 경계를 제멋대로

66) 『朝野新聞』 1881년 9월 7일.

67) 「朝鮮釜山浦暴動の顛末(前號の續き)」 『東京橫濱毎日新聞』 1881년 9월 27일.

68) 『承政院日記』 高宗 18年 閏7月 6日.

69) 『統制營啓錄』 高宗 18年 閏7月 15日.

넘어간 것은 이미 지극히 도발적”인 행동으로 보았다. 향후 폐단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일본영사관에 엄중히 항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당 지방관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자주 관직을 교체하는 것은 깊이 고려할 문제이므로, 일단은 담당자들의 직책을 유지하고 죄를 용서해 주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렸다. 물론 추가 조사를 하고 법에 따라 관련자들을 처벌하도록 단서를 달아 두기는 했다.⁷⁰⁾ 안성백을 비롯하여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구포 지역민들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다.

2) 어윤중과 면담한 청일 관리들의 구포 사건 인식

1881년 9월 7일 일본에서 어윤중(魚允中)은 청국공사 하여장(何如璋)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하여장이 먼저 신문을 통해서 보았다면서 구포 지역에서 소란이 발생한 정황을 알고 있는지를 물었다. 소란은 쓰시마 사람들과 구포에 거주하는 조선인 사이에서 있었다고 했다.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출신지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볼 때 아마도 하여장은 전날 발행된 『東京日日新聞』, 아니면 당일 발행된 『東京橫濱毎日新聞』이나 『読売新聞』에 실린 기사를 접했을 가능성이 있다. 어윤중은 사건을 확실히 알지는 못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부산 건은 분명한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국이 근래 가뭄으로 조적(糶糶)을 막아 왜관(和館)의 상인들이 우러러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 백성들 가운데서 사람들의 금전을 받아서 곡물 거래와 운송을 대신 처리하는 사람이 구포 지역에 많습니다. 저 사람들(-일본인)이 이 사람들(-조선인)에게 운송을 독촉하고 구포로 가서 이런 분쟁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들은 본래 경솔하고 사나운 습성이 많아 종종 이런 일이 있으니 걱정됩니다.⁷¹⁾ (밑줄은 인용자)

구포 지역 거주 조선인 가운데 일본인들에게 금전을 받아 곡물 거래와 운송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는 자가 많다는 발언을 통해 조일 양국 상인들의 상업거래가 여기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금전 거래가 많은 지역이었으니 채무 관계로 인하여 양국민 사이에 갈등과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그만큼 높았던 것이다. 이튿날 어윤중은 우에노(上野)에 가서 참찬관 황준헌(黃遵憲)과도 만났다. 이 자리에서도 조선으로 도항하여 소란을 수시로 일으키는 쓰시마인들을 관리할 방법과 구포 사건 처리 방향이 논의 주제 가운데 하나였다. 먼저 황준헌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도항 쓰시마 상인들이 정식으로 도항 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보증인까지 확보해야 하며, 이들을 단속할 수 있는 순사를 많이 배치하도록 해야 무뢰배들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의 원망이 한 번에 폭발하여 유혈이 낭자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였다.⁷²⁾ 심지어 쓰시마인을 훗카이도로 ‘이주(徙民)’시키는 방안까지도 제시하였다. 물론 어윤중은 일본인의 이주 문제(遷民之事)

70) 『承政院日記』 高宗 18年 閏7月 15日 ; 『高宗實錄』 高宗 18年(辛巳) 閏7月 15日.

71) 「十四日 何公使晤談」 『談草』. “釜山事未聞的報，而本國近以旱災過糶，和館商民無所仰賴。且本邦民受彼人之金，代辦穀物之商運者，多在九浦地。彼人果督運於伊人，而向往九浦，有此爭端，而彼人素多輕悍之習，種種有如此事可悶。”

72) 「十五日 與黃公渡往野池亭晤談」 『談草』. “至目下對人，如此時時滋擾，實屬不成事體。現日宜急急設法，先爲安置。此事宜告貴國政府與日本外務妥商。若能勸其將一二千人，移徙北海道則固善，不然則令彼理事多設巡查，預爲防範。凡對人之來釜山者，必須令正徑商人，出結連保，方許上岸，則猶可彌縫。不然則彼輩無賴，動輒挾衆恃橫，甚至盜弄兵器，與盜賊無異，民怨日深，一旦發憤喋血，後患非所忍言也”

를 조선 정부에서 제안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쓰시마인에 대한 관리와 통제는 일본 측의 내정에 해당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는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가 왔을 때 쓰시마인들을 내쫓은 적이 있지만, 이들이 다시 부산 지역에 모여들어 ‘수천 명’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서구 열강의 조약문을 거론하면서 조약을 어기고 경계로 넘어와 소란을 일으킨 외국인들은 해당 국가의 공사와 영사라도 자국민을 비호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을 근거로 체류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하였다.⁷³⁾ 이에 황준헌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저들이 조약에서 정해놓은 경계를 벗어났으니, 우리 쪽에서 스스로 힘을 다하여 저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구포(九浦)에 머무르는 일은 저들이 200~300명을 끌어모았고, 온 마을을 소란스럽게 한 후 달아나 숨었습니다. 귀국으로서는 갑작스러워 막을 수 없었으니 백성들이 끝없는 곤란을 겪게 됩니다. 더구나 칼을 뽑아 사람을 죽인 일이 이미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귀국에서 약속할 수 있는 바가 아닌데, 명령을 듣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실습니까? 무릇 두 나라가 화친하는 것은 진실로 각자의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체(國體)를 방해한다면 어찌 발언하지 못할 일이 있으실습니까? 그저 서로 곡진하게 헤아려야 할 따름입니다.⁷⁴⁾

황준헌은 일본인들이 조약에서 정해둔 ‘한행이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선 측에서 진력할 필요가 있으며, 구포 지역에서 벌어진 상해 사건은 치외법권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만 국체를 훼손하는 일과 관련된다면 일본 측에 충분히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여지는 있다고 조언했다.

9월 21일 이노우에 가오루와 면담하는 자리에서도 구포 사건은 등장했다. 일본 언론에서 활발하게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건의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산항은 수군절도사가 군인을 시켜 상인을 억압하는 일이 많습니다. 죽을죄라고 위협하여 금을 뺏고, 곡물을 바치면 풀어주고, 더러는 뺏어다가 우리 상인에게 옮겨 팔기도 합니다. 군인이 또 중간에서 뇌물을 요구하니, 우리 상인이 물건을 거래하고자 하면서 귀하의 백성에게 원가로 공급하는 셈입니다. 진실로 이런 명백한 실책이 많습니다. 또 더러 통영(統營)에 빼앗기기도 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구포에 가서 소란을 일으킨 것은 애초에 이런 폐단이 없었다면 시작되지도 않았습시다. 우리가 아무리 도리를 다해 엄히 다스리더라도 귀국의 법령이 엄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⁷⁵⁾

73) 「十五日 與黃公渡往上野池亭晤談」『談草』. “近閱此邦之與各國條約中, 外國人若再有犯科, 卽爲越境, 雖該國公使領事, 亦不能庇護. 此事可援以爲證, 而其作擾無賴, 劃卽可令不暫駐留耳. 曾於森山茂來駐之時, 多逐對州人, 其後逐次更聚, 今則爲數千人之多”

74) 「十五日 與黃公渡往上野池亭晤談」『談草』. “彼輩越條約所定界限, 自可由我極力阻止. 然如此次九浦之事, 彼聚合二三百人, 使闔村驚擾逃竄, 貴國猝不及防, 而民人受累無窮矣. 況拔刀殺人, 卽在釜山, 非貴國所能約束, 而聽令縱橫可乎? 凡兩國和親, 固當各盡其道. 而至於妨碍國體, 有何不可發言乎? 但當與之婉商耳.”

75) 「二十八日 赴井上醫家」『談草』. “釜山港則有水使多使軍人縛商民, 脅以死罪奪其金. 若穀物納之則釋, 或奪之而運販於我商民. 軍人又從中索賂, 我商民欲買物, 而給價本於貴民, 固此白失者多矣. 又或爲統營之所奪焉. 我民之往九浦作鬧, 未始不由於此等之弊. 我雖盡在我之道, 欲爲嚴勸, 貴國法令之不嚴可知.”

이노우에는 구포에서도 충돌이 벌어진 것이 결국 조선 관리들의 뇌물 요구 관행과 엄격한 법령을 시행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하면서, 사건 발생의 책임을 조선 측에 떠넘겼다. 「조일수호조규부록」에서 정한 ‘한행이정’ 10리의 범위를 넘어 일본 상인들이 4배나 멀리 떨어진 곳까지 돌아다닌 것은 1차적으로 조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은 한 마디도 거론하지 않았다. 관리관과 영사의 보고를 통해서 접했을 부산항 내의 여러 폐단을 거론하면서, 이로 인하여 자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다는 점에 방점을 찍으면서 논의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윤중은 이노우에가 거론한 부산 지역 군인들의 상인들에 대한 횡포는 조정에서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이 일은 미국 수출을 금지하려는 가운데 발생한 문제일 수 있다며 현지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⁷⁶⁾ 실제로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이해 6월 조선 관리들이 구포와 김해 지역에서 곡물 상인들을 단속하는 가운데 발생한 문제로, 동래부사와 부산영사가 교섭하여 단속 관원들이 현지에서 철수하는 선에서 문제를 매듭지은 것이었다.

3) 관련자의 처벌과 사건 종결

10월 28일 영사 곤도 마사키는 구포 사건을 수습하는 가운데 향후 조일 양국민이 금전이나 물품을 대여해 주는 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거래상 주의할 사항을 고시했다.

조선인에게 금전이나 상품을 빌려주는 자는 그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본인은 한행이정 내에서 신분이 확실한 조선인을 보증인으로 삼으며, 정확한 증서를 취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올해 2월 12일, 본관의 포달 9호로 두 가지로 해 둔 적이 있다. 거류인민 가운데는 위의 포달을 체득하지 않은 자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직 주의하라는 취지로 포달함.⁷⁷⁾

구포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의 처분은 이로부터 며칠 후에 이루어졌다. 부산영사관에서는 11월 1일과 2일에 걸쳐 다음과 같이 ‘한행이정’ 위반과 가담 정도에 따라 인물별로 최종 처분을 고시했다.⁷⁸⁾ 이 가운데 한이 센타로의 경우 금고 60일의 처분을 받고 고향인 쓰시마 이즈하라로 송치되었고, 유명인으로 알려져 비교적 편하게 수감 생활을 했다고 한다.⁷⁹⁾ 이후 일본 영사는 거래에 종사하는 상인들을 규제하고 거래에 개입할 수 있는 단속규칙을 하나씩 제정하기 시작했다.⁸⁰⁾

성명	처분
무라카미 고메지로(村上米次郎)	금옥(禁獄) 70일
한이 센타로(半井泉太郎)	금옥(禁獄) 70일이나 자수하여 1등급 감형

76) 「二十八日 赴井上警家」『談草』. “於此釜山地武帥之事, 實非朝廷之所聞. 或藉禁米穀輸出, 而有是事也.”

77) ‘韓人に金錢貸付制限’ 『釜山府史原稿』 卷6, 162쪽.

78) 「朝鮮人と爭鬪の處刑」 『東京日日新聞』 1881년 11월 24일 ; 『郵便報知新聞』 1881년 11월 24일.

79) 上垣外憲一, 1996, 앞의 책, 127쪽.

80) 相沙希子, 2007, 앞의 논문, 44~45쪽.

고쿠분 우마타로(国分馬太郎)	금옥(禁獄) 70일이나 정상참작을 하여 30일
도비라 이치지로(扉市次郎)	
아비루 유지로(河比留祐次郎)	
후지와라 이와지로(藤原岩次郎)	
야스카와 히로스케(安川廣助)	
시노다 한스케(篠田半助)	조선인 상해죄로 금옥(禁獄) 1년

표 20 구포사건 관련 일본인의 처분

조선인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분이 내려졌다고 보도되었다. 주범인 안성백에 대해서는 중하다고 판단하여 사형을 정부에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 안성백 외 두 명은 이듬해 참수당하고 사지를 절단하는 극형에 처해졌다고 일본 신문에 보도되는데, 두 명의 이름까지 추가로 확인하기는 어렵다.⁸¹⁾ 나머지 가담자들은 경중에 따라 4명을 태장 50대, 10명을 태장 40대를 집행하였다.

성명	처분
안성백(安性白)	주범(首犯). 죄질이 가장 무거워 정부에 처분을 요청
최세윤(崔世允)	종범(次犯). 구타와 상해한 조목, 태장(笞杖) 50대
김철이(金七伊)	
김세겸(金世兼)	
손흥조(孫興祚)	
김여흥(金汝興)	
배찬오(裴贊五)	종범(次犯). 구타와 상해한 조목, 태장(笞杖) 40대
박경준(朴景俊)	
허치원(許致遠)	
이무식(李武植)	
김계봉(金季奉)	
양백수(梁百守)	
박기주(朴基周)	
장곤이(張坤伊)	
김재공(金在兢)	

표 21 구포사건 관련 조선인의 처분

4. 나가며

본 발표문에서는 두모진에서 수세 문제로 조일 양국이 갈등을 빚기 시작한 1878년 시점부터 구포에서 자금 대부 문제로 충돌한 1881년 8월 시점까지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교역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는지를 검토하였다. 무역 거래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거류 일본인들이

81) 『大阪朝日新聞』 1882년 3월 1일 ; 上垣外憲一, 위의 책, 138쪽 재인용.

정부에 요구한 사항 다섯 가지를 그들이 남긴 청원서 내용을 토대로 검토하였다. 여기에서 이전부터 지속된 일본 상인의 자금 대부 문제가 구포 사건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여기에는 조선과 일본이 1876년에 새롭게 체결한 「조일수호조규부록」을 통해 설정된 ‘한행이정’의 설정 범위를 넘어가 양산 구포 지역까지 진출해서 교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여기에는 부산 지역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쓰시마 지역 출신의 상인들이 관여하고 있었다. 거래 과정에서 조선인들과 충돌이 발생한 후, 부상을 입은 자국민들이 거류지로 돌아오자 강경한 여론을 조성하면서 구포 지역으로 몰려가 보복을 가하려 했던 것도 쓰시마 상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당시 일본 언론에서도 쓰시마 상인들의 행태와 조선인을 대하는 습관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들의 강경한 여론 조성과 활동은 조일 양국의 우호 관계를 지속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자중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들을 관리, 통제해야 하는 일본 관리관이나 영사의 훈시도 마찬가지였다. 상법회의소 회원들의 경우에도 구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총고위원을 선정하여 이들을 타이르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타협에는 실패하였다. 상법회의소가 영사관에 제출한 입장문을 보면 쓰시마 지역의 상인들과는 선을 긋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부산 지역에서 그동안 교역을 중점적으로 해온 쓰시마 출신들과 다른 지역 출신 상인들 간에도 일정하게 입장차가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신규로 조선에 진출한 타 지역 상인들이 보았을 때는 쓰시마 지역 출신들의 행동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행태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좀 더 다양한 사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구포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 양산군수, 동래부사, 역학 등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 전개 과정을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경상좌수사가 이들의 보고를 수합하여 의정부로 올린 문서에는 지방관들의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사단의 원인을 제공했던 구포 지역 채무자들에 대한 처분, 향후의 재발 방지 방향 등이 다각도로 담겨 있었다. 아울러 조일 간에 체결한 ‘한행이정’도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재발 방지를 일본 영사에게 촉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정부에서 논의를 거쳐 구포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지방관들에 대해서는 문책보다는 직책을 유지하면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렸다. 구포 지역에서 일본인들과 충돌하면서 소란을 일으켰던 조선인들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안성백 같은 주범은 사형에 처했고, 나머지 가담자에게는 태장 40~50대를 가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요컨대 구포 사건은 개항 초기 조일 양국의 교역이 늘어나는 가운데 쓰시마 출신 상인들과 조선인들의 금전 거래, 거류지 내 일본상인들의 입장 차이, ‘한행이정’ 설정과 운영에 대한 조선 관리들의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상권 확장과 경제적 이윤 추구를 위해서 허용된 ‘한행이정’을 넘어 조선의 내지까지 불법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조선인들과 마찰과 충돌을 빈번하게 빚는 모습은 구포 사건이 하나의 출발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듬해 4월 말 원산항 근처 안변부에서 발생한 일본인 살상 사건도 이와 비슷한 패턴이었다. 이러한 사건이 누적되는 가운데 ‘한행이정’의 제한 거리는 임오군란을 거쳐 「조일수호조규속약」을 체결하면서 100리까지 늘어났고, 일본 상인들이 조선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은 점점 넓어졌다.

참고문헌

1. 자료

『高宗實錄』

『承政院日記』

『統制營啓錄』(송수경 번역, 2015, 『국역 각사등록 52 : 경상도편 1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談草』(魚允中,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1881)

『明治十一年代理公使渡韓始末』(국사편찬위원회 소장)

『明治十二年代理公使朝鮮事務始末』卷17(국사편찬위원회 소장)

『通商彙編 : 明治14年 釜山港之部』(『通商彙纂』第1卷, 大學書院)

『東京日日新聞』 『郵便報知新聞』 『東京橫濱每日新聞』 『読売新聞』 『朝野新聞』 『大阪日報』

『釜山府史原稿』 卷6(都甲玄郷 編, 釜山府, 1937)

2. 논문과 단행본

姜德相, 1962, 「李氏朝鮮開港直後に於ける朝日貿易の展開」 『歴史學研究』 265

김기엽, 2018, 「1881년 어윤중이 쓴 「담초(談草)」의 특징과 대담에 나타난 한·중·일의 정세」 『정신문화연구』 41-2

김경태, 1994, 『한국근대경제사연구』, 창작과비평사

박한민, 2011, 「1878년 두모진 수세를 둘러싼 조일 양국의 인식과 대응」 『韓日關係史研究』 39

_____, 2014, 「개항장 「間行里程」 운영에 나타난 조일 양국의 인식과 대응」 『韓國史研究』 165

_____, 2019, 「1883년 조일통상장정 체결과 각국의 대응」 『역사와 경계』 111

上垣外憲一, 1996, 『ある明治人の朝鮮觀 : 半井桃水と日朝關係』, 筑摩書房

相沙希子, 2007, 「부산항 일본인 거류지 연구(1876~1883)」,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아이 사키코, 2010, 「부산항 일본인 거류지의 설치와 형성 - 개항 초기를 중심으로 -」 『도시연구』 3

奥平武彦, 1969, 「朝鮮の條約港と居留地」, 『朝鮮開國交渉始末』, 刀江書院

李東勳, 2019, 『在朝日本人社会の形成 : 植民地空間の変容と意識構造』, 明石書店

李穗枝, 2016, 『朝鮮の對日外交戰略 : 日清戰爭前夜 1873-1893』, 法政大學出版局

정성일, 2014, 「1872-75년 조·일 무역 통계」 『韓日關係史研究』 46

_____, 2020, 「조사시찰단의 보고로 본 1880년 조선의 수출입 통계」 『韓日關係史研究』 68

酒井裕美, 2016, 『開港期朝鮮の戰略的外交 1882-1884』, 大阪大學出版會

村上勝彦, 1975, 「植民地」, 大石嘉一郎 編, 『日本産業革命の研究 : 確立期日本資本主義の再生産構造』, 東京大學出版會

彭澤周, 1969, 『明治初期日清韓關係の研究』, 塙書房

현대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한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평가

최영호 (국제생활연구소)

choiygho@naver.com

I. 서론

오늘날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역사인식 문제, 영토 문제, 청구권 문제를 둘러싸고 외교관계가 경색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을 둘러싸고 1951년 공식적 외교교섭이 시작된 이래 오늘날까지 양국은 외교적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국가에 대한 일본 제국의 강압적인 통치 때문에 생성된 것이며, 현재로서는 밀약(密約) 형태로 외교적 교섭을 추진하지 않는 이상 대중들의 불만을 억압하거나 정부가 줄타기 하듯 대중들의 심리를 그때그때 달래지 않으며 진정(鎮靜)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14년간에 걸친 기나긴 공식적인 외교교섭 끝에, 비로소 1965년 6월 한일기본조약과 4개의 부속협정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국교정상화에 이른 것도 이 만큼 양국의 외교관계가 어렵다는 것을 대신 말해주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이 각각 독립된 주권국가로 남아있는 한 정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양국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발표에서는 세 가지 쟁점이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고, 현행 양국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하여 1965년 외교적 봉합으로 이뤄진 국교정상화에 대해 오늘날 양국의 사회적 평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여기서는 국교정상화를 둘러싸고 박정희 정부와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정부에서 체결한 업협정을 중심으로 하여 오늘날 한일 양국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국과 일본의 평가에서 보이는 국가별 상이점이 무엇인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관련 논저를 소개하고 이러한 연구들이 국교정상화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해 왔는지를 개관하고, 이어 오늘날 양국의 사회적 평가와 관련하여, ①오늘날 일본중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2019년 판의 서술과 한국중학교 2020년 판의 서술을 검토하면서, ②현대사 관련 항목에 집중하고, ③양국 교과서 내용 중 한국과 일본의 현대사를 중심으로 하여, 국제관계사 학문의 입장에서 관련 기술 내용을 찾아내고 기술의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오늘날에도 대륙붕 개발과 관련시켜 1950년대의 ‘평화선’이 여전히 계속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¹⁾ 이 견해에 대해 아무리 일본에 대해 반감과 저항을 주장했던 ‘평화선’의 이념이 살아있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주장은 외교교섭 결과를 무시하는 논리라고 생각한다. 1962년의 6차 회담에서 한일 양국이 밀약의 형태로 ‘평화선’의 철폐를 합의했지만, 한국정부가 국민들의 반대 의견에 굴복하고 결국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당시 한국에서는 ‘평화선’ 철폐에

1) 배규성, 「이승만 라인(평화선)의 재고찰: 해양법 발전에서의 의의와 독도 문제에서의 의미」, 『일본문화연구』 47집, 2013년, 213-238쪽.

반대하는 여론이 강렬한 상황에서, 대일 수교를 앞세워 경제개발을 추진하고자 한 박정희 군사정부로서는 국방상 이유를 들어 ‘평화선’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는 공여지책의 논리를 개발하여 반대 의견을 잠재우고자 했다.²⁾ 오늘날까지 ‘평화선’이 살아있다는 논리는 현실을 벗어난 궤변(詭辯)에 불과하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의 공식회담 결과 어업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 협정을 통해 한일 양국은 기존의 ‘평화선’이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독도 수역을 한국의 전관수역에서 제외했을 뿐 아니라, ‘평화선’에 따른 한국의 전관수역 범위도 대폭 좁아지게 되었다.³⁾ 어업협정의 효력에 따라 한국이나 일본 어느 한 쪽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어업수역 이외의 공해상에서 자국의 관현에 의해 상대국가의 선박을 정지시키거나, 입검·나포·연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⁴⁾

II. 국교정상화에 관한 연구 동향

굳이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기술 내용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양국 지식인들이 한일 국교정상화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오늘날 양국의 차세대 젊은이들에게 국교정상화의 역사를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분석대상을 중학교 역사교과서로 한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왜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중학교 뿐 아니라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의 교육적 역할도 인정해야 되지 않는가, 또는 중학교에서도 역사 이외에 사회 지리 분야나 공민 분야에서 관련 기술을 찾아나갈 수 있지 않는가, 등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 이 발표문의 견해로서는 사회적 평가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대상으로서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학교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견해에 따라 국교정상화 문제가 현대사 영역에 속해 있는 만큼 역사 과목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삼았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는, 일본 사회에서 강덕상(姜德相) 연구자를 비롯한 재일 한국인 논객들이 이미 1979년에 언급했다. 그들은 당시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가운데, 일본 청소년에 대한 교육의 현장에 적용하는 교육적인 의미와 사회적 수요에 따른 교육자의 사회적인 의미가 반영된 것이라고 논한 바 있다.⁵⁾ 또한 2005년 일본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등의 우경화 단체들이 활발히 전개한 역사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한국의 연구자들은 일본의 중학 역사교과서 내용에 관하여 다양하게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성토했다. 그 가운데 모든 교과서의 기술 내용에서 ‘반공’ 이념과 평화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비판이 나왔다.⁶⁾ 또한 2011년 한 연구자는 새역모 계열의 두 가지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비롯하여 도쿄서적(東京書籍)의 기술내용을 비판하면서, 천황 중심 사관의 강화, 반미성향의 강화, 제국주의 전쟁의 미화 등으로 변화 경

2) 양재영, 『평화선에 관한 역사적·법적 연구』, 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 해양정책학과 박사논문, 2019년, 71-72쪽.

3) 양재영, 『평화선에 관한 역사적·법적 연구』, 69쪽.

4) 조윤수, 「한일어업협정과 해양경계 확정 50년」, 『일본비평』 12호, 2015년 2월, 105-110쪽; 水産庁, 『出漁の手引き』, 水産社, 1965년, 10-11쪽.

5) 金達壽·姜在彦·李進熙·姜德相, 『教科書に書かれた朝鮮』, 講談社, 1979년, 209-234쪽.

6) 신주백,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2005년도 검정본 분석: 일제강점기 및 현대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55집, 2005년 6월, 224-226쪽; 박찬승,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근현대사(1910년 이후) 서술과 역사관 분석: 후소사관 교과서의 ‘전쟁’ ‘식민지’ 관련 서술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29호, 2005년 6월, 300-305쪽.

향이 뚜렷하다는 것을 지적했다.⁷⁾

이렇듯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교육적으로 청소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받게 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오늘날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이 한일 국교정상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의 문제, 등을 생각하게 한다. 과거에는 일부 교과서를 선정하여 그 기술내용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는 연구가 있었지만,⁸⁾ 2011년 일본정부가 ‘국가주의’ 적인 검정통과의 방향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분석 시도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연구 동향과 관련하여 필자는 2011년 8월 한일관계사학회에서 2011년 검정통과 일본 역사교과서 내용에 국한시켜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⁹⁾ 그 후 10년이 흐른 오늘날의 시점에서 1965년 국교정상화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기술 내용을 분석하는데 연구 의의를 두고자 한다.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이 해마다 일본 교과서 내용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2015년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역사교과서에서 한국과 관련한 사항 전반에 대해서 번역한 일이 있다는 것도 언급해 둔다.¹⁰⁾

1951년 이승만-요시다 정부 시기의 예비회담 개시부터 1965년 박정희-사토 정부 시기의 기본조약체결에 이르기까지 회담 과정에서 ‘평화선’ 문제와 청구권 문제에 관한 교섭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는데, 이에 관한 연구물이 셀 수 없이 많이 세상에 나왔다. 대체로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대체로 한국에서는 정책 담당자나 정부 업적을 대변하는 연구자들이 양국의 외교적 산물에 관한 연구를 내놓았다.¹¹⁾ 반면에 이 시기에 일본에서는 박정희 정부의 비민주성을 강조하는 연구자나 식민지배의 민족적 차별을 비판하는 일본인·한국인 연구자들은 기본조약과 협정의 체결 움직임을 비판하는 연구물을 일본에서 내놓게 되었다.¹²⁾ 특히 1950년대 일본의 연구물에서는 이승만 정부의 일방적인 ‘평화선’ 을 부정하는 논조가 강했고, 일본 사회와 재일한국인 사회에서 한일회담에 대한 비판론과 북한으로의 송환을 지지하는 견해가 팽배한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비민주성을 강조하면서 결과적으로 반한(反韓) 감정을 일본 사회에 확산시키는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¹³⁾ 그러다가 2000년 이후 한일회담 관련 자료들이 일반에 공개되면서 폭넓은 자료들을 사용한 국교정상화 관련 연구물들이 대거 생산되어 그 평가를 두고 한국인과

7) 하종문,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근현대 일본사 기술 분석: 지류샤, 이쿠호샤, 동경서적을 대상으로」, 아시아 평화화역사교육연대, 『2011년 일본 중학교 교과서 분석 심포지엄: 역사, 공민을 중심으로』, 2011년 5월, 224-226쪽.

8) 김지혜, 『韓日 中學校 社會科 教科書의 世界史的 内容에 關한 比較 研究』, 경북대학교사학과 석사논문, 1995년, 1-75쪽; 최영호, 「한국과 일본의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현대 한일관계 관련 서술」, 『동북아역사논총』 17호, 2007년 9월, 187-219쪽.

9) 최영호, 「2011년 검정통과 일본 역사교과서의 근대서술에 나타난 변화와 특징: 한일관계 서술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0집, 2011년 12월, 113-138쪽. 여기에서 2011년 일본의 검정통과에 따라 일본 역사교과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는 한국측 연구자의 움직임을 상세하게 묘사했다.

10) 동북아역사재단, 『2015년 검정합격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한국 관련 기술 번역 자료집』, 동북아역사재단, 2015년.

11) 민주공화당 선전부, 『한일국교정상화 문제』, 민주공화당, 1964년, 1-111쪽; 吉典植, 『朴正熙大統領: 信念の指導者』, 共和出版社, 1972년, 1-182쪽, 김용식, 『김용식 외교 33년 새벽의 약속』, 김영사, 1993년, 제2장-제6장; 김정렴, 『아, 박정희』, 중앙M&B, 2000년 등.

12) 金万峰, 『朴正熙その独裁と腐敗』, エール出版社, 1976년, 1-324쪽; 市民の手で日韓ゆ着をたたく調査運動(編), 『日韓關係を撃つ: 玄海灘をこえる民衆連帯のために』, 社会評論社, 1981년, 1-255쪽; 洪性大, 「韓·日国交正常化過程における朴正熙政権の対応: 朴政権の‘政治運営’の観点から」, 『東京都立大学法学会雑誌』 36卷1号, 1995년 7월, 203-229쪽; 日韓漁業協議会, 『日韓漁業對策運動史』, 内外水産研究所, 1968년, 第10章-第11章; 小谷豪治郎·金石野, 『韓国危うし: 朴正熙と金鍾泌を再評価する』, 光文社, 1997년, 1-380쪽 등.

13) 1965년의 한국여론 동향을 일본어로 번역한 자료집이 시가(滋賀)현립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朴慶植, 『日韓會談をめぐる韓国の世論: 最近の韓国の新聞、雑誌の論調を中心に』, 滋賀県立大学図書館, 2003년, 1-35쪽.

일본인을 분간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때 과거와 비교하여 한일 간 지식인의 교류가 활발해졌다는 점과 함께, 한국의 연구물 가운데서도 다양한 연구 동향이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¹⁴⁾

다만 전반적인 연구동향으로, 현실적인 어업자원의 보호 문제보다는 역사적으로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운 독도 영유권 문제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연구관심이 쏠려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어업문제에 국한하여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에서 공개된 한일회담 관련 자료들을 상호 대조하면서 한일 외교교섭에서 나타난 양국 입장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물들이 나오고 있다. 비교적 소수에 속하는 어업문제 관련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국제법 학회를 중심으로 하여 국제법의 흐름 가운데에서 현대 한일관계를 구조적인 측면에서 재평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분위기가 2000년 이후에 들어 전반적으로 현대 한일관계사 연구들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가운데 후지이 겐지와 정인섭 등¹⁵⁾으로 이어지는 연구자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 연구물은 공통적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어업문제와 함께 뒤섞여 다루고 있으며, 대체로 일본정부의 대응방식보다는 한국정부나 대일 점령당국의 대응방식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이 쏠려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1965년 국교정상화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평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은 피하고자 하며, 따라서 한일관계의 현대사를 국제정치의 구조를 통해 파악하고 싶다. 국교정상화 정책에 대한 구조적인 평가를 내린 대표적인 연구가로서는 한국의 이정식(李廷植)·이원덕(李元德)¹⁶⁾과 함께 미국의 빅터 차(Victor D. Cha)와 일본의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¹⁷⁾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에 의한 종합적인 연구가 세상에 나온 이후, 오늘날까지 한국인이나 일본인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국교정상화 정책을 ‘합리적인 정책 결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전통적인 평가의 이면에는 냉전기나 최근의 국제질서는 기본적으로 국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다는 현실주의적인 시각이 깔려있다. 따라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정치 질서 속에서 이승만·박정희 정부와 일본의 자민당 정부가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교정상화 정책을 추진했다고 보는 것이다.¹⁸⁾

14) 대표적인 연구물로서, 박진희, 『한일회담: 제1공화국의 대일정책과 한일회담 전개과정』, 선인, 2008년, 제6장; 오오타 오사무, 『한일교섭: 청구권문제 연구』, 선인, 2008년, 1-475쪽; 장박진, 『식민지 관계 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 한일회담이라는 역설』, 논형, 2009년, 1-531쪽; 도시환 외,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1: 한일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대한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2012년, 1-202쪽; 이동준·장박진(편), 『미완의 해방: 한일관계의 기원과 전개』, 아연출판부, 2013년, 제1장-제8장; 일본외무성(편)·이동준 역, 『일한(日韓)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 삼인, 2015년, 1-1199쪽; 요시자와 후미토시, 『현대 한일문제의 기원: 한일회담과 '전후 한일관계'』, 일조각, 2019년, 제1장-제8장, 이원덕 외, 『한일국교정상화 연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6년, 제1장-제4장 등을 들 수 있다.

15) 藤井賢二, 「李承晩ライン宣布への過程に関する研究」, 『朝鮮學報』 185号, 2002年10月, 73-112쪽; 藤井賢二, 「李承晩ラインと日韓会谈: 第一次~第三次会谈における日韓の対立を中心に」, 『朝鮮學報』 193号, 2004年10月, 111-146쪽; 오제연, 「평화선과 어업협정」, 『역사문제연구』 14호, 2005년 6월, 11-46쪽; 정인섭, 「(특집)국제법 발전에 대한 한국 외교의 기여: 1952년 '평화선' 선언과 해양법의 발전」, 『서울국제법연구』 13권 2호, 2006년 12월, 1-28쪽; 조윤수, 「'평화선'과 한일 어업 협상: 이승만 정권기의 해양질서를 둘러싼 한일간의 마찰」, 199-223쪽; 스튜어트 케이, 「해양법의 발전에서 평화선이 지니는 의의」, 『영도해양연구』 4권, 2012년 12월, 36-58쪽.

16) 李廷植, 『戦後日韓関係史』, 中央公論社, 1989年, 1-308쪽; 이원덕,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와 한일회담』,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년, 1-305쪽.

17) 빅터 D. 차, 『적대적 제휴: 한국·미국·일본의 삼각 안보체제』, 문학과지성사, 2004년, 1-538쪽; 小此木政夫·張達重(編), 『戦後日韓関係の展開』,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05年, 제1장-제8장.

18) 김동조, 『희상30년 한일회담』, 중앙일보사, 1986년, 1-298쪽; 기미야 다다시, 『박정희 정부의 선택: 1960년대 수출지향형 공업화와 냉전체제』, 후마니타스, 2008년, 1-448쪽; 金恩貞, 『日韓国交正常化交渉の政治史』, 千倉書房, 2018年, 1-398쪽; 朴敬民, 『朝鮮引揚げと日韓国交正常化交渉への道』,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8年, 제4장.

아울러 한일 기본조약과 협정 체결의 ‘생산성’에 대해서는, 오늘날 연구자들이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부정적인 평가도 함께 존재한다. 양국의 국교정상화 이후 인적 물적으로 일본과의 교류가 폭증함에 따라 한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이와 함께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도 대폭 증가했고 일본에 대한 의존도 역시 증가했기 때문이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2018년까지 54년간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누적 금액은 700조 원을 넘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소재 제품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국교정상화 이후 단 한 번도 일본 무역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¹⁹⁾ 그러나 [표-1]과 같이 1965년을 전후하여 10년을 기간으로 하여 한국의 대일 무역추이를 살펴보면, ‘생산성’ 면에서는 박정희 정부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자료에서 1956년을 맨 앞에 내세운 것은 이때부터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통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어업협정과 관련하여 [표-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국교정상화 이후 청구권 자금이 들어오면서 한국의 어업 인프라가 대폭 근대화 되었다는 점은 실로 부인하기 어렵다.

[표-1] 한국의 대일무역 추이

연도	수출액 (백만\$)	대일수출액(백만\$) (총수출대비)	수입액 (백만\$)	대일수입액(백만\$) (총수입대비)	무역수지 (백만\$)	총무역액 (백만\$)	대일무역액(백만\$) (총무역대비)
1956	25	7 (30.2%)	386	40 (43.1%)	- 361	411	47 (40.2%)
1960	33	20 (61.6%)	344	70 (20.5%)	- 311	376	90 (24.0%)
1965	175	44 (25.1%)	243	144 (58.3%)	- 78	418	188 (43.5%)
1970	835	234 (28.1%)	1,984	562 (44.8%)	- 1,149	2,091	796 (38.1%)
1980	17,505	3,039 (17.4%)	22,291	4,971 (25.4%)	- 4,786	39,796	8,010 (21.6%)
1990	65,016	12,638 (19.4%)	69,844	18,574 (26.6%)	- 4,828	134,860	31,212 (23.1%)
2000	172,268	20,466 (11.9%)	160,481	31,828 (19.8%)	+ 11,786	332,749	52,294 (15.7%)
2010	466,384	28,276 (6.0%)	425,212	64,296 (15.1%)	+ 43,172	891,596	92,572 (10.4%)
2018	604,860	30,529 (5.0%)	535,202	54,596 (10.2%)	+ 69,657	1,140,062	85,125 (7.5%)

출처: 무역통계정보시스템, 「국가수출입-K-stat총괄」, <http://stat.kita.net/stat> 2020년 2월 24일 검색.

19) 디지털타임즈, www.dt.co.kr, 2019년 7월 7일.

[표-2] 청구권 자기에 의한 어선 건조 실적 (1966~1975)

어선종류	청구권 자금		기타 자금		합계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연안소형어선	514	4,686	1,651	8,283	2,165	12,969
연안중형어선	766	20,675	102	5,160	868	25,835
상어연승어선	6	541	-	-	6	541
중형기저어선	35	1,753	-	-	35	1,753
대형기저어선	28	2,795	-	-	28	2,795
기타	9	180	82	4,552	91	4,732
참치연승어선	-	-	32	12,230	32	12,230
스탠트롤어선	-	-	4	1,437	4	1,437
계	1,358 (42.1%)	30,630 (49.2%)	1,871 (57.9%)	31,662 (50.8%)	3,229 (100.0%)	62,292 (100.0%)

출처: 경제기획원, 『청구권자금백서』, 경제기획원, 1975년, 159쪽.

그러나 국교정상화와 관련하여 박정희 정부의 ‘민주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나선 것은 혁명정부 이전에 이미 제2공화국에서 채택한 방침이었다. 그렇게 때문에 개발정책을 제3공화국이 갖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도 제2공화국으로서는 1년 만에 군사 쿠데타로 정권이 무너진 만큼, 장면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기 곤란하다. 그리고 신생 독립 국가인 한국정부가 국교정상화의 대가로 내세웠던 ‘평화선’을 소멸시킨 일이나 역사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을 받아서 경제개발에 투입했다고 하는 사회 전반에 걸친 비판 움직임에 대해서, 박정희 정부는 군대 세력을 동원하여 시민의 표현 자유를 억압하고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를 두고 한일 국교정상화를 단행한 시기의 초기 군사정부는 정권 후기에 비하면 순수하게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박정희 정부는 경제성장이 이뤄지면 이뤄질수록 권력의 독점화를 추진해 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군사정부 이후의 제3공화국은 초기부터 이러한 비민주적인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제3공화국의 국교정상화 정책을 오로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지나간 과거의 정책에 대해서 국교정상화가 가져온 장기적 효과를 실증한 후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일부 연구자 중에는 국교정상화의 대가가 정당했는지를 둘러싸고 부정적으로만 평가하려는 사람도 있다. 특히 일본과의 수교가 3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가 극심한 상황에 이르면서 제3공화국의 국교정상화 정책 전반에 대해서까지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 움직임이 있다. 그 가운데 1988년의 학위 논문에서 1955년 5월에 체결된 일본과 필리핀 사이의 배상협정 내용과 비교하면서 1965년 대일 국교정상화 정책을 통해 손실이 컸다는 점을 주장한 일이 있다. 일본은 필리핀과의 협정을 통해 배상액 5억 500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고, 처음 10년간은 매년 2500만 달러씩 그리고 그 후 10년간은 매년 3000만 달러씩 제공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과의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무상 3억 달러를 10년간 지불하고 정부 차관 2억 달러를 10년 동안 지불하면서 20년간 상환하기로 했으며 3억 달러의 상업 차관 속에 어업협력 자금과 선박 도입 자금을 포함시켰다고 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협정을 비교해 볼 때, (1) 일본이 동남아 각국보다 한국에 대해서 장기간 점령했고, (2) 배상액 규모에서 한국이 필리핀보다 훨씬 적으며, (3) 한국이 받는 배상 기간이 필리

핀보다 짧았다는 점을 들어, 한일 청구권협정의 결과, 상대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컸다고 주장한 것이다.²⁰⁾

이러한 견해는 다양한 평가 가운데 하나로서 의미가 있지만, 필자는 이러한 비판적 주장에 대해서 필리핀에 대한 배상액과 한국에 대한 청구권 금액을 서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논문이 주장하는 (3)의 이유에 대해서, 배상 기간의 길고 짧음이 반드시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 주장에서는 지나치게 한일회담의 역사성을 단순화했으며, 일제강점기에 한 반도에 거주했던 일본인을 일률적으로 지배자로 보았다는 점, 오늘날에도 일제강점기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에 상대로 하여 개인청구권을 요구해 오고 있었다는 점,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부정 일변도의 평가는 국교정상화 이후 경제적 혹은 문화적으로 일본과의 교류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대일 종속이 심화되었다는 부정적 현상만을 강조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한다.²¹⁾

III. 한국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기술

오늘날 한국의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9종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내용을 살펴보자. 여기서는 한국과 세계의 근현대사를 다루고 있는 중학교역사2 교과서에 국한하여 그 기술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역사 과목은 1997년 12월에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로 고시된 교육 과정(課程)으로 오늘날 중학교 과정(過程)에 적용되고 있는 국가 수준의 과목이다. 현재 중학교 역사 과목은 인문·사회 과목 군에 속하는 사회 관련 과목이며, 한국검정교과서협회에 따르면, 2020년 3월에 9개 출판사가 교과서를 내놓은 것으로 되어 있다.²²⁾

한국의 중학교 교과서의 기술내용을 보면, 한일 국교정상화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평화선’이나 ‘어업협정’ 교섭과 같은, 어족자원의 보호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이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적 민주화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면서 교과서 전체가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를 비민주성에 집중하여 이를 비판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에 반하여 ‘평화선’이나 ‘어업협정’과 같은 개별적인 현대 역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기술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오늘날 한편으로는 정치권력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정치권력의 현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기술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낳게 한다.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도 후술하겠지만, 오늘날 한국의 청소년에게도 역사교과서가 역사의 다양성을 자유롭게 가르치기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9개 출판사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가운데, 먼저 ① 교학사의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자.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났다는 서술과 함께, 5.16군사정변으로 박정희가 이끄는 군인 세력이 장면 내각을 무너뜨렸다고 서술했다. 국교정상화와 관련하여, 이 책은 “박정

20) 손양수, 『한·일어업협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법학과 박사학위논문, 1988년, 117-122쪽.

21) 전기호, 「한국의 경제정책과 한국경제의 대일종속화」, 『경제연구』 13호, 1997년, 45-82쪽; 朴順愛·土屋禮子, 『日本大衆文化と日韓關係: 韓國若者の日本イメージ』, 三元社, 2002년, 1-266쪽; 공제욱·조석근, 『1950-1960년 대 한국형 발전모델의 원형과 그 변용과정: 내부동원형 성장모델의 후퇴와 외부의존형 성장모델의 형성』, 한울아카데미, 2005년, 1-371쪽 등.

22) 한국검정교과서협회, <https://www.ktbook.com>, 2020년 2월 22일 검색.

회 정부는 반공과 경제발전을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한일협정과 베트남 파병 등을 추진하였다. 국민의 격렬한 반대 속에 추진된 한일협정은 일본의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받아내지 못한 채 차관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체결되었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는 장기 집권을 위해 3선 개헌을 추진하였고 이를 비판하는 정치인을 탄압하였다” 라고 함으로써, 한일협정의 경제적 생산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역대 정권의 비민주성만을 강조하고 있다.²³⁾ 결과적으로 이 책의 기술상 특징으로는, 첫째 박정희 정부의 비민주성에 대한 기술이 중심으로 이루고 있다는 점, 둘째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을 관하여, 특히 무상 3억 달러에 달하는 청구권 자금을 받은 것의 경제적 효용성과 역사적 무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② 금성출판사의 교과서 내용을 보면, 박정희 정부의 1965년 국교정상화 문제와 관련하여, “박정희 정부는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외교 분야에서는 주변국과의 유대 강화에 힘썼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과제로 남아있던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한일협정을 체결하였으며(1965), 베트남에 국군을 파병하였다” 고 기술했다. 같은 페이지에는 「한일협정과 베트남 파병」이라는 박스 설명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한일회담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에 치중하자, 학생과 시민들은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6.3시위, 1964).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나 배상을 받지 못하여, 일제 식민지배 유산의 청산이 미해결 과제로 계속 남게 되었다” 라고 기술되어 있다.²⁴⁾ 이 책의 기술상 특징으로는, 첫째 박정희 정부의 비민주성이 강조되고 있고, 둘째 대일 국교정상화의 ‘생산성’에 관한 언급은 생략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금성출판사 교과서가 오늘날 중학교역사 교육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오늘날 한국 사회의 평가를 상당히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③ 동아출판의 교과서 내용을 보면, 1965년 국교정상화 개시와 관련하여,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다」에서, 간략하게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협정을 체결하여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라고만 기술하여, 박정희 정부의 대일 국교정상화 정책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낸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따라서 이 책의 특징으로서 첫째 박정희 정부의 비민주성과 함께, 둘째 국교정상화의 ‘생산성’에 관한 언급이 비교적 적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④ 미래엔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한일 국교정상화 개시와 관련하여, “박정희 정부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생과 시민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협정을 체결하여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였다(1965)” 라고 비교적 간단히 서술하고 있다.²⁶⁾ 그리고 ⑤ 비상교육 교과서에는 1965년 국교정상화 개시와 관련해서는, 「박정희 정부의 성립」에서, 간략하게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협정을 체결하였다” 라고만 기술했다.²⁷⁾ 아울러 ⑥ 지학사 교과서의 내용에서도 한일 국교정상화 움직임과 관련하여,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다」에서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국민의 반발을 무릅쓰고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여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였다” 고 간략하게 기술하는데 그치고 있다.²⁸⁾ ④·⑤·⑥ 교과서에서는

23) 양호환 외, 『중학교 역사2』, 교학사, 2020년, 93-94쪽.
 24) 김형중 외, 『중학교 역사2』, 금성출판사, 2019년, 109쪽.
 25) 이문기 외, 『중학교 역사2』, 동아출판, 2020년, 87쪽.
 26) 정선영 외, 『중학교 역사2』, 미래엔, 2020년, 86쪽.
 27) 조한욱 외, 『중학교 역사2』, 비상교육, 2020년, 96쪽.
 28) 정재정 외, 『중학교 역사2』, 지학사, 2020년, 90쪽.

한일 국교정상화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고 하는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⑦ 좋은책 신사고 교과서를 보면, 한일 국교정상화와 관련하여 “박정희 정부는 경제성장에 온 힘을 기울이면서 이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서둘렀다. 한일 국교정상화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의 후원금과 차관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비밀리에 추진되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개인 피해에 대한 배상, 약탈 문화재의 반환 등은 무시되었다. 이를 굴욕외교라고 생각한 대학생들은 ‘불법적 친일 정권 퇴진’을 주장하면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6.3시위, 1964). 한일협정 조인에 대한 반대 시위가 확산되자 서울 전역에 위수령을 발동하였다”라고 하며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했다.²⁹⁾ 이 책의 특징으로는 만화와 사진 이미지와 그리고 장황한 부정적 평가를 담은 기술을 통하여 박정희 정부의 비민주성과 몰역사성에 대해 매우 강렬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⑧ 천재교과서에서도, 「박정희 정부의 수립」에서 “박정희 정부는 반공과 조국 근대화를 내세우며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일협정을 체결하여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차관으로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였지만, 일본의 사과와 정당한 보상은 받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기술함으로써, 어느 정도 국교정상화 과정에서의 ‘생산성’을 인정하는 한편 ‘역사성’을 부정하는 균형 있는 시각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³⁰⁾ 천재교과서에서는, 「10월 유신」에 가서 비로소 박정희 정부의 ‘비민주성’을 비교적 간단히 기술하고 있어, 다른 교과서에 비해 ‘생산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⑨ 천재교육의 교과서를 보면,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5.16 군사정변과 박정희 정부」에서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일 국교정상화를 추진하였다. 그러자 학생과 시민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였다면서 전국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정부는 한일 기본조약 체결을 강행하여, 일본으로부터 원조와 차관을 제공받았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국교정상화 정책에서의 ‘몰역사성’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³¹⁾ 이 책은 「박정희 정부의 장기 집권 시도와 국제 정세의 변화」로 기술이 이어지면서, 박정희 정부의 ‘비민주성’에 관한 비판적 기술이 강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3] 한국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기술 요약

출판사	기술상 특징
①교학사	(1)박정희 정부의 비민주성, (2)청구권 자금의 경제적 효용성과 역사적 무게 서술 없음
②금성출판	(1)박정희 정부의 비민주성, (2)국교정상화의 생산성에 관한 언급 없음
③동아출판	(1)박정희 정부의 비민주성, (2)국교정상화 정책에 대한 무관심
④미래엔	(1)시민의 격렬한 반대, (2)국교정상화 매우 간략히 언급
⑤비상교육	(1)국민들의 반대, (2)국교정상화 매우 간략히 언급
⑥지학사	(1)국민의 반발 (2)국교정상화 매우 간략히 언급

29) 한철호 외, 『중학교 역사2』, 좋은책 신사고, 2020년, 105쪽.

30) 김덕수 외, 『중학교 역사2』, 천재교과서, 2020년, 86쪽.

31) 주진오 외, 『중학교 역사2』, 천재교육, 2020년, 89쪽.

⑦ 좋은책신사고	(1)박정희 정부의 비민주성, (2)박정희 정부의 몰역사성
⑧ 천재교과서	(1)국교정상화의 생산성 언급, (2)박정희 정부의 몰역사성
⑨ 천재교육	(1)국교정상화 과정의 몰역사성

IV. 오늘날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기술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이 일본 국가의 역사에 대한 애정, 일본 국민으로서의 자각, 사회 문화의 발전에 공헌한 역사적 인물과 유산을 존중하고자 하는 목표 아래 개정되어, 일찍이 2017년 3월에 고지된 바 있다.³²⁾ 일본의 중학교 교육과정은 현재 필수과목 가운데 하나로 ‘사회’가 편성되어 있고, 그 중에 역사 과목이 공민 과목이나 지리 과목과 함께 사회역사적 분야로 되어 있다. 이들 교과서는 일본 정부가 국가적 정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2006년 12월에 임시국회를 통과한 새로운 「교육기본법」에 따라서 국기(國旗)·국가(國歌)·영토(領土)·자위대 등 국가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점차 바뀌고 있는 것들이다. 2006년 「교육기본법」를 받아들여 문부과학성은 일본의 영토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자연 재해에 관한 정부기관의 역할 등을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 이어 전후 8번째로 2011년에 기존의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여, 주입식 교육은 아니지만 지식·도덕·체력을 균형 있게 가르치고자 하는 자율교육으로부터의 탈피(脱ゆとり)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겠다고 했다.³³⁾

그리고 전후 9번째로 2017년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여 「대화로써 깊이 학습하는」 Active Learning의 도입과 프로그래밍의 교육을 충실화하겠다고 했다. 2017년의 학습지도요령은 2021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4년 1월에 중학교 ‘사회’ 편 일부와 ‘지리역사’ 편 및 ‘공민’ 편 일부에 대해서, 「학습지도요령해설」의 개정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해설에는 영토문제에 대해서, ‘지리역사’의 분야에서 「일본이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초하여 (한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다케시마와 (중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첨각제도(尖閣諸島)를 정식으로 영토에 편입시켰다」는 식으로 기술하도록 지도했다고 한다.³⁴⁾

지난 2015년에 새로운 「학습지도요령해설」이 교과서 집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새로운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채택을 앞두고 자민당(自民黨)의 정무조사회는 중학교 교과서 검정 신청 원고의 내용을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영토 부분에서 마나비사(学び舎) 출판의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7개 출판사의 교과서가 모두 “독도가 불법적으로 한국에 의해 점거되어 있다” 라든지,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유권 문제를 다루려고 하지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는 내용에 대해서, 시미즈서원(清水書院)과 마나비사를 제외한 6개 교과서가 그 경위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 분석 내용에서는 시미즈서원 교과서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국이 섬을 점유하고 있다” 고 기술하고 있어, ‘불법’ 점유에 대해서는 기술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 마나비사 교과서는 더 나아가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할 것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했다” 라고만 기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자민당 정무조사회는 시미즈서원의 공민교과서 163쪽에서 “영유권을

32) 文部科学省, 『中学校校学習指導要領(平成29年告示)』, 文部科学省, 2017年, 48-56쪽.

33) 中学校-Wikipedia <https://ja.wikipedia.org/wiki/中学校>, 2020년 2월 18일 검색.

34) 学習指導要領-Wikipedia [https://ja.wikipedia.org/wiki/学習指導要領2011年\(平成23年\)](https://ja.wikipedia.org/wiki/学習指導要領2011年(平成23年)), 2020년 2월 20일 검색.

주장하는 한국이 섬을 점거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법에 준하여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라고 기술하고, 한국의 행위를 ‘불법’ 이라고 기술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마나비샤 출판의 역사교과서 199쪽에는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다케시마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기로 각의에서 결정했다” 라고만 기술되어 있다고 지적했다.³⁵⁾

여기서는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2019년 판 8개 출판사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한정하여, 그 내용을 출판사 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들을 모두 2015년에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마친 것들이다. 2015년 4월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검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반에 그 결과 내용을 공표한 일이 있다. 검정결과에 따라 2개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기술상 오류가 발견되어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곧이어 해당 교과서의 출판사가 원고 수정을 거쳐 ‘재신청’ 을 했으며, 재검정 끝에 2개 모두 합격시켰다고 공표했다.³⁶⁾ 이렇게 일본 정부의 검정을 마친 교과서들은 오늘날 서울의 동북아역사자료센터에 소장되어 있고 일반인의 열람과 복사가 모두 가능하다.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중에서 단연코 많은 채택을 자랑하고 있는 ① 도쿄서적(東京書籍) 교과서부터 기술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교과서는 「확대되는 일본의 외교관계」에서, “1965년 기본조약을 맺고 한국정부를 한반도 유일의 정부로 승인했다” 고 간단히 기술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따로 「일본의 영토를 둘러싼 문제와 그 역사」라는 주제를 설정하여, 독도에 관한 긴 설명과 함께 “현재도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가 계속되고 있다” 고 기술하고 있다.³⁷⁾ 이 책의 기술내용에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첫째, 한일 국교정상화에 대해 간결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점, 둘째, 장황하게 한국이 ‘불법’ 으로 독도를 점유하고 있다고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특징은 오늘날 한국과의 어업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사회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는지 잘 나타내고 있다.

② 이쿠호사(育鵬社)의 교과서를 보면, 종합관 역사 그림을 통해서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수상과 박정희 대통령의 국교정상화 체결을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 한편, 「아시아국가와의 관계(アジア諸国との関係)」 부분에서, “일본은 1965년 한국과 기본조약을 맺고, 한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했다” 고만 간단히 기술하고 있다.³⁸⁾ 이 책의 특징으로는, 한일 국교정상화에 대한 매우 간략한 언급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③ 교육출판(教育出版)의 교과서를 보면, 종합관 ‘역사의 창’ 이라는 박스 설명을 통해서, 독창적으로 「역사 속 재일한국·조선인」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의 국교정상화와 관련해서는, 「한국·중국과의 국교정상화」 부분에서 “일본은 한국과 기본조약을 맺고 한국 정부를 한반도 유일의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고 경제협력을 추진했다” 고 기술하고 있다.³⁹⁾ 국교정상화와 관련하여, 이 책은 첫째 비교적 간단히 기술에 그치고 있다는 점과, 둘째 ‘경제협력’ 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기술상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④ 시미즈서원(清水書院)의 교과서를 보면, 「한국·북한과의 관계」 부분에서, “한국에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경제개발을 추진하여 북한과 대항하려는 정권이 생기자, 교섭이 진전되어 1965년 기본조약이 조인되었다. 이 조약에 따라 일본과 한국의 외교관계가 수립되자, 과거 식민지 지배를 위한

35) 自由民主党政務調査会, 『より良い教科書を子供たちに届けるために』, 自由民主党, 2015年, 9쪽.

36) 文部科学省 初等中等教育局教科書課, 「(2015年4月)平成26年度教科用図書検定結果の概要」, https://www.mext.go.jp/a_menu/shotou/kyoukasho/kentei, 2020년 3월 2일 검색.

37) 坂上康俊 外, 『(新編)新しい社会: 歴史』, 東京書籍, 2019年, 251-252쪽.

38) 伊藤隆 外, 『(新編)新しい日本の歴史』, 育鵬社, 2019年, 250쪽; 264쪽.

39) 深谷克己 外, 『(中学社会)歴史: 未来をひらく』, 教育出版, 2019年, 243쪽; 248쪽.

조약이 무효라고 하는 점이 확인됐다. 그 조약과 함께 일본은 한국에 대해 경제원조를 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기술하고 있다.⁴⁰⁾ 국교정상화와 관련된 기술의 특징으로서, 이 책은 첫째 비교적 장황하게 국교정상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 둘째 ‘경제 원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⑤ 자유사(自由社)의 교과서를 보면, 「외교관계의 진전」 부분에서, “1965년에 일본은 한국과 기본조약을 맺고 국교를 정상화했으며, 유상·무상 합계 8억 달러의 협력금을 한국에 지불했다”라고 기술하고 있고, 같은 페이지에는 「일한기본조약」의 제2조와 제3조를 나열하고 있다.⁴¹⁾ 한일 국교정상화와 관련하여, 첫째 기본조약의 내용에 깊숙하게 접근하고 있는 점과 함께, 둘째 국교수립에 따른 협력 자금으로서 청구권 자금을 강조한 점 등이 이 책의 기술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⑥ 제국서원(帝國書院)의 교과서를 보면, 무엇보다 패전 후 일본인의 귀환과 식민지 독립을 강조한 것이 특징적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일본의 영토와 근린제국: 일본의 영토 확정과 영유를 둘러싼 여러 과제」를 통해 독도(竹島)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귀속’을 주장하지도 않고 있으며, 한국의 점유를 ‘불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국교정상화와 전후보상」 부분에서, “한국과의 교섭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어, 베트남 전쟁 중의 미국의 강한 요청이 있어서, 1965년 기본조약을 맺고 국교를 정상화했다. 이 조약과 동시에 맺은 협정에 의해 일본이 한국에 경제협력을 행하고, 개인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에게 맡겨졌다”고 기술하고 있다.⁴²⁾ 국교정상화와 관련하여 이 책의 기술에서 보이는 특징으로는, 첫째 영토분쟁의 역사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둘째 한일회담의 발단으로 미국의 요청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셋째 한국과 일본의 협정 가운데 ‘청구권 협정’에 주목하고 있으며, 넷째 협정 체결 후 한국 정부가 피해자 개인의 보상 문제를 담당했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⑦ 일본문교(日本文教)의 교과서를 보면, 「일한기본조약」이라는 주제를 별도로 설정하여 “1965년 6월 일본은 한국과 기본조약을 체결했다. 양국의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하는 일한회담은 미국의 알선에 의해서 1952년에 시작되었고, 일시중단을 포함하여 7차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조약체결까지 13년이 걸렸다. 조약 중에서 일본은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인정하고 경제협력 등을 약속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교과서와는 달리, 「한국 중국과의 국교정상화와 현재의 과제」 부분에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가운데, ‘이승만라인(평화선)’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⁴³⁾ 국교정상화에 대한 기술과 관련하여, 이 책의 특징으로, 첫째 한일회담 과정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 둘째 미국의 회담 알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 어업자원보다 독도 문제를 언급하면서 ‘평화선’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⑧ 마나비사(学び舎)의 교과서는 전반적으로 국가보다는 인간을 중시하고 있는 비교적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예를 들어 1947년 일본 헌법 복사본이 밀항선으로 오키나와에 전해진 것을 언급한 것, 1952년 일본 국적 박탈과 함께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석성기(石成基)에 대한 국적 차별 문제를 언급한 것,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와 ‘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것, 등에서 다른 교과서에 나타나지 않는 독창성을 나타낸다. 또한 이 책에서는 인권 문제 가운데 하나로 중국인과 한국인에 대한 전쟁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를 언급하며 개인청구권 문제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⁴⁴⁾ 다만 한일

40) 三谷博 外, 『(中学)歴史: 日本の歴史と世界』, 清水書院, 2019年, 265쪽.

41) 杉原誠四郎 外, 『(中学社会)新しい歴史教科書』, 自由社, 2019年, 261쪽.

42) 黒田日出男 外, 『(社会科)中学生の歴史: 日本の歩みと世界の動き』, 帝国書院, 2019年, 239쪽; 247쪽; 249쪽.

43) 藤井讓治 外, 『(中学社会)歴史的分野』, 日本文教出版株式会社, 2019年, 264-265쪽.

국교정상화와 관련된 기술로는 국가 외교수립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 입장에 서서, “1965년 기본조약 까지 국교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라고 간단히 언급하는데 그쳤다.⁴⁵⁾ 결과적으로, 이 책의 기술에서 보이는 특징으로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접근에서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과의 국교정상화에 대해서는 지극히 간단한 기술에 그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표-4]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기술 요약

출판사	기술상 특징
①도쿄서적	(1)국교정상화 간결한 언급, (2)한국의 독도 ‘불법’ 점유
②이쿠호사	(1)국교정상화 간결한 언급, (2)독도 언급 없음
③교육출판	(1)국교정상화 간결한 언급, (2)경제협력 강조
④시미즈서원	(1)국교정상화 장황한 언급, (2)경제원조 강조
⑤지유사	(1)한일기본조약 언급, (2)협력금 강조
⑥제국서원	(1)영토분쟁의 역사성, (2)미국의 요청, (3)청구권협정과 개인 보상
⑦일본문교	(1)한일회담에 관한 상세한 언급, (2)미국의 알선
⑧마나비사	(1)국교정상화 간결한 언급, (2)중국인과 한국인의 피해보상

V. 결론

이러한 조사 작업을 통하여 한일 양국 정부의 학습지도요령이 실제로 교과서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교과서 내용에는 교육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교육적 의미로서 교과서 기술내용이 한일 국교정상화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정치적 의미로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 관련 교육계가 오늘날 한일 국교정상화 문제에 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교과서에 그 인식을 투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1965년 국교정상화 문제와 관련하여,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검토해 본 결과, 각 교과서가 출판사에 따라 약간의 기술상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국가별로 보았을 때는 각국의 전반적인 사회적 평가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국의 교과서 기술에서 다음 세 가지 국가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국교정상화와 관련하여, 한국의 교과서는 대체로 ‘한일협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의 교과서는 ‘기본조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1965년 6월에 기본조약과 4개의 협정이 체결된 것에 대해서, 한국은 ‘협정’에, 일본은 ‘조약’에 ‘각각 비중을 두고 국교정상화 관련 용어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일 양국이 모두 역사로서의 국교정상화에 대해서는 비중을 낮게 평가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집필자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조약과 협정이 함께 섞여 있는 국교정상화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달리 보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44) 安井俊夫 外, 『ともに学ぶ人間の歴史』, 株式会社学び舎, 2019年. 201쪽; 281쪽.

45) 安井俊夫 外, 『ともに学ぶ人間の歴史』, 株式会社学び舎, 2019年. 267쪽.

둘째는 국교정상화와 관련하여, 한국의 교과서는 해당 정부의 비민주성이나 ‘몰역사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책 사항을 기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일본의 교과서는 출판사의 성향에 약간씩 다르게 기술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외교관계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어업자원이라고 하는 일상생활과 관한 사항보다는 독도(竹島)의 영유권 문제와 같은 정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한일회담을 기술하고 있다는 공통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14년간에 걸친 한일회담에 대해서 양국은 서로 다른 사회적 평가를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전반적으로 ‘비민주적’인 관점에서 이를 비판하고 있고, 일본은 전반적으로 ‘생산성’의 측면에서 이를 비판 없이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는 미국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 한국의 교과서는 그다지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의 교과서는 이에 대해서 비교적 비중을 두어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바꿔 말하면, 한국의 역사교과서에서는 국교정상화에 대해서, 비민주적인 정책결정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는 일본정부 정책결정자의 ‘책임’에 대해서 대체로 무관심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시점을 달리해서 보면, 한국의 교과서는 과거 자국 정부와 고위 관리에 대한 화해에 인색한 반면, 일본의 교과서는 과거 자국 정부와 관리들을 강렬하게 규탄하는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교과서가 박정희 정부의 정책결정자에 대해 ‘비민주성’을 강렬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의 교과서는 미국의 요청이나 국제정치적인 분위기를 국교정상화의 계기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 초 왜관 개시무역의 거래 양상」(김영록)에 대한 토론문

2020년 10월 17일
한일관계사학회 학술대회
이승민(동국대)

1. 논문의 의의

-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는 개시무역이 가장 성행하던 시기였고, 따라서 이 시기 무역 양상에 관해서는 일찍부터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 한일 양국에서 적지 않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고, 또한 교류의 기반이 되는 조일무역에서의 거래형태나 무역총액, 이윤 등에 관해서는 많은 내용이 밝혀지기도 했다. 다만 개시무역 거래방식인 ‘被執’에 관해서는 양국 이해가 엇갈리고 있고, 발표자가 본문 내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개시무역에서는 공무역과는 달리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분석도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 김영록 선생님의 논문은 기존 연구 성과를 치밀히 분석하고 동시에 『分類紀事大綱』 九 내에 소재한 1721년 ‘실무문서’를 주된 사료로 조일양국의 사료를 균형 있게 사용하여 1720년대 초 개시무역의 주요 현안과 교섭과정을 무역 거래방식과 무역물품의 가격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다각도로 고찰하고, 이를 통해 18세기 초 개시무역의 실상에 한걸음 더 접근하고자 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2. 연구의 대상 시기 : 왜 ‘1721년’인가?

- 대마도의 사무역액과 무역이윤을 파악할 수 있는 ‘동경대본’·‘일본국회본’·‘국편본’의 3가지가 있다. 그 중 ‘일본국회본’이 1694~1711년간의 수출과 수입 모두에 대해 물품·수량·가격·무역액·이윤 등이 연대별로 기록되어 있어서 연도별 추세와 당시의 사무역 현황을 파악하는 데 비교적 유용한 편으로 알려져 있어서, 해당 연구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分類紀事大綱』 九, 「御商賣之事」로서, 해당 기록은 1713년(숙종 39, 正德 3)부터 1739년(영조 15, 元文 4)까지를 대상으로 한다(1713·1716·1721·1722·1730·1736·1739년). 그중에서 1721년이라는 단 1년 특정시기의 문서만을 선택해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1721년이 다른 연도의 기록과 비교했을 때 뚜렷한 차이점이나 특징이 있는지? 혹은 상대적으로 다른 연도보다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18세기 초 개시무역의 양상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인지? 1721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개시무역의 거래 양상은 (<자료1>에 간략한 배경설명이 있기는 하지만) 그해에만 국한된 단편적인 특징일 수 있다. 같은 「御商賣之事」의 기록에는 1722년 기록도 이어지고 있고 내용도 1721년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함께 다루어주는 것도 좋을 듯하다. 또한 1년이라는 단기간의 거래양상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논문에서의 분석이 단순한 사례 연구로 그칠 수도 있어서, 18세기 초 개시무역의 거래양상의 전체상을 파악하기에는 역시 아쉬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무역 거래방식 ‘被執’과 물품 가격

- 피집과 물품가격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대체로 일본 측 연구자들은 피집을 일본에서 먼저 은을 지급하고 후에 조선으로부터 물품을 받는 방식, 그리고 한국 측 연구자들은

은 조선에서 물품을 먼저 지급하고 후에 일본으로부터 결제를 받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한일 양국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두 가지 방식의 혼용도 존재한다는 견해도 있음). 이것은 연구자마다 해당 연구에서 다루는 사료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

- 1721년 사례에서는 <그림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선 측에서 먼저 인삼과 백사를 지급하고 은이나 공목·철물로 받는 조선피집(1·3)의 경우가 있다. 그런데 (2)의 그림은 대마도에서 공목과 철물을 먼저 지급하고 후에 조선이 백사와 순물화 등을 지급하는 방식인 듯 보이는데, <자료1> “왜관의 매매는 본래 定式이 있습니다. 商譯이 물화를 피집한 후에 공목과 철물을 수량에 따라 출급합니다.” 라고 해서 (2)의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는 반대의 경우인 듯하다.

- 1721년의 거래방식을 분석하면서 被執과 銀割 단어 그대로를 해석한 단순한 물품 납품 행위로서의 좁은 의미의 피집, 그리고 양국 채권 모두를 인정하는 넓은 의미의 피집으로 결론을 내렸다. 기존의 피집에 관한 諸 견해와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피집과의 구체적인 차이는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 같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처럼 조선피집과 일본피집이라면 1721년 사례를 포함하여 다른 사료들에서도 보이는 피집은 어느 경우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피집하는 방식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인지, 피집의 시기별 추세(?)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또한 본문 안에서도 일부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일 양국 내·외부 정세나 물품 조달상의 변화가 무역상의 변화로 (혹은 반대의 경우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도 물품의 피집이나 가격과도 연관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시기상으로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元祿銀 주조로 인해 撤市를 단행한 것이나(1700년) 혹은 대마도의 은화 결제를 재촉하는 압력 행사 수단의 하나로 왜관에 지급하는 각종 日供雜物 등의 공급을 중단시키는 등의 사례를 보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피집은 조선피집이거나 혹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된 방식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다.

- <표1>을 보면, 조선 측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우각을 제외하고 대부분 가격 변동이 거의 없이 일정 기간 유지되는 편인 데 비해, 조선 측 수출품의 경우에는 조선 측 수출품의 경우에는 모든 물품에서 가격 변동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또한 필자는 1721년 개시무역에서는 물품의 단가가 일정 기간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물품 단가의 유지란 1721년 당시 개시무역에서 거래되던 모든 물품에 해당하는 것인지?

양흥숙, 「방법으로서의 『초량화집』 -18세기 후반~19세기 초의 부산임기」 토론문

장 순 순(전주대)

○ 논문의 의의

- 본 연구의 주 사료는 1754년에 쓰시마에서 태어나 쓰시마, 왜관, 나가사키(長崎) 등지에서 46년간 조선어통사로 근무하였으며, 大通詞까지 오른 인물인 小田幾五郎(1754~1831)가 기록한 『草梁話集』이다.

- 발표자는 『초량화집』을 18세기 후반의 부산(동래)의 상황을 수록한 중요한 사료로 인식하였다. 『초량화집』이 한일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기록이 적은 18세기 후반 이후의 부산 내지 왜관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텍스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일본인의 시선으로 보는 부산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하였다. 즉, 초량왜관 이전을 전후한, 17세기 후반~ 19세기 초반 기간 동안의 왜관의 변화 과정과 나아가 18세기 후반~19세기 초반의 부산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 발표자는 『초량화집』의 필사본에 대해 설명하고, 그 가운데 기존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조선초량화집』(부산박물관 소장본- 이하 「부박본」)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경상좌수영 수군편제가 왜관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통신사 파견, 일본인 표류 등 조일관계에 경상좌수영과 경상좌수사도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질의 및 논의 사항

- 토론자의 역할에 충실한다는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1) 『초량화집』의 몇 종류의 필사본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발표자는 필사본의 존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箕輪교수는 ①1796년의 초고→②도립본(1800)→③1825년[문정8년]본(조선사편수회 소장본(「국편본」), 소재불명)→④1825년본의 사본→⑤所引本(「도립본」을 저본으로 하여 1800년 『초량화집』을 수정해서 편집한 것이라고 고찰) 등 총 5종류의 필사본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한편, 大浦家 小田幾五郎 관련 자료를 조사한 허지은 선생은 『초량화집』에는 ①1825년에 편집한 것을 70세에 필사한 것, ②22세에 보고들은 것을 스스로 적고 기록한 것(1830년) ③小田 藏 ④天保(1831~1845)年 小田管作 稿, 총 4종류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발표자는 추가로 이른바 小田省攄가 교정한 『조선초량화집』(「부박본」, 1927)을 소개하였다. 먼저 미노와 교수가 말한 1825년 필사본과 소재불명인 「국편본」(1825년)의 차이는 무엇인지? 만약 이것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9종류의 사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소인본이라고 부르는 『부산부사원고』도 별도의 필사본으로 구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묻고 싶다. 『부산부사원고』에는 전체가 수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所印’, 즉 ‘인용’되어 있는 본이기 때문이다.

2) 「부박본」은 오다 이쿠고로의 작품인가? 아니면 그의 아들인 오다 간사쿠의 보완본이라는 추정은 불가능한가?

발표자는 소노다 요지로(園田庸次郎)가 옮겨 쓰고, 오다 쇼고가 교정한 「부박본」의 원본이 「『소인본』일 것이라고 보았다. 즉, 오다 쇼고가 1926년 부산부사 편찬 고문이 된 이후 부산부사 편찬을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던 중인 1927년 「부박본」인 『조선초량화집』을 필사하게 되었으며, 그것을 『부산부사원고』를 편찬(1933~1937)할 때 참고문헌으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도립본」과 「부박본」에는 기술 순서 및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소인본」과 「부박본」의 저본은 오다 간사쿠가 수정·증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가?

앞에서 언급한 허지은 선생의 연구에 따르면, 天保(1831~1845) 연간에는 초량왜관에서 근무한 바 있는 小田의 아들 小田管作가 『초량화집』에 ‘稿’라고 되어 있는 『초량화집』이 大浦家에 소장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남 간사쿠 또한 父인 오다 이쿠고로와 마찬가지로 쓰시마번에서 조선어통사로 활약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초량왜관 사정에 정통했고, 오다 이쿠고로의 『象胥紀聞』을 기초로 내용을 보충하여 『상서기문습유』를 재정리한 바 있다. 『상서기문』과 『상서기문습유』는 조선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종 분야에 걸친 조선 사정에 대해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해 놓은 조선어 학습서이다.

3) 일본인의 시선으로 본 ‘왜관’은 어떻게 변하는가? 역관 오다 이쿠고로가 왜관 운영에서 주목한 것은 무엇인가?

『초량화집』의 말미에는 “寬政 8년(1796년) 蒙官 小田幾五郎가 업무 틈틈이 때때로 듣고 우리를(역관-인용자 주) 위해서 적었다. 寬政 12년(1800년) 4월 일 倭館에서 베껴 쓰다.”라고 되어 있어, 『초량화집』이 오다 이쿠고로가 후임 역관을 위해서 편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왜관’에 한정해서 일본측이 남긴 기록으로는 『초량왜관』외에도 18세기 초반에 작성된 『和館事考』가 있다. 『화관사고』는 1700년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한문체의 필사본으로 되어 있다. 『화관사고』와 『초량화집』은 대략 1세기 정도의 차이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두 가지 모두 일본인에 의해 남겨졌다는 점에서 ‘일본인의 시선’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발표문은 쓰시마(對馬)번 출신 조선어 통역관인 나카노 교타로(中野許多郎, 中野許太郎)의 개항 전후 활동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기존연구에서 쓰시마번 조선어통사 오다 이쿠고로와 오다 간사쿠에 대해서는 언급되었지만 나카노 교타로와 오다 가문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카노 교타로의 활동에 대해서도 개항기 일본어교육과 관련한 연구에서 그의 저작들을 다룬 정도에 그치고 그의 활동 전반에 대해 다룬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일관계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개항기를 전후한 시기를 중심으로 나카노 교타로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살피고자 시도한 본 발표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제목에서는 “대마번 **조선어역관** 中野許多郎의 개항 전후 활동”, 목차 부분에서는 “2. 개항 전의 **역관(통사)** 활동”, 머리말 부분에서는 “**역관**”이라고 하셨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쓰시마번의 조선어 통역관을 조선어통사, 조선통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선어역관, 역관(통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이유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2. 오다 간사쿠의 차남 교타로가 나카노로 姓을 바꾼 배경 등은 좀 더 밝혀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말 끝부분에 “나카노 교타로라는 역관(통사)를 드러내고, 이쿠고로·칸사쿠와 이어보려고 한 첫 기초적인 작업이다”라고 하셨지만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안도의 해제부분만을 자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p. 1

히라야마 쿠라지(平山庫次) → 쿠라야마 (오타 수정 필요)

“안도가 나카노 나이를 63세라고 한 것으로 보아, 나카노가 칸사쿠의 아들(차남)인 것은 틀림 없는 듯하다” (문맥상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 p. 1 “나카노는 초량왜관·초량공관(일본공관)·관리청·영사관에서 **역관(통사, 외무서기생)**으로 활동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외무서기생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요. 나카노의 경우 통역의 업무를 담당하는 통역관이면서 외무서기생의 직책에도 있었다는 것인지, 외무서기생으로서 통역 업무도 담당했다는 것인지요. 외무서기생이 곧 통역관이었는지요. p.4에 “1873년 초량공관이 일본공관(초량공관)으로 바뀌었다. 나카노도 쓰시마번 통사에서 외무성 서기생(통역)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을 보면 통사=서기생이 됩니다. 그런데 p.11에 1876년 제 1차 수신사 관련 내용에 “나카노는 6등**서기생**, 한어유학생 나카무라 외 8명은 **통역**” 이라고 해서 서기생과 통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4. p. 4 “개시대청에서 열린 첫 개시(初市)에 통사도 참석하였다. 통사를 데리고 가는 것이 격에 맞지 않으나, 최근에는 데리고 가게 해서 이날 동반하였다는 것이다”

→ 그 해의 첫 개시에만 통사가 참석하지 않는지요. 개시와 통사의 참석여부에 대해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都中 8명이 개시에 들어와 開座하였음을 代官 나카노가 一代官에게 알렸다.⁴⁶⁾ 이날은 ‘代官’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관은 ‘町代官’을 가리킨다⁴⁷⁾고 생각한다. 이처럼 나카노는 1864년 ‘근번통사’로서 왜관에서 근무하였다”

→ 1864년 개시 때 통역관인 나카노가 대관 직책으로 참여했던 이유는 무엇인지요. 위에서 지적한 대로 개시 때 통사가 참석하는 것이 격에 맞지 않아 ‘근번통사’였던 나카노를 대관직함으로 참석시켜 통역업무를 하게 했다는 것인지요. ‘町代官’과 근번통사가 상관관계가 있는지요.

5. P.4 “초량어학소의 조선어 교원은 나카노, 우라세 히로시(浦瀬裕·유타카, 사이스케·最助), 金守禧(조선인) 등이었다…외무성 14등출사(出仕) 아라카와 도쿠지(荒川德治, 德滋)가 稽古通詞로서 초량공관 교수로 근무하는데, 그를 면직시키고 후임으로 **우라세·나카노 중 1명을 교수로 삼고, 등급은 같은 등급으로 한다는 것이다**”

→ 교원과 교수가 조선어교육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호칭이라면 교수로 근무했던 계고통사 도쿠지 후임으로 우라세·나카노 중 1명이 교수가 되었고, 이후 그 교수 증원에 따라 나카노를 포함한 3명이 교원이 된 것은 아닌지요.

6. p. 7 “동래부는 9월 28일(음 9월 3일) 豆毛鎮에 해관을 설치하고, 조선상인에 대한 징세할 것이라는 것을 부산 관리관 야마노조 스케나가에게 통고하고 『징세책자』를 보냈다. 야마노조는 과세는 명백한 협정 위반이고, 이 때문에 무역이 중단될 지경이라고 항의했다”

→ 부산본부세관 홈페이지 세관역사 부분에 두모진해관설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두모진 변찰소내에 海關을 두고 1878년 9월 28년(무인 9월3일)부터 세정업무를 개시하자 10월 6일 일본관리관 山之城祐長, **中野許多郎**이 동래부에 가서 변찰관을 만나 세금이 과다하여 왜관 내의 매매가 폐쇄되고 통상이 어려운 상황이니 세금을 부과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하자 변찰관은 우리 국민에게 과세하는 세금인데 그 경중에 대하여 귀국에서 상관할 바 아니라고 함” (부산본부세관의>세관역사>두모진해관설치)

<https://www.customs.go.kr/busan/cm/cntnts/cntntsView.do?mi=7396&cntntsId=2388>

이처럼 『징세책자』에 대해 야마노조 뿐만 나카노도 동래부에 가서 변찰관(이전엔 훈도)에게 항의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근거 자료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두모지 수세문제 해결을 위해 곤도 마스키가 현석운을 만난 후 현석운이 나카노에게 몰래 사람을 보내 타협안을 문위한 것에 대해 “현석운이 협상과정에서 나카노와 비밀 연락을 시도한 점이 주목된다”고 하셨는데, 위에 밑줄친 부분을 보면 변찰관 현석운과 나카노는 의사소통의 최전선에 있었던 통역관으로 이들의 접촉을 통한 물밑 교섭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p.8에 있는 『왜사일기』도 같은 맥락. 이것을 조선과 일본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봐야하지, ‘두 사람의 私談’으로 볼 수 있을까요.

7. p. 8 나카노의 ‘허씨 조선인’발언에 대해 조선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요.

46) 『(一代官)毎日記』 1864년 11월 8일. 정성일, 앞의 논문, 2015, 247~248쪽에서 인용.

47) 정성일, 앞의 논문, 2013, 78쪽.

8. <표 2>의 1881년 조사시찰단의 “암행어사 12명”에서 암행어사라는 호칭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9. 이효정(「1881년 조사시찰단 수행원 강진형의 『일동록』연구」, 『한국민족문화』73, 2019.)의 연구에서 1881년 조사시찰단 수행원 강진형이 만났던 인물 가운데 나카노 교타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강진형이 당시 통역담당 나카노에게 증여한 시의 내용도 알 수 있습니다.
10. p. 15 “5. 경제활동”에서는 나카노와 관련된 대부문제(1889년)와 절영도 토지 매매(1898년) 그리고 포경회사와 포경약장(약정) 당시의 통역관으로서의 나카노의 활동(1890)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문제와 토지매매는 나카노 개인의 경제활동이고 포경회사의 포경약정과 관련해서는 나카노 개인의 경제활동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 장의 나카노의 통역활동을 다룬 부분에 포함시키는 편이 어떨까요.
 나카노가 이순직에게 대부한 것과 관련하여 영사관 공문에 주민·상인으로 칭한 점과 포경회사와 포경약장(약정) 당시 ‘부상해산회사 통역’으로 서명한 것을 보면 1889~1890년 시점에는 정부기관 소속 통역에서 퇴임했던 건 아닐까요. 1890년에 조선어관련 서적을 3권이 나 한꺼번에 출판한 점도 퇴임 후에 이루어진 저작활동이 아니었나 추측해 봅니다.

정성일 : 근대 이행기 한일 간 무역 통계의 연속성과 단절성

○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이행기의 양국의 무역 통계를 정비하기 위한 작업. 무역의 실상을 밝혀주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발표.

- 1876년 이전과 이후의 무역 통계를 연속 혹은 단절의 관점에서 정리.
「1872-1875년 조일무역 통계」(『한일관계사연구46』)에서 1872년 11월, 1873년 3,4,7,10월, 1874년 1,2,3,9,10,11,12월, 1875년 1,2,3월의 통계표를 다양하게 분석해서 수출/수입 단가에 이르기까지 도표로 제시한 적이 있다.
- 여기에 더하여 본 발표에서는 1880년 이헌영의 「조선국수출입 반년표」, 「일본 대장성기록(조선국무역8개년 대조표(1877-84))」을 더하여 분석.
- 74년의 대일 수출/수입통계와 80년의 대일 수출/수입 통계를 비교하여 수출/수입 상위 품목의 변화를 통해 연속성과 단절성을 찾아내었다. 수출품으로 우피·인삼·목면의 비중이 낮아지고 쌀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수치를 통해 밝혀내었다. 또한 수입품으로는 외국산 직물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구리의 수입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질의>

1. 1872년 세견선 무역이 종료되었는데, 이전의 무역물품에 대한 소개가 없어서 비교할 수 없다. 연속의 측면이 부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 세견선 무역이 중단된 후 동래부가 반드시 확보하려고 하였던 물품은 무엇이었을까요?

2. 1873년 말, 『동래부기록』에는

임신(1872)조 미급공목 557동 4필 17척, 공작미 11333석 5두 중 공목 442동 14필, 공작미 6512석을 선 입급하여, 미급공목 114동 40필 17척, 공작미 4813석 5두가 남았습니다. 또한 계유조 공목 664동 15필 17척 중 17동 41필은 공무 흑각 미납대로 제하고 공목 647동 4필 17척과 공작미 13333석 5두는 계유조 송사의 진상을 기다려 계산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1872(임신)년 분의 공무역이 완료되지 못한 것과, 1873(계유)년 분의 공무역은 거의 시작도 못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분석)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3. 크게 보면

기유약조에 의한 세견선 무역	과도기	무역규칙에 따른 무역
1872.09		1876.8

으로 나눌 수 있는데, 1876년의 조일수호조규부록과 무역규칙이 기유약조를 어떻게 대체하고 있는지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발표자의 발표 특히 과도기 무역에 대한 수출입 상품의 분석이 더욱 의미가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항 초기 조일 간 교역 양상과 구포 사건」에 대한 토론문

한 성 민(대전대)

1. 본 논문의 의의

이 논문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의 체결 이후 「조일통상장정」(1883)의 체결 시까지 개항 초기 한국과 일본 간의 교역 양상과 분쟁의 양상을 검토하였다. 1876년에서 1883년의 7년의 시기는 한일 간의 교역을 필두로 하여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국제법에 의한 근대 교역이 시작되는 시기로, 공무역을 중심으로 했던 전근대의 교역이 근대 교역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도기에 해당한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전환기이자, 근대 교역의 초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 한일 간 교역의 양상과 분쟁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 논문은 아직 해관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의 한계로 교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던 이 시기 한일 간의 교역 양상에 대해 다양한 1차 사료를 활용하여 매우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다. 다만, 이 논문의 성과와 의의에도 불구하고 논문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관점에서 몇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2. 논의 사항

1) 쌀과 콩의 한일 간 가격차

두모진 수세문제로 한일 간 마찰을 빚는 가운데서도, 거류지에 있는 일본 상인의 점포가 북적북적할 정도로 밀무역을 통한 곡물의 거래량과 금액은 증가하였고, 당시 백미 1가마가 3엔~3엔 50전에 거래되었다(4쪽)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서술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조선인들은 관의 눈을 피해 밀매를 시도할 정도로 쌀에 대한 한일 간의 가격차가 컸고, 그 만큼 큰 이익이 되기에 밀매가 활발했음을 알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당시 쌀과 콩의 한일 간 가격차가 어느 정도였는가는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2) 한일 상인 간의 거래에서 분쟁의 발생의 배경 또는 원인

이 시기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이나, 일본 영사의 발언 등을 통해 보면, 당시 한일 상인 간의 거래에서 분쟁이 빈발한 것으로 보인다(5~6쪽). 그렇다면 그 주요한 배경 또는 원인은 무엇으로 보는가? 서로 간의 상거래 관행의 차이 또는 이익에 대한 다툼이 주요 원인인지, 아니면 일본 영사의 ‘미개한 번국’과 같은 발언이나, 부산항 상법 회의소의 청원은 다분히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서로의 멸시 또는 문화 차이

등 상업 외적인 요소가 분쟁의 주요 원인이었는가?

3) 구포사건의 분쟁 처리 양상

금전의 대부 문제로 구포 지역의 조선인들과 일본의 쓰시마 상인들 사이에 발생한 구포사건은 이 시기 한일 간의 분쟁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우선 조선의 입장에서 쓰시마 상인들의 행동은 무엇보다도 심각한 조약 위반 사항이다. 주일 청국 외교관인 하여장과 황준헌 모두 이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조선보다 일찍 개항한 중국이 이미 허가된 개항장을 벗어나는 외국인들의 문제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한행리정 위반 문제는 하나의 선례가 될 것인데, 이에 대해 이후를 고려한 조선정부의 방침이나 규정은 마련되었는가.

그리고 조선인과의 분쟁에서 쓰시마의 상인들은 일본 영사나 개항장의 관리를 통하지 않고, 집단으로 개항장을 벗어나 직접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조선정부 만이 아니라, 일본정부에게도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개항장의 자국민이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후 일본정부는 어떻게 대처해 갔는가. 또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 쓰시마 상인들의 행동은 과거 조일 무역을 독점했던 쓰시마의 특권이 상실되고, 외무성을 중심으로 조일관계가 재편되면서 주변부로 밀린, 그러나 개항장 내 일본 상인의 다수를 점하는 쓰시마 상인들의 일본정부에 대한 반발이기도 한 것인가? 상업적 측면을 떠나 구포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의견을 듣고 싶다.

[토론문]

현대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한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평가

김동명(국민대)

발표자는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이루어진 국교정상화에 대해 오늘날 한일 양국의 사회적 평가를 살펴보기 위해 현재 두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관련 기술을 비교 분석했다. 이를 위해 먼저 지금까지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관한 연구를 개괄하고 국교정상화 과정 전반에 대한 방대한 연구의 흐름을 알기 쉽게 소개함으로써, 한일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기술과 평가를 이해하는 데 지평을 넓혀주고 있다.

발표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한일 양국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국교정상화와 관련한 기술의 차이점과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교과서는 ‘한일협정’, 일본 교과서는 ‘기본조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둘째, 한국 교과서는 한국 정부의 비민주성이나 ‘몰역사성’, 일본교과서는 ‘외교관계의 구축’이라는 측면을 강조해서 정책사향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비민주적’인 관점에서 이를 비판하고 있고, 일본은 ‘생산성’의 측면에서 이를 비판 없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의 교과서는 미국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 그다지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 교과서는 비교적 비중을 두어 다루고 있다. 이것은 결국 한국 교과서가 국교정상화에 대해서 비민주적인 정책결정자의 ‘책임’을 강조한 데 비해, 일본 교과서는 거기에는 대체로 관심이 없고 미국의 요청이나 국제정치적인 분위기를 국교정상화의 계기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발표자는 첫 번째 차이점의 이유에 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도 두 번째와 세 번째 차이점과 관련된 것으로 토론자는 이해하고 있다.

다음에 필자가 공통점을 따로 지적하고 있지 않지만 토론자가 필자의 글에서 읽어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차이점과 관련해서 한일 양국이 모두 역사로서의 국교정상화의 비중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와 관련해서는 어업자원이라고 하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항보다는 독도(竹島)의 영유권 문제와 같은 정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한일회담을 기술하고 있다.

발표자가 밝힌 차이점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토론자도 매우 공감하며, 이에 더해서 발표자가 언급한 공통점이 그 동안 기존 연구에서 별로 주목하지 않았고 오히려 발표자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닌 가 하는 생각에서 토론자는 이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발표자의 논지와 직접 관련이 없을 지도 모르겠으나, 검정제도 하에서의 「역사교과서의 기술/평가」를 과연 「사회적 평가」로 볼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자유발행제도로

의 전환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묻고 싶다. 한국의 「검정기준」이나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의 경우 자칫 「사회적 평가」라기 보다는 「정부(권력)의 평가」에 더 근접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발표자가 말하는 「생산성」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